

월간

재정포럼

2023. October
Vol.328

10



권두칼럼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에 대한 단상

| 이남국

현안분석

건강위해행동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 이은경

노동이력을 활용한

고령자 유형화 및 정책적 함의

| 최인혁

정책토론포트

2023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2023년도 PEMNA 예산분과

딜리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주정부 지원금(State

Payments) 과세지침 발표 외

Kipf

재정포럼

2023.10 Vol.328

월간 재정포럼 2023년 10월호 통권 제328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2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02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에 대한 단상 | 이남국

현안분석

08 건강위해행동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 이은경

28 노동이력을 활용한 고령자 유형화 및 정책적 함의 | 최인혁

정책토론포트

50 2023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75 2023년도 PEMNA 예산분과 달리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88 미국 - 주정부 지원금(State Payments) 과세지침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정책에 대한 단상



이남국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들어가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초기의 예기치 못한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지역’과 ‘탈규제’를 키워드로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경우 크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지역 주도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재원 활용 용도의 제한 완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부는 2022년 12월 3년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계기로, 2023년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1조 5,200억원), 일반회계 추가 지원분(2,000억원), 기존 일반회계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대학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8조 200억원) 등을 포함하는 총 9조 7,4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동 특별회계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 지방대학의 지역 혁신 허브 육성, 학문 간 균형발전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둘째, 2023년 2월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구축’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상당 부분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소멸이 지방의 소멸과 직결’한다는 인식하에 지역대학에 대한 투자를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며,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

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2023년 3월 발표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활용하여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하여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평가 방식과 사업비 집행 지침을 개편하여 대학 현장에서 제기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에 필자를 비롯한 많은 대학구성원이 ‘늦은 감은 있지만 비교적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는 평을 하는 듯하다. 구체적으로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간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분권의 핵심 주체인 지역 중심의 지역대학 투자를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며,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집행 기준의 경직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불만을 일부 수용한 점이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이슈와 개선 방향

정부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설계상 또는 집행 과정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더디게 진행되거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재정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외에도 다양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부를 비롯한 추진 주체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한시성으로 인해 대학 투자의 지속적 확대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2023년 9월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3’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중 고등교육은 1만 2,225달러로 OECD 평균(1만 8,105달러)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며,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대한 지출 1만 3,278달러, 1만 7,038달러(OECD 평균 1만 658달러, 1만 1,942달러)와 비교할 때 불균형적 재정지원의 해소가 시급하

실제로 대학재정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외에도 다양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부를 비롯한 추진 주체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핵심 요건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협력 강화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와 함께
적절한 권한 및 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소리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15년간 지속된 반값등록금정책과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재정난 해소 및 안정적 재정 확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발전의 핵심 요건이 지자체-대학-산업 간 협력 강화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와 함께 적절한 권한 및 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고 이에 더해 최근 비상 재정체제를 선언한 지자체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부담스러운 것도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예산(안)에서 RISE사업이 기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사업(3,420억원)에 LINC사업 등 4개 정책사업(8,485억원)이 이관된 1조 2,015억원 규모로 증액되었으나, 그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고 지원 주체만 지자체로 변경되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물론 2025년 본격화 이후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재정압박을 받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 고등교육예산의 증액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의 입장에서 RISE체계 구축이 지자체라는 상위기관의 추가, 지자체의 교육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혼선, 이관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등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산업에 대한 강조가 대학의 운영 방향을 변화시킴에 따라 소외되는 학문 및 분야 등에 대한 대학 본연의 역할 약화 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자체-대학-산업 간 균형과 함께 지자체의 전문성 및 재정 확보 노력, 대학의 공공성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수행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및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그간 인건비와 경상비 등의 사용에 제한적이었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지침의 대폭 완화는 대학의 사업 운영에 많은 숨통을 틔워주었다. 다만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책임자로서 애로사항을 정리하면, 2023년 9월 현재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가배정액의 통보 이후 하반기 중에 인센티브 사업비의 분할 교부가 이루어지면 대학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전액 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이월(예: 총사업비의 10~15% 범위 내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 후 이월) 또는 총사업비 내 대학 필수 운영경비(공공요금 등) 비율의 상향 조정을 요청한다.

나가며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2020년 RIS사업 및 2025년 RISE 사업 추진 등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은 고등교육지원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확보를 통한 지역맞춤형 혁신체계 구축, 지역 성장을 위한 지자체-대학-산업 간 동반자적 관계 설정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 지방의 소멸 등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 정책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 등 추진 주체들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학재정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압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속적인 재정 확충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대학-산업 간 협력이 상호의 이익 속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되며, 대학 현장에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 등 적절한 대응과 운영 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이 대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해답을 찾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이
대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해답을 찾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현안분석

+ 건강위해행동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이은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이력을 활용한 고령자 유형화 및 정책적 함의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건강위해행동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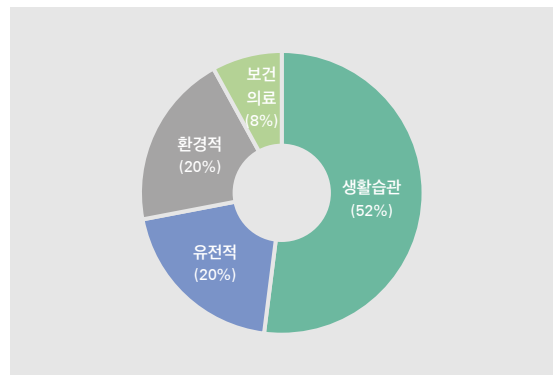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klee@kipf.re.kr)

I. 서론

개인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략 유전적 요인 20~30%, 환경적 요인 20%, 의료 서비스 10~20%, 생활습관이 40~50% 정도를 차지한다(남정자, 1995; 이선미 외, 2015; O'Donell, 1999; Hayes & Delk, 2018). 즉, 생활습관이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여요인임을 의미한다. Schunemann et al.(2017)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4~5년 더 긴 이유 역시 건강생활습관(89%)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1] 건강의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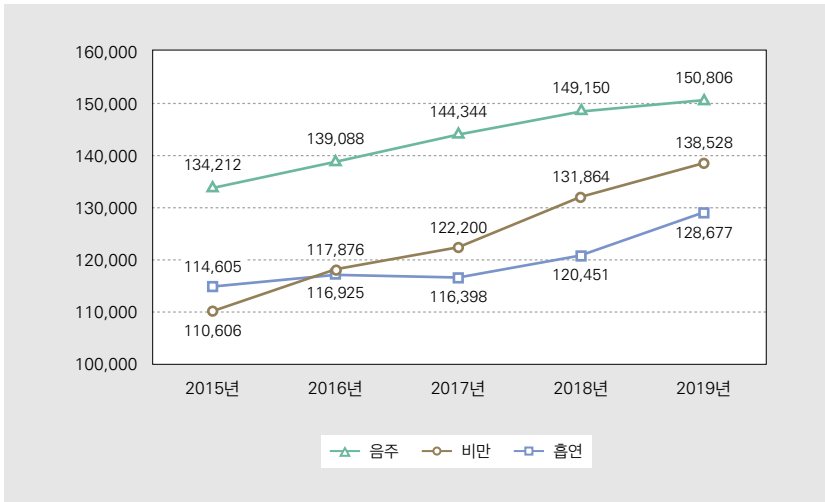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0), p. 6 [그림 1-1]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은 건강위해행동은 만성질환 등 질병유병률을 높여 장기적으로 건강수준 악화를 통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을 높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Leigh et al., 2005; Vals et al., 2013; Sturm et al., 2013; Cawley and Ruhm, 2011; Park and Kim, 2019; Bolnick et al., 2020).

1) 본고는 2022년 기획과제로 수행한 『건강위해행동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재정포럼』의 편집 방향에 맞게 요약·정리한 원고임을 밝힌다.

[그림 2] 흡연, 음주,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억원)



출처: 이선미 외(2021), p. 25 [그림 5]

건강위해행동이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이용 행태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선미 외(2021)는 흡연, 음주, 비만 등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한국의 사회적 손실을 2019년 기준 약 42조원(GDP 대비 2.17%, 건강보험 지출 대비 59%)로 추산했으며, 손실규모는 음주 36.1%, 비만 33.1%, 흡연 30.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위험요인에 기인한 진료비만 따로 떼어서 보면 2019년 기준 14조 7,114억원(흡연 3조 8,757억원, 음주 3조 4,388억원, 비만 7조 3,969억원)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 지출의 약 21%에 해당한다. 미국 역시 흡연, 식단, 비만 등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730억 4,000만달러로 전체 의료비 지출의 27%에 해당한다(Schunemann et al., 2017).

건강위해행동의 효과가 단기보다는 장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위해행동이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아마도 장기적인 시계의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건강위해행동이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이용 행태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에서 건강위해행동의 축적과 변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의료패널」 2009~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 등 건강위해행동의 10년간 변화

본 연구는 개인 레벨에서 건강위해행동의 축적 및 변화가 장기적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을 사용하였다.

(trajectory)가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건강위해행동의 축적은 10년간 흡연량, 음주횟수, 운동시간으로 측정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당해연도 건강위해행동보다는 장기간 축적된 건강위해행동의 강도 및 변화(예: 흡연자의 금연, 음주자의 금주, 신체활동 시작 등)가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및 변수 정의,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제Ⅲ장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특히 건강위해행동 감소를 위한 가격 및 비가격 정책을 소개한다.

II. 실증분석

1. 데이터 및 변수 정의

본 연구는 개인 레벨에서 건강위해행동의 축적 및 변화가 장기적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을 사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정보가 풍부하고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의료비 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장기적 시계에서 개인의 건강위해행동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 제1기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건강생활습관 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의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전체 샘플 중 건강위해행동 변수가 존재하는 샘플로 좁히고,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사망(mortality) 및 탈락(attrition)이 발생한 관측치를 제외하고 10개년도 내내 자료가 존재하는 개인으로 한정하여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였다. 암 경험자와 출산 경험자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위해행동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응답/응답거절(-9)인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인 분석대상은 연간 6,223명(성인 3,728명, 노인 2,486명)이며 10년 전체는 6만 2,230명인 균형패널 구조이다.

주요 설명변수인 건강위해행동(흡연, 음주, 신체활동) 변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건강위해행동 여부와 행동량의 강도를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에 따라 흡연자/비흡연자로 구분하고, 흡연의 강도는 월간 흡연 개비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연평균 흡연량으로 측정하였다. 음주자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및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에 의거하여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음주의 강도는 주간 음주횟수 변수를 통해 연간 음주횟수를 계산하였다. 「한국의료패널」에서 주간 음주횟수는 연속변수가 아닌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거의 매일은 7회, 주 2-3회는 2.5회, 주 1회, 월 2-3회는 2.5/4회, 월 1회는 1/4회, 월 1회 미만은 1/8회, 최근 1년간 금주 혹은 평생 마시지 않음은 0회로 환산하여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질병관리청의 『2014 국민건강통계』 정의에 따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계산하였는데,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기(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한 경우를 건강한 신체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건강한 신체활동의 강도는 주간 신체활동 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Σ 격렬한/중등도/걷기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일수 \times 하루 신체활동 시간으로 계산하였다.²⁾

먼저 분석대상을 18~64세 성인과 65세 이상 노인 그룹으로 구분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건강위해행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흡연율은 성인(2018년 기준, 23%)이 노인(10%)보다 10%p 이상 높지만 두 그룹 모두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율은 성인 61%, 노인 30%로, 성인의 음주율이 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성인 음주율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노인 음주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위험 음주율은 성인 13%, 노인 3%로 성인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노인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부족한 신체활동의 비율은 성인과 노인 모두 2009년에서 2010년 크게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노인은 2014년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체활동 변수는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지 않고 매년 큰 폭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신체활동 변수를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특히 걷기 항목이 2009년과 2010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체중 정보인 체질량지수(BMI)를 사용하여 저체중(BMI < 18.5), 정상체중(18.5

주요 설명변수인 건강위해행동(흡연, 음주, 신체활동) 변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건강위해행동 여부와 행동량의 강도를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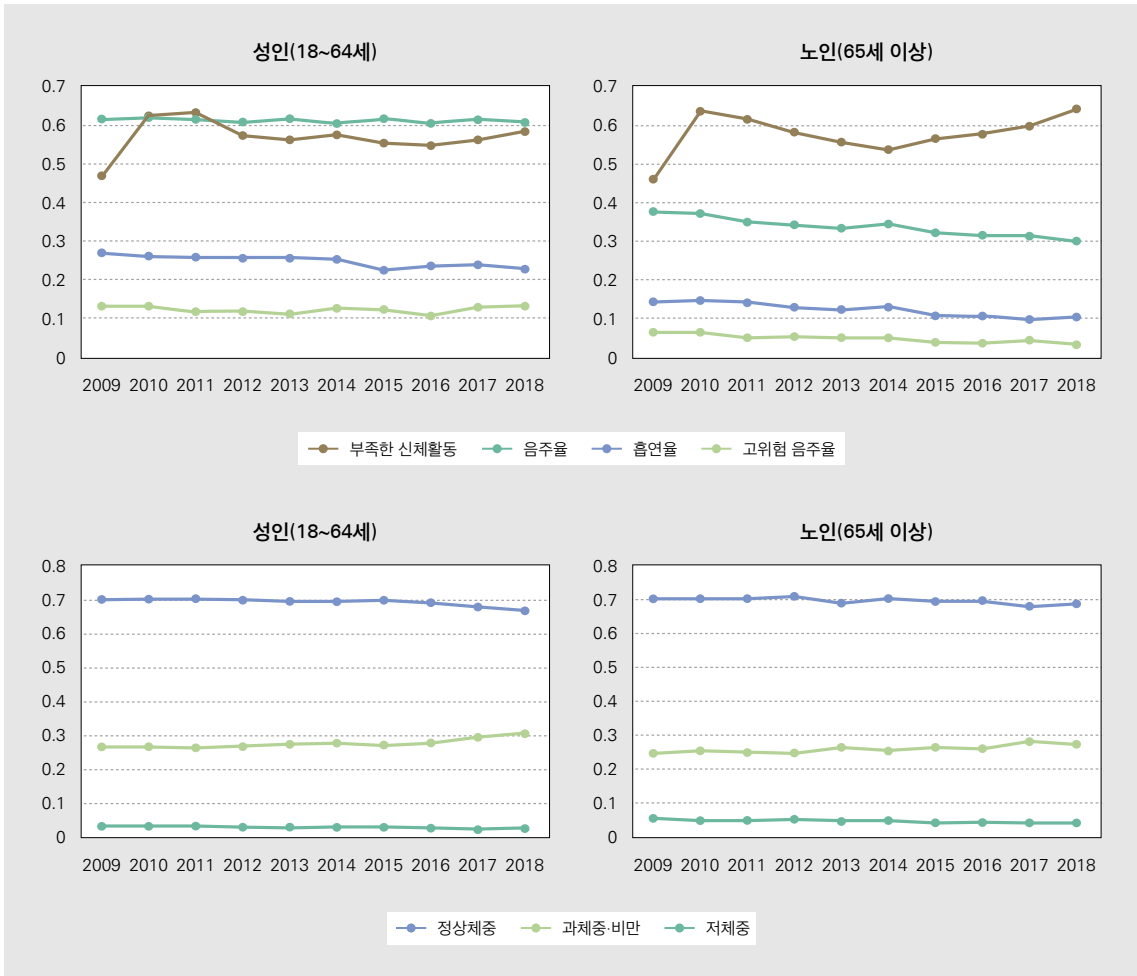
2) 일일 신체활동 시간은 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40분 미만, 40~50분 미만, 50~60분 미만, 60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의 중간값(10/60, 25/60, 35/60, 45/60, 55/60분)을 이용하였고, 60분 이상의 경우 65/60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성인과 노인 모두
지난 10년 동안
과체중·비만 그룹이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 BMI < 25), 과체중 및 비만(BMI ≥ 25)으로 정의하였다. 체중 그룹은 성인과 노인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성인과 노인의 약 70%가 정상체중, 과체중·비만은 약 30%, 저체중은 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인과 노인 모두 지난 10년 동안 과체중·비만 그룹이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표 1>에서 개인별 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 체중 그룹의 연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 개인의 흡연 여부 변수를 추적 관찰해 보면, 계속 비흡연자, 계속 흡연자인 경우는 흡연 상태에 변화가 없지만, 흡연자에서 비흡연자로 혹은 비흡연자에서 흡연자로 전환한 경우는 흡연 상태에 변화가 발생한다. 18~64세 성인 그룹에서 흡연자였다가 흡

[그림 3] 개인의 건강위해행동 10년 변화 추이(2009~2018년)



출처: 『한국의료패널』 2009~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 2009~2018년 건강위해행동의 변화

(단위: %)

구분	성인(18~64세)			노인(65세 이상)		
	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	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
중단(-)	2.7	7.4	18.2	2.0	7.6	16.6
유지	always	54.3	38.5	10.6	26.8	40.0
	never	72.8	31.4	23.9	86.1	59.6
시작(+)	2.0	6.8	19.4	1.2	6.0	18.8
구분	정상체중	과체중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저체중
감소(-)	0.9	4.2	-	1.6	5.1	-
유지	64.2	23.1	2.0	62.9	21.1	2.9
증가(+)	4.6	-	1.0	5.1	-	1.5

주: 유지(always)는 건강위해행동(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을 10년 내내 계속 유지한 경우를 의미하며, 유지(never)는 건강위해행동을 1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룹을 의미함
출처: 「한국의료패널」 2009~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연을 중단한 사람의 비율이 2.7%, 비흡연자에서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2%이며, 음주를 중단한 비율은 7.4%, 음주를 시작한 비율은 6.8%, 부족한 신체활동에서 신체활동을 시작한 비율이 18.2%, 건강한 신체활동에서 부족한 신체활동으로 넘어간 비율이 19.4%이다. 성인과 노인 그룹 모두 세 가지 건강위해행동 측면에서 연간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는 항목은 신체활동, 음주, 흡연 순이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과 달리 체중의 경우는 세 그룹(정상체중, 과체중 및 비만, 저체중)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중의 변화는 정상체중 유지, 과체중·비만 유지, 저체중 유지, 체중감소 1(과체중 → 정상체중), 체중감소 2(정상체중 → 저체중), 체중증가 1(정상체중 → 과체중), 체중증가 2(저체중 → 정상체중) 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상체중을 유지한 경우가 63~64% 정도이며, 정상체중에서 과체중으로 변화한 그룹이 5%, 과체중에서 정상체중으로 변화한 그룹이 4~5%를 차지한다. 반면, 저체중에 속한 그룹이 3~4%로 매우 낮다보니, 정상체중에서 저체중으로 변화는 0.9~1.6%, 저체중에서 정상체중으로 변화는 1~1.5% 정도로 매우 낮다.

2. 분석모형

본고에서는 건강위해행동의 축적 및 변화가 장기적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성인과 노인 그룹
모두 세 가지
건강위해행동 측면에서
연간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는 항목은
신체활동, 음주, 흡연 순이다.

종속변수인
의료비 지출에는
급여비, 급여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의
차별점이자 강점이다.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때 장기간 축적된 건강생활습관이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의료비 지출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Leigh et al.(2005), Kim and Han(2017), 조민혜(2021) 등 선행연구와 같이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축적된 건강위해행동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2018년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연간 의료비 지출(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응급실의료비, 처방약 값의 총합)의 로그값³⁾과 의료이용량(외래이용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응급실 방문횟수) 변수이다. 종속변수인 의료비 지출에는 급여비, 급여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의 차별점이자 강점이다.

설명변수로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수준 및 건강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연령, 성별(여성=1), 교육수준(고졸 이상=1), 배우자 유무(유배우자=1), 가구소득(로그값), 경제활동 유무(현재 경제활동 중=1), 의료급여, 자가주택 보유여부, 민간 보험 가입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좋음/매우좋음=1), 만성질환 보유여부를 포함한다.

당해연도 건강위해행동 변수는 2018년 기준 흡연자(vs. 비흡연자), 음주자(vs. 비음주자), 부족한 신체활동(vs. 충분한 신체활동), BMI에 기반한 체중그룹 더미 변수(과체중·비만, 저체중)를 포함하였다. 또한 2009~2018년까지 축적된 건강생활습관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연간 흡연량(개비)의 총합, 지난 10년간 연간 음주횟수, 지난 10년간 운동시간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건강위해행동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전기 5년(2009~2013년)과 후기 5년(2014~2018년)으로 나누어 추이를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흡연의 경우 10년 동안 계속 흡연자와 계속 비흡연자는 각각 평생 흡연자(always smoker)와 평생 비흡연자(never smoker)로 정의하였고, 10년 동안 흡연과 비흡연 사이에 1번 이상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전기 5년과 후기 5년의 평균 흡연 여부를 비교하여 흡연 중단(smoking cessation)과 흡연 시작(smoking initiation)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2009~2013년 전기에 흡연자 상태로 표기된 기간

3) 로그값 계산 시 의료비가 0인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의료비에 0.1을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에 비해 2014~2018년 후기에 흡연자 상태인 기간이 짧다면 후기에 흡연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흡연 중단 그룹으로 처리하였다(예: 2009~2013년 사이 4년간 흡연자였으나, 2014~2018년 사이 2년만 흡연자 상태인 경우). 반면, 전기의 흡연자 상태 기간이 후기에 비해 짧다면, 흡연 시작 그룹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전기와 후기의 흡연자 상태 기간이 같다면,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 기준 흡연자는 흡연 시작, 비흡연자는 흡연 중단으로 처리하였다. 음주 등 다른 건강습관들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여 상태 유지(계속 음주, 계속 비음주) 혹은 상태 변화(음주 중단, 음주 시작) 4가지 그룹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체중의 경우에는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3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어, 체중증가 1(정상체중→과체중·비만), 체중증가 2(저체중→정상체중), 체중감소 1(과체중·비만→정상체중), 체중감소 2(정상체중→저체중), 10년간 정상체중 유지(reference group), 10년간 과체중·비만 유지, 10년간 저체중 유지 등 7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10년 계속 정상체중, 과체중, 저체중 유지 그룹 이외에 체중 변화가 있었던 경우 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과 마찬가지로 2009~2013년을 전기 5년, 2014~2018년을 후기 5년으로 구분하여 평균적으로 전기에 비해 체중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 판단하였다.⁴⁾ 흡연, 음주, 신체활동, 체중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각각을 독립적 이벤트로 가정하고 각각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3. 기초통계량

<표 2>는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연간 의료비 지출의 경우 성인은 약 50만원, 노인은 91만원으로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성인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입원횟수, 입원기간, 외래방문횟수, 응급실 방문횟수 등 의료이용량 역시 성인에 비해 노인들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장애 있음, 만성질환 있음)는 성인보다 노인이 더 좋지 않게 나타났다. 성인의 연령 평균은 48세이며 노인 연령의 평균은 73세이다.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인 경우는 성인 37%, 노인 8%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성인 79%, 노인 68%로 성인이 높게 나타났다. 민영보험 가입율과 가구소득 역시 성인이 노인보다 높았다. 반면 자가주택 소유율, 부족

흡연, 음주, 신체활동, 체중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을 독립적 이벤트로 가정하고 각각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4) 10년 동안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상태를 모두 경험하여 3개 체중 그룹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최근 체중 그룹의 변화를 채택하였다.

건강위해행태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는

10년간 흡연 상태를 유지

(평생 흡연자),

10년간 비흡연 상태 유지

(평생 비흡연자),

전기 5년과 후기 5년 흡연자

상태 평균을 비교하여

장기적 중단과 시작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표 2> 기초 통계량(「한국의료패널」 2009~2018년)

구분	성인 (N=43,086)		노인 (N=19,054)	
	평균	S.D	평균	S.D
연간 의료비 지출(원)	497,724	1,191,988	912,178	1,399,264
입원횟수	0.12	0.44	0.28	0.72
외래방문횟수	12.7	18.3	35.1	36.0
응급실 방문횟수	0.09	0.37	0.14	0.52
입원기간	1.19	8.7	2.95	12.6
연령	47.9	10.2	72.9	5.7
여성	0.49	0.50	0.59	0.49
고졸 이상	0.37	0.48	0.08	0.27
유배우자	0.79	0.41	0.68	0.47
의료급여	0.03	0.16	0.07	0.25
장애 있음	0.05	0.21	0.14	0.35
현재 경제활동 중	0.76	0.43	0.40	0.49
민영보험 가입	0.84	0.37	0.42	0.49
만성질환 있음	0.55	0.50	0.94	0.24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0.41	0.49	0.27	0.44
가구소득(만원)	5,017	3,740	2,366.9	2,367.5
주택소유	0.72	0.45	0.75	0.43
흡연자	0.25	0.43	0.12	0.36
음주자	0.61	0.49	0.33	0.47
과음주	0.12	0.33	0.05	0.21
부족한 신체활동	0.57	0.50	0.58	0.49
정상체중	0.69	0.46	0.69	0.46
과체중·비만	0.28	0.45	0.26	0.44
저체중	0.03	0.17	0.05	0.21
2009~2018년 총 흡연량(개비)	13,781	25,106	7,008.9	17,841.7
2009~2018년 총 음주횟수	598.9	748.1	467.5	824.4
2009~2018년 총 운동시간	2,622	1,234	2,632.0	1,297.2
평생 흡연자	0.14	0.34	0.05	0.21
평생 비흡연자	0.66	0.47	0.80	0.40
장기적 흡연 중단	0.14	0.35	0.12	0.32
장기적 흡연 시작	0.06	0.24	0.04	0.19
평생 음주자	0.36	0.48	0.12	0.33
평생 비음주자	0.18	0.38	0.42	0.49
장기적 음주 중단	0.27	0.44	0.31	0.46
장기적 음주 시작	0.20	0.40	0.14	0.35
평생 부족한 신체활동	0.05	0.21	0.06	0.24
평생 충분한 신체활동	0.02	0.13	0.02	0.14
부족한 신체활동 중단	0.47	0.50	0.37	0.48
부족한 신체활동 시작	0.46	0.50	0.55	0.50
평생 정상체중 유지	0.46	0.50	0.41	0.49
평생 과체중 유지	0.12	0.33	0.09	0.29
평생 저체중 유지	0.005	0.07	0.007	0.08
장기적 체중감소 1(과체중 → 정상체중)	0.14	0.35	0.17	0.38
장기적 체중감소 2(정상체중 → 저체중)	0.04	0.19	0.05	0.21
장기적 체중증가 1(정상체중 → 과체중)	0.20	0.40	0.19	0.40
장기적 체중증가 2(저체중 → 정상체중)	0.03	0.17	0.07	0.26

출처: 「한국의료패널」 2009~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 신체활동, 정상체중, 과체중 및 비만, 저체중의 비율은 성인과 노인 모두 비슷한 정도를 보인다. 반면, 흡연율은 성인 25%, 노인 12%이고 음주율도 성인 61%, 노인 33%로 노인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성인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도 10년간 흡연량 총합과 음주횟수 합계는 성인이 더 많은 데 반해, 10년간 운동시간의 총합은 노인 그룹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건강위해행태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는 앞 장에서 설명한 대로 10년간 흡연 상태를 유지(평생 흡연자), 10년간 비흡연 상태 유지(평생 비흡연자), 전기 5년과 후기 5년의 흡연자 상태 평균을 비교하여 장기적 중단과 시작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흡연과 음주 행태 변화를 보면 노인 코호트가 성인 코호트에 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평생 흡연자는 성인 14%, 노인 5%이며 평생 비흡연자는 성인 66%, 노인 80%로 성인에 비해 노인의 평생 비흡연자 비율이 높다. 음주 역시 평생 음주자 비율이 성인은 36%, 노인은 12%이며, 평생 비음주자 비율은 성인 18%, 노인 42%이다. 부족한 혹은 충분한 신체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성인과 노인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10년 시계에서 성인에 비해 노인이 부족한 신체활동 상태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체중에 있어서도 체중변화가 없는 그룹(정상체중, 저체중, 혹은 과체중 유지)은 성인과 노인 간 차이가 없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그룹에서 체중감소(과체중→정상체중, 정상체중→저체중)가 조금 더 높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 흡연자는
성인 14%, 노인 5%이며
평생 비흡연자는
성인 66%, 노인 80%로
성인에 비해
노인의 평생 비흡연자
비율이 높다.

4. 분석 결과

<표 3>은 성인 그룹에서 건강위해행태의 변화가 중장기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다른 설명변수는 제외하고 건강위해행태와 관련된 변수들만 제시한다. 종속변수는 2018년 시점 개인의 의료비 지출(로그값)과 2018년 시점 의료이용량으로 각각 네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비 지출의 경우 첫 번째 칼럼은 당해연도 건강위해행태 변수만 포함, 두 번째 칼럼은 10년간 축적된 건강위해행태의 강도 변수(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흡연량, 음주횟수, 운동시간)를 포함하고, 세 번째 칼럼은 10년간 건강위해행태(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의 변화를 나타

체중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변동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10년 계속 정상체중인
그룹에 비해
10년 계속 과체중인
성인의 입원횟수,
외래방문횟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는 4가지 그룹 변수를 포함, 네 번째 칼럼은 10년 시계에서 체중 변화를 나타내는 7개의 그룹 변수를 포함한다. 의료이용량의 경우에는 4개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4번째 모형의 결과만 제시한다.

먼저 첫 번째 칼럼에서 2018년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부족한 신체활동 여부가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낮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일수록 흡연을 지속하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에 기인할 수 있다. 또는 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성향이라는 누락변수가 존재한다면, 이는 건강위해행동을 늘리는 동시에 의료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과체중인 사람이 정상체중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나, 당해연도 음주 여부 및 부족한 신체활동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칼럼에서 2009~2018년까지 10년간 건강생활습관의 축적 변수를 살펴보면, 10년간 흡연량(개비)이 많을수록 2018년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칼럼에서 10년간 흡연 행위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10년 계속 비흡연한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10년 계속 음주한 경우 10년 계속 비음주자보다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10년 이내 신체활동량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칼럼에서 장기적인 체중 변화는 정상체중에서 과체중으로 체중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2018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10%의 유의수준). 그런데 10년 내내 흡연자였던 그룹이 10년 계속 비흡연자였던 그룹에 비해 2018년도 의료비 지출이 낮은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건강위해행동의 축적 및 변화가 성인의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10년 동안 흡연 및 음주, 신체활동 행태의 변화는 의료이용량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체중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변동하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10년 계속 정상체중인 그룹(reference group)에 비해 10년 계속 과체중인 성인의 입원횟수, 외래방문 횟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에서 과체중으로 체중증가가 있었던 그룹도 10년 계속 정상체중 유지 그룹에 비해 2018년 입원횟수와 외래방문 횟수가 많았다. 반면 과체중에서 정상체중으로 건강한 체중감

<표 3> 건강위해행동 축적이 성인의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성인(18~64세)	2018년 의료비 지출				2018년 의료이용량			
					입원횟수	외래방문 횟수	응급실방문 횟수	입원기간
흡연자	-0.868*** (0.212)	-1.221*** (0.278)	-1.183*** (0.400)	-1.174*** (0.400)	-0.034 (0.035)	-2.430* (1.421)	0.014 (0.030)	-1.593 (1.110)
음주자	0.150 (0.146)	0.213 (0.187)	0.128 (0.243)	0.144 (0.243)	-0.040 (0.027)	-1.548* (0.886)	-0.039* (0.021)	-0.303 (0.353)
부족한 신체활동	-0.181 (0.136)	-0.139 (0.144)	-0.090 (0.167)	-0.090 (0.168)	-0.008 (0.021)	-0.294 (0.672)	-0.006 (0.018)	0.151 (0.270)
과체중	0.359** (0.144)	0.344** (0.144)	0.341** (0.144)	0.267 (0.251)	-0.074** (0.036)	-1.287 (1.248)	0.016 (0.020)	-0.788* (0.419)
저체중	0.043 (0.460)	0.061 (0.457)	0.105 (0.460)	0.220 (0.586)	0.006 (0.079)	-1.517 (1.837)	0.036 (0.052)	1.976 (2.699)
평생 흡연량(개비)		0.052** (0.025)	0.256** (0.125)	0.254** (0.125)	0.005 (0.011)	0.558 (0.372)	-0.004 (0.011)	0.501 (0.422)
평생 음주횟수		-0.035 (0.044)	-0.045 (0.066)	-0.048 (0.066)	0.008 (0.010)	0.440 (0.376)	-0.004 (0.007)	0.118 (0.176)
평생 운동시간		0.120 (0.141)	0.202 (0.156)	0.198 (0.157)	-0.008 (0.020)	0.494 (0.706)	-0.021 (0.026)	0.100 (0.253)
흡연 → 흡연 중단			-2.011* (1.193)	-2.014* (1.195)	-0.013 (0.108)	-4.279 (3.482)	0.046 (0.110)	-3.215 (3.378)
비흡연 → 흡연 시작			-1.596 (1.146)	-1.597 (1.149)	-0.022 (0.101)	-2.273 (3.360)	0.053 (0.097)	-3.393 (3.300)
평생 흡연자			-2.540** (1.281)	-2.529** (1.284)	-0.025 (0.115)	-5.525 (3.731)	0.058 (0.115)	-3.368 (3.730)
음주 → 음주 중단			-0.026 (0.289)	-0.025 (0.290)	-0.008 (0.048)	-0.956 (1.711)	0.056 (0.043)	-0.584 (0.523)
비음주 → 음주 시작			-0.070 (0.332)	-0.072 (0.333)	-0.027 (0.042)	-1.745 (1.631)	0.032 (0.033)	-0.876* (0.490)
평생 음주자			0.232 (0.405)	0.230 (0.406)	0.012 (0.052)	-1.732 (2.030)	0.033 (0.043)	-0.385 (0.643)
부족한 신체활동 → 충분한 신체활동			0.018 (0.568)	0.022 (0.570)	-0.131 (0.158)	-0.871 (2.119)	-0.004 (0.040)	0.063 (0.571)
충분한 신체활동 → 부족한 신체활동			-0.085 (0.577)	-0.093 (0.580)	-0.115 (0.158)	-0.638 (2.178)	0.004 (0.042)	0.451 (0.648)
평생 부족한 신체활동			0.331 (0.692)	0.331 (0.694)	-0.103 (0.165)	1.653 (2.903)	0 (0.060)	-0.078 (0.733)
체중감소 1 (과체중 → 정상체중)				-0.304 (0.225)	0.074** (0.037)	1.041 (1.093)	-0.017 (0.018)	0.572 (0.420)
체중감소 2 (정상체중 → 저체중)				-0.062 (0.374)	-0.006 (0.034)	-0.778 (1.402)	0.029 (0.032)	-0.135 (0.812)
체중증가 1 (정상체중 → 과체중)				0.191 (0.253)	0.090** (0.035)	3.072** (1.327)	-0.021 (0.019)	0.639 (0.442)
체중증가 2 (저체중 → 정상체중)				0.139 (0.495)	0.118* (0.070)	1.197 (1.735)	0.008 (0.041)	2.298* (1.240)
평생 저체중				-0.939 (1.320)	0.030 (0.108)	-0.431 (3.436)	-0.111** (0.055)	-2.210 (2.751)
평생 과체중-비만				0.008 (0.330)	0.122** (0.056)	3.331** (1.548)	0.063 (0.053)	0.761 (0.529)
Observations	3,728	3,728	3,728	3,728	3,728	3,728	3,728	3,728
다른 설명변수	0	0	0	0	0	0	0	0
Adjusted R ²	0.224	0.224	0.225	0.225	0.020	0.184	0.008	0.029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01, **p < 0.05,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한국의료패널」 2009~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 건강위해행동의 축적이 노인의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18년 의료비 지출				2018년 의료이용량			
					입원횟수	외래방문 횟수	응급실방문 횟수	입원기간
흡연자	-0.082 (0.207)	-0.146 (0.273)	-0.149 (0.342)	-0.126 (0.341)	-0.238 (0.191)	-4.045 (5.628)	-0.071 (0.098)	-3.696 (2.794)
음주자	-0.186 (0.124)	-0.211 (0.147)	-0.227 (0.183)	-0.245 (0.184)	-0.153*** (0.059)	-0.738 (2.234)	0.015 (0.042)	-2.732*** (0.945)
부족한 신체활동	0.184 (0.113)	0.270** (0.122)	0.266* (0.146)	0.266* (0.146)	0.127*** (0.040)	2.045 (1.711)	0.087** (0.036)	2.310** (0.910)
과체중	0.114 (0.107)	0.116 (0.108)	0.107 (0.108)	-0.068 (0.175)	-0.058 (0.058)	0.222 (2.176)	-0.022 (0.040)	0.609 (0.927)
저체중	-0.273 (0.370)	-0.256 (0.359)	-0.241 (0.360)	-0.208 (0.475)	0.050 (0.172)	-8.980 (5.594)	-0.082 (0.098)	5.564 (5.855)
평생 흡연량(개비)		0.011 (0.022)	-0.119 (0.076)	-0.120 (0.075)	-0.003 (0.036)	-0.974 (1.170)	0.015 (0.022)	0.631 (0.593)
평생 음주횟수		0.004 (0.028)	0.023 (0.041)	0.020 (0.041)	-0.021 (0.015)	0.559 (0.582)	-0.007 (0.009)	0.068 (0.400)
평생 운동시간		0.214 (0.137)	0.191 (0.162)	0.186 (0.161)	-0.001 (0.037)	0.482 (1.452)	0.003 (0.029)	0.242 (0.767)
흡연 → 흡연 중단			1.225* (0.631)	1.231* (0.628)	0.172 (0.340)	11.919 (11.139)	-0.122 (0.210)	-3.699 (5.530)
비흡연 → 흡연 시작			1.527*** (0.589)	1.523*** (0.587)	0.393 (0.397)	14.588 (10.918)	0.050 (0.221)	0.396 (4.278)
평생 흡연자			1.364* (0.736)	1.366* (0.732)	0.252 (0.401)	10.962 (11.959)	-0.084 (0.257)	-4.063 (5.897)
음주 → 음주 중단			-0.131 (0.177)	-0.122 (0.179)	0.161** (0.079)	-4.041 (2.604)	-0.015 (0.048)	1.853 (1.914)
비음주 → 음주 시작			-0.186 (0.207)	-0.169 (0.209)	0.111 (0.080)	-4.581 (2.821)	-0.038 (0.048)	0.623 (1.613)
평생 음주자			-0.069 (0.301)	-0.048 (0.306)	0.146 (0.106)	-7.416** (3.681)	-0.109* (0.065)	1.365 (2.171)
부족한 신체활동 → 충분한 신체활동			-0.270 (0.310)	-0.283 (0.308)	-0.125 (0.088)	-2.573 (3.197)	-0.065 (0.068)	-0.462 (1.082)
충분한 신체활동 → 부족한 신체활동			-0.254 (0.319)	-0.270 (0.317)	-0.126 (0.092)	-0.114 (3.407)	-0.075 (0.072)	-1.174 (1.384)
평생 부족한 신체활동			-0.313 (0.490)	-0.326 (0.489)	0.058 (0.160)	-5.955 (5.380)	0.096 (0.130)	5.174 (4.401)
체중감소 1 (과체중 → 정상체중)				-0.013 (0.156)	0.021 (0.052)	2.450 (1.950)	0.009 (0.047)	-0.504 (0.947)
체중감소 2 (정상체중 → 저체중)				0 (0.309)	-0.009 (0.087)	3.789 (5.146)	0.001 (0.062)	5.027 (3.892)
체중증가 1 (정상체중 → 과체중)				0.184 (0.168)	0.090 (0.059)	2.219 (2.169)	-0.004 (0.035)	-0.074 (0.912)
체중증가 2 (저체중 → 정상체중)				-0.295 (0.327)	0.373*** (0.107)	6.596 (5.174)	0.085 (0.079)	4.939 (3.461)
평생 저체중				1.066* (0.576)	0.695 (0.460)	5.732 (9.164)	0.555** (0.227)	-0.172 (7.257)
평생 과체중·비만				0.261 (0.232)	0.077 (0.085)	1.532 (3.254)	0.044 (0.070)	-1.131 (1.288)
Observations	2,486	2,486	2,486	2,486	2,486	2,486	2,486	2,486
다른 설명변수	0	0	0	0	0	0	0	0
Adjusted R ²	0.135	0.136	0.135	0.135	0.020	0.185	0.009	0.031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01, **p < 0.05,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한국의료패널」 2009~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소가 있었던 그룹에서도 당해연도 입원횟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은 조금 특이한 사항이다.

<표 4>는 노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노인 그룹은 2018년 부족한 신체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성인 그룹의 결과와 차이점이다. 또한 성인 그룹과 달리 노인 그룹은 10년간 흡연의 축적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기준 그룹(reference group)인 10년 계속 비흡연자에 비해 10년 이내 흡연을 시작한 그룹에서 2018년 의료비 지출이 높았으며, 10년 이내 금연 경험이 있는 그룹 및 10년 내내 흡연자인 그룹의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즉, 10년 이내 흡연을 경험한 그룹이 계속 비흡연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의료비 지출이 높았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10년 내내 저체중이었던 노인은 정상체중 유지 그룹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높았다.

노인의 의료이용량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2018년 부족한 신체활동은 당해연도 입원횟수, 응급실 방문횟수, 입원기간 등 대부분의 의료이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년 동안 축적된 운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입원횟수 및 입원기간이 감소하였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행태 변화는 의료이용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계속 정상체중 그룹 대비 계속 저체중 그룹에서 응급실 방문횟수가 높고 저체중에서 정상체중으로 건강한 체중증가가 있었던 그룹은 입원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 그룹과 달리 노인 그룹에서는 저체중 경험 자체가 건강상태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소결

본 연구는 2009~2018년(10개년도) 「한국의료패널」을 사용하여 장기적인 시계에서 건강위해행동의 축적과 변화가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2018년 시점의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량, 주요 설명변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축적된 건강위해행동의 강도(흡연량, 음주횟수, 운동시간) 및 10년 시계에서 보이는 건강위해행동의 변화(금연, 금주, 운동시작 등)이다. 분석 결과, 성인

성인 그룹과 달리
노인 그룹은
저체중 경험 자체가
건강상태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 등이 모두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분석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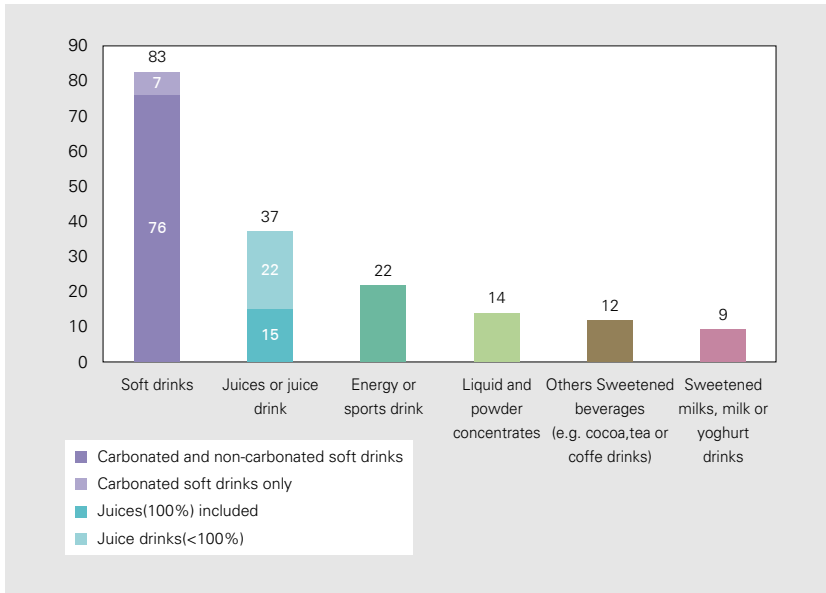
은 장기적인 건강위해행동의 축적이 의료이용량 증가로 귀결되었고, 노인은 장기적인 건강위해행동의 축적이 의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음주, 신체활동 행태의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체중 변화가 의료이용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인 그룹은 정상체중에서 과체중으로 증가하거나, 과체중을 유지하는 그룹에서 입원, 외래 등 다양한 의료이용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에는 저체중의 경험 자체가 의료이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10년 시계에서 건강생활습관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한 개인의 10년간 흡연의 변화 추이에서 흡연과 비흡연이 동시에 관측되는 경우 이들의 행태를 통계적 분석에 기반하여 분류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분류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group growth model 등을 사용하여 건강생활습관의 양상을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그룹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흡연,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 등이 모두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예를 들면 흡연자의 신체활동이 더 낮다거나, 음주자의 흡연율이 높다거나 등) 분석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개인의 장기적인 건강위해행동 축적은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수명, 평균수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에 피해유발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de Walque, 2020). 따라서 건강생활습관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격 정책(fiscal policy)으로 가격 인상을 통해 건강에 해로운 식품(담배, 술, 비만유발식품) 소비에 대한 디스인센티브를 강화(tax)하는 한편 건강에 이로운 식품 소비에 인센티브(subsidy)를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가격 정책으로 규제나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림 4] 국가 수준에서 부과하는 가당음료 과세 현황



출처: WHO(2022), p. 7 [Figure 2]

가당음료 과세는
비만 예방을 위해
최근 떠오르는
비용효과성 높은
재정정책으로,
WHO(2019)가
2030년까지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담배나 술에 대한 과세, 즉 가격정책은 해당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간접흡연, 음주운전 등)를 줄일 수 있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Chaloupka et al., 2000; Chaloupka et al., 2002). 또한 가당음료(suger-sweetened beverage) 과세는 비만 예방을 위해 최근 떠오르는 비용효과성 높은 재정정책으로, WHO(2018)가 2030년까지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를 강력하게 권고하여, 2022년 5월 기준 194개국 중 85개국(44%)이 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소금, 지방,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멕시코는 2014년부터 100g 당 275kcal 이상의 에너지를 포함하는 간식(스낵, 캔디, 사탕, 초콜릿, 푸딩, 버터, 아이스크림, 과량의 가당 시리얼 제품 등)에 8%의 증가세(ad valorem excise tax)를 부과하였고, 헝가리는 100g당 1g 이상의 소금이 함유된 스낵, 에너지 드링크, 탄산음료, 가공 가당식품 등에 공공보건식품세(public health product tax)를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는 초콜릿, 사탕, 비스킷, 케이크 등에 과세하고 있으며, 2011년 포화지방(saturated fat)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과세하였다가 부정적인 언론 반응으로 인해 1년 만에 폐

음주나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직접적이고 명확하지만, 비만은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 연령, 유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하였지만 당시 포화지방 섭취가 10~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가격 정책이 해당 식품의 소비 감소를 유인하는 효과는 비교적 명확하나, 과세의 역진성, 과세 식품의 범위, 과세의 종류(특별소비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등), 세율, 과세수입의 사용처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과세 수입을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하는 경우 공공건강 증진목표에 부합하고 대중에게도 해당 과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WHO, 2022).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세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지만 주류는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류, 가당음료 등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과세 항목을 늘리고 이를 건강보험 재원의 일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음주나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직접적이고 명확하지만, 비만은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 연령, 유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건강위해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및 캠페인을 시행하는 비가격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연구역 지정, 담배광고 규제, 주류 판매처 및 판매시간 제한, 과도한 음주 방지 캠페인, 건강한 식생활 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비가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 의료 재정에서 건강증진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 건강보험사업 지출 대비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은 2.2%에 불과하다(전체 건강보험사업 지출 86조 2,430억원 중 1조 8,741억원에 해당).⁵⁾

보다 구체적으로 HP2020에서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예산 투입액은 <표 5>와 같다. 우리나라는 흡연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흡연예방, 금연, 비흡연자 보호 등)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음주(음주예방, 환경개선, 교육, 평가) 및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활동 및 영양(홍보, 지침개발, 예방·관리)에는 예산 투입이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예산 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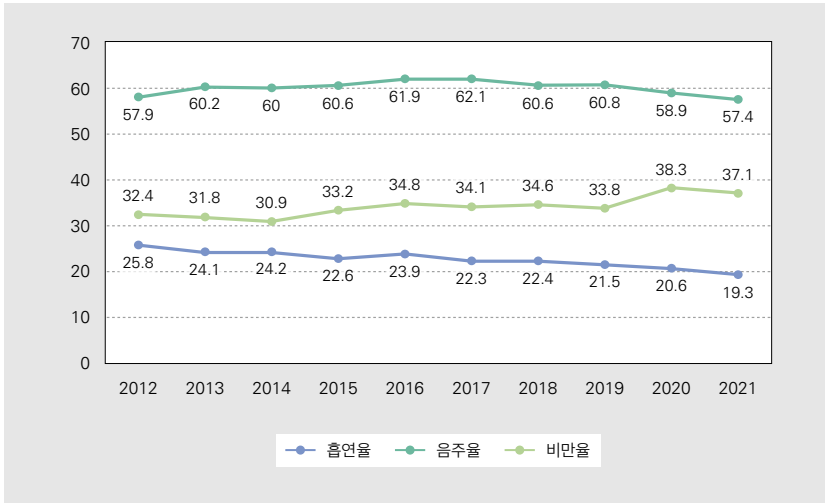
(단위: 100만원)

중점과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흡연	37,491	8,940	11,261	147,500	136,507	146,787	144,054	135,973
음주	4,654	4,936	4,777	4,737	4,790	1,485	1,341	1,382
신체활동	10,720	16	15	확인불가				
영양	20,263	14,346	20,927	7,768	8,460	2,494	1,327	2,013

출처: 김동진 외(2019), pp. 84~85 <표 4-15>

5) 『메디컬투데이』, 「올해 건강보험사업 지출 86.2조 중 질병예방 비중은 단 2.2% 뿐」, 2022. 10. 13.,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2281457192>, 검색일자: 2022. 10. 24.


[그림 5] 한국인의 건강위해행동 추이(2012~2021년)



주: 1. 흡연율: 만 19세 이상, 현재 매일 혹은 가끔 흡연자
 2. 음주율: 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3. 비만율: 체질량지수(kg/m²) 25 이상인 경우

출처: 질병관리청, 『2021 국민건강통계』, 2022.

그러나 비만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흡연보다 높으며(이선미 외, 2022),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흡연, 음주와 달리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아비만이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는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형성과 전 생애적인 건강상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Marcus et al., 2022) WHO(2018)도 소아비만 감소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건강증진 정책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건강생활습관 제고는 대중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볼 때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건강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흡연과 음주에 관한 문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생활습관 제고는 대중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동진·윤강재·정연·채수미·최지희·배정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남정자·최정수·김태정·계훈반,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19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이선미·윤영덕·백종환·현경래·강하림,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 이선미·김경아·라규원,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21.
- 조민혜, 「정상체중 유지가 의료비 지출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제39권 제3호, 2021, pp. 95~122.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 _____, 『2014 국민건강통계』, 2015.
- _____, 『2021 국민건강통계』, 202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생활습관과 건강 I (건강영양 요인)』, 2010.
- 『메디컬 투데이』, 「올해 건강보험사업 지출 86.2조 중 질병예방 비중은 단 2.2%뿐」, 2022. 10. 13.,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2281457192>, 검색일자: 2022. 10. 24.
- Bolnick, Howard, Anthony Bui, Anne Bulchis, et al., “Health-care spending attributable to modifiable risk factors in the USA: an economic attribution analysis,” *The Lancet Public Health*, 5(10), 2020.
- Cawley, John and Christopher J. Ruhm, “The Economics of Risky Health Behaviors,”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Volume 2, 2011, pp. 95~199.
- Chaloupka, Frank J., Teh-wei Hu, Kenneth E. Warner, Rowena Jacobs, and Ayda Yurekli, “The taxation of tobacco products,” *Tobacco Control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Chaloupka, Frank. J., Michael Grossman, and Henry Saffer, “The Effects of Price on Alcohol Consumption and Alcohol-Related Problems,” *Alcohol Research &*

- Health*, 26(1), 2002, pp. 22~34.
- de Walque, Damien, "The Use of Financial Incentives to Prevent Unhealthy Behaviors: A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261, 2020.
- Hayes, Tara O'Neill and Rosie Delk, "Understanding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merican Action Forum, 2018, <https://www.americanactionforum.org/research/understanding-the-social-determinants-of-health/>, 검색일자: 2023. 10. 24.
- Kim TH, and E. Han, "Impact of overweight or obesity trajectory on health expenditure in Korea," *Journal of Public Health*, 42(2), 2020, pp. 165~173.
- Leigh, J. Paul, Helen B. Hubert, and Patrick S. Romano, "Lifestyle Risk Factors Predict Healthcare Costs in an Aging Cohort,"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9(5), 2005, pp. 379~387.
- Marcus, Claude, Pernilla Danielsson, and Emilia Hagman, "Pediatric Obesity-Long-Term Consequences and Effect of Weight Loss,"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92(6), 2022, pp. 845~972.
- O'Donnell M, "Health promotion: an emerging strategy for health enhancement and business cost savings in Korea," unpublished report, 1999.
- Park, Hyun-Jung and Eun-Jung Kim, "Effects of Adults' Health Behaviors and Combinations Thereof on Health Outcomes: An Analysis Using NHIS of Korean Cohort Data," *Epidemiology and Health*, 41, 2019.
- Schunemann, Johannes, Holger Strulik, and Timo Trimborn, "The Gender Gap in Mortality: How Much Is Explained by Behavior?," *Journal of Health Economics*, 54, 2017, pp. 79~90.
- Sturm, Roland, Ruopeng An, Josiase Maroba, and Deepa Patel, "The Effects Of Obesity, Smoking, And Excessive Alcohol Intake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a Comprehensive Medical Scheme," *South African Medical Journal*, 103(11), 2013, pp. 840~844.
- Vals, Kaire, Raul-Allan Kiivet, and Mall Leinsalu, "Alcohol Consumption, Smoking and Overweight as A Burden for Health Care Services Utilization: A Cross-Sectional Study in Estonia," *BMC Public Health*, 13, 2013.
- WHO, "Taking Action on Childhood Obesity," 2018.
- _____, "Fiscal Policies to Promote Healthy Diets: Policy Brief," 2022.

02

노동이력을 활용한 고령자 유형화 및 정책적 함의¹⁾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cho@kipf.re.kr)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노동이력에 기초하여 고령층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와 같은 유형화 작업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중·노년기 경제상황을 설명·예측함에 있어 노동이력에 바탕을 둔 개인별 유형이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를 엄밀히 판별해 볼 수 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중·노년기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고령층 대상 정책 내지 고령화 대응 정책 설계 시 구체적 방향 설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다만 개인의 중·노년기 경제상황을 설명·예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는 개인별 경제상황 설명·예측 측면에서 노동이력 유형의 중요성 내지 설명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설계 시 노동이력 유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강조하기로 한다.

노동이력에 기초한 고령층 유형화는 경기순환 국면에서 실업의 민감성 및 지속성을 주도하는 노동이력 유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경기순환 연구들에 따르면 실업은 생산성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회복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동질적 개인들

1) 본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및 편집위원분들, 원내 토론을 통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고는 Choi(2023)의 일부 내용을 『재정포럼』의 편집방향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본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오류나 실수는 모두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의 공통된 양상이 관찰된 결과이거나 이질적 개인들의 차별적 양상이 혼합되어 목격된 결과일 수 있다. 이때 실업의 민감성과 지속성이 후자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라면 노동시장 정책의 선별성 내지 차별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실업의 민감성 및 지속성을 주도하는 특정 집단 내지 유형에 대한 식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등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들에만 의존하여 실업의 민감성과 지속성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개인별 이질성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없는지, 오히려 노동이력에 바탕을 둔 개인별 유형이 이질성의 한 측면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질성으로서 노동이력 유형이 갖는 중요성을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결국 유형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경제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고령층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각 군집별 중심점과 해당 군집 내 관측치 간 거리 제곱 합의 총합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어진 관측치들을 K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유형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고차원의 정보에 기반한 유형화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력 유형화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가령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 민현주·이수경(2018)은 집단기반궤적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 손연정(2022)은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을 각각 활용한 바 있는데,²⁾ 본 연구는 기존 국내 문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령층의 노동이력 유형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대비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어지는 제Ⅱ장에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및 교차 검증 등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이후 제Ⅲ장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 유형화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과정을 기술한다. 이후 제Ⅳ장에서 유형화 분석 결과와 그 의미를 논의하고, 제Ⅴ장에서 이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가운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 문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령층의 노동이력
유형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대비
차별성을 지닌다.

2) 참고로 민현주·이수경(2018)은 1998~2008년 동안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7가지 유형(지속이탈형, 조기퇴장형, 일시근로형, 후기진입형, 지속자영업형, 상용근로퇴장형, 상용근로유지형)으로, 손연정(2022)은 자영업 경험자들의 노동이력이 8가지 유형(상용직지속후전환형, 자영업(고용주)지속형, 자영업(자영자)지속형,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 빈번한중상사지위전환형, 임시일용직지속형, 상용직지속후퇴직형, 임금근로조기퇴직형)으로 구분됨을 각각 보고한 바 있다.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유형화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군집화 방법으로서,
 최근 경제학 연구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II. 분석 방법

본 장은 각 개인별 노동이력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유형화(類型化)는 사전에서 “공통되는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몇 개의 전형적인 틀로) 분류하는 일”로 정의되는데, 이를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특정한 변수들의 값이 유사한 관측치들을 (미리 정해진 개수의) 군집(cluster)들로 분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상세히 소개할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은 이러한 유형화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군집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경제학 연구에서도 노동자 또는 기업의 유형 분류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Bonhomme et al., 2019, Bonhomme et al., 2022, Gregory et al., 2022).

한편 ‘K-평균 군집화’에서 ‘K’는 군집의 개수에 해당되는 모수로, 군집화 작업이 수행되기 전 연구자에 의해 미리 선택되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군집의 개수는 군집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정한 기준 없이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군집의 개수를 선택하여 군집화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 문헌에서는 K의 값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됐는데, 제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Wang(2010)의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1.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³⁾

군집화는 $J \geq 1$ 개의 특성에 대하여 관측 가능한 개인 $i \in \{1, 2, \dots, I\}$ 각각을 군집 $k \in \{1, 2, \dots, K\}$ 로 분류하는 함수 $\tilde{k} : \{1, 2, \dots, I\} \rightarrow \{1, 2, \dots, K\}$ 라 할 수 있다. 이때 K-평균 군집화는 개인 i 의 특성과 개인 i 가 속하는 군집 $\tilde{k}(i)$ 내 모든 개인들의 특성 평균 간 거리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I 명의 개인들을 K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in_{\tilde{k}(i)} \sum_{k=1}^K \sum_{i=1}^I \sum_{j=1}^J \mathbf{1}[\tilde{k}(i) = k] (s_{i,j} - s_{k,j}^*)^2 \quad \text{식 (1)}$$

3) 이하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은 Hastie et al.(2009) 및 Gregory et al.(2022)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단, 식 (1)에서 $\mathbf{1}[\cdot]$ 은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며, $s_{i,j}$ 는 개인 i 의 특성 $j \in \{1, 2, \dots, J\}$ 의 값을 의미한다. 한편 $s_{k,j}^*$ 는 군집 k 에 속한 모든 개인들의 특성 j 값들의 평균으로, 엄밀하게는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_{k,j}^* = \left(\sum_{i=1}^I \mathbf{1}[\tilde{k}(i) = k] s_{i,j} \right) \times \left(\sum_{i=1}^I \mathbf{1}[\tilde{k}(i) = k] \right)^{-1} \quad \text{식 (2)}$$

일반적으로 식 (1)에 제시된 최적화 문제는 반복적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표 1> 참조). 우선 임의로 K 개의 중심점을 설정하고, 각 관측치(개인)들이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속한 군집에 포함되도록 (초기) 군집을 형성시킨다(단계 1). 이후 현재의 군집화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별 중심점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새롭게 군집을 형성시킨다(단계 2). 끝으로 알고리즘 적용에 따른 군집화 결과가 미리 정해둔 수렴 조건⁴⁾을 만족할 때까지 단계 2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단계 3).

이와 같이 반복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K -평균 군집화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은 [그림 1]에 예시되어 있다. 해당 예시에서 군집화 과정은 20회 반복 후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상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관측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도 수렴 도달까지의 소요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적용에 따른 군집화 결과가 초기 중심점들에 의존적일 수 있음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되는 해가 전역 최적해(global optimum)가 아닌 국소 최적해(local optimum)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실제 알고리즘 수행 시 초기 중심점들의 위치와 무관하게 동일한 군집화 결과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초기 중심점들에 대한 군집화 결과의 민감성 정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각 군집별 중심점과 해당 군집 내 관측치 간 거리 제곱 합을 총합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어진 관측치들을 K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유형화 방법이다.

<표 1>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수행 절차

단계	단계별 내용
단계 1	임의로 K 개의 중심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최초의 군집을 형성
단계 2	군집별 중심점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새롭게 군집을 형성
단계 3	군집화 결과가 수렴할 때까지 위의 단계 2를 반복 수행

주: 군집의 개수 K 는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 가정함
출처: 저자 작성

4) 통상 개인별 군집화 결과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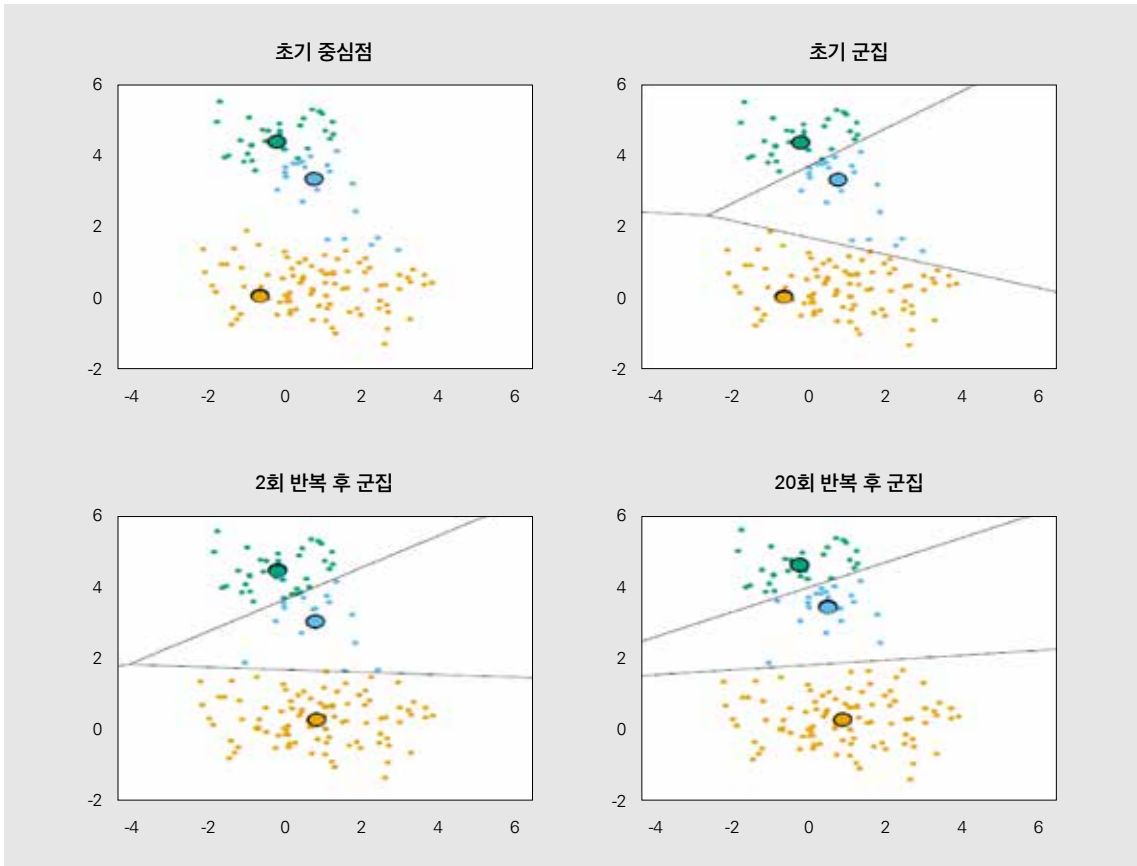
실제 알고리즘 수행 시 초기 중심점들의 위치와 무관하게 동일한 군집화 결과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초기 중심점들에 대한 군집화 결과의 민감성 정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역 최적화 달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군집화 결과 역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차 검증

이상에서 소개한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군집의 개수 K 가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적인 군집화 결과는 군집의 개수 K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한 목적으로 K 가 미리 결정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K 의 값을 선택

[그림 1]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수행 예시



주: 테두리가 있는 원들은 각 군집의 중심점이며, 직선은 군집화에 따른 분할을 의미함
출처: Hastie et al.(2009), p. 511 [Figure 14.6]

할 필요가 있다.

군집의 개수 K 를 선택하기 위하여 단순하게는 다양한 $K \geq 2$ 값 하에서 군집화 작업을 수행하고 식 (1)을 기준으로 해당 결과들의 우위를 비교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군집의 개수 K 가 증가함에 따라 식 (1)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보다 수궁할 수 있는 방식으로 K 의 값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Gregory et al.(2022)을 따라 Wang(2010)이 제안한 교차 검증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⁷⁾

본 연구에서 활용한 Wang(2010)의 교차 검증 방법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2> 참조). 우선 표본에 속한 개인들을 세 개의 하위 표본(subsample)으로 나눈다(단계 1). 이때 두 하위 표본 S_1 과 S_2 에는 전체 표본의 25%를 각각 안분하고 남은 50%의 표본은 하위 표본 S_0 에 배분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모든 $\bar{k} \in \{2, 3, \dots, \bar{K}\}$ 에 대하여 하위 표본 S_1 의 군집화를 수행하고, 각 군집에 속한 모든 개인들의 특성 j 값들의 평균 $s_{k,j}^1(\bar{k})$ 를 산출한다(단계 2-a). 이후 동일하게 모든 $\bar{k} \in \{2, 3, \dots, \bar{K}\}$ 에 대하여 하위 표본 S_2 의 군집화를 수행하고, 각 군집에 속한 모든 개인들의 특성 j 값들의 평균 $s_{k,j}^2(\bar{k})$ 를 산출한다(단계 2-b). 다음으로 식 (1)의 $s_{k,j}^*$ 를 $s_{k,j}^1(\bar{k})$ 로 대체한 상태에서 하위 표본 S_0 의 군집화를 수행한다(단계 3-a). 이후 식 (1)의 $s_{k,j}^*$ 를 $s_{k,j}^2(\bar{k})$ 로 대체한 상태에서의 군집화 역시 수행하도록 한다(단계 3-b). 끝으로 각 $\bar{k} \in \{2, 3, \dots, \bar{K}\}$ 에 대하여 단계 3-a와 단계 3-b로부터 얻어진 군집화 결과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bar{k} 를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의 모수 K 로 설정하도록 한다(단계 4). 즉, 보다 엄밀하게는 다음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min_{\bar{k} \in \{2, 3, \dots, \bar{K}\}} \sum_{i=1}^{I_0} \mathbf{1} [\tilde{k}_1(i; \bar{K}) \neq \tilde{k}_2(i; \bar{K})] \quad \text{식 (3)}$$

단, I_0 는 하위 표본 S_0 에 속한 개인들의 수, $\tilde{k}_1(i; \bar{K})$ 및 $\tilde{k}_2(i; \bar{K})$ 는 단계 3-a 및 단계 3-b에서 수행한 군집화 결과에 따라 개인 i 가 속하게 된 군집을 각각 의미한다.

군집의 개수 K 를 선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ang(2010)이 제안한 교차 검증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5) 가령 $K = 2$ 일 때 식 (1)의 값이 $K = 3$ 일 때 식 (1)의 값보다 작은 경우 K -평균 군집화를 위한 군집의 개수를 $K = 2$ 로 설정하는 방식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6) 극단적으로 군집의 개수가 관측치 수와 동일(즉, $K = I$)한 경우 식 (1)의 값은 0이 되므로 K 를 I 로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나, 이와 같은 군집화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이하 Wang(2010)이 제안한 교차 검증 방법에 관한 설명은 Gregory et al.(2022)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K의 값이 실제 값에 비하여 작거나 크게 설정될 경우 $s_{k,j}^1(\bar{K})$ 와 $s_{k,j}^2(\bar{K})$ 의 값이 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식 (3)의 값 역시 높아지게 된다.

<표 2> Wang(2010)의 교차 검증 방법 수행 절차

단계	단계별 내용
단계 1	전체 표본의 50%, 25%, 25%를 세 개의 하위 표본(S_0, S_1, S_2)에 안분
단계 2-a	하위 표본 S_1 의 군집화를 수행하고 $s_{k,j}^1(\bar{K})$ (각 군집·특성별 평균)을 산출
단계 2-b	하위 표본 S_2 의 군집화를 수행하고 $s_{k,j}^2(\bar{K})$ (각 군집·특성별 평균)을 산출
단계 3-a	식 (1)의 $s_{k,j}^*$ 를 $s_{k,j}^1(\bar{K})$ 로 대체한 상태에서 하위 표본 S_0 의 군집화 수행
단계 3-b	식 (1)의 $s_{k,j}^*$ 를 $s_{k,j}^2(\bar{K})$ 로 대체한 상태에서 하위 표본 S_0 의 군집화 수행
단계 4	단계 3-a 및 단계 3-b의 군집화 결과 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bar{K} 를 선택

출처: 저자 작성

이상에서 소개한 Wang(2010)의 교차 검증 방법의 유효성은 직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군집의 개수를 의미하는 K의 값이 (연구자가 알 수 없는) 실제 값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게 설정될 경우, 실제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추가적인 군집으로 묶여야 할 개인들이 과소 설정된 K개의 군집으로 흩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각 군집에는 이질적인 유형의 개인들이 혼재하게 된다. 따라서 $s_{k,j}^1(\bar{K})$ 와 $s_{k,j}^2(\bar{K})$ 의 값이 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식 (3)의 값 역시 높아지게 된다. 한편 K의 값이 (연구자가 알 수 없는) 실제 값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경우에도 하나의 군집을 형성해야 할 개인들이 인위적으로 복수의 군집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s_{k,j}^1(\bar{K})$ 와 $s_{k,j}^2(\bar{K})$ 의 값이 괴리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군집의 개수 K가 실제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 비해 식 (3)의 값이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Wang(2010)의 교차 검증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에 기반하여 실제 K값을 탐색한다고 볼 수 있다.

Wang(2010)의 교차 검증 방법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K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상한(\bar{K})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보다 큰 모든 양의 정수를 K의 잠재적인 값으로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에서 특별한 기준을 찾기는 어려운데, 본 연구는 미국 노동시장을 연구한 Gregory et al.(2022)에서 K의 값이 3으로 결정되었음을 참고하여 $\bar{K} = 5$ 인 상태에서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한편 단계 3-a 및 단계 3-b에서 도출된 하위 표본 S_0 에 대한 군집화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각 군집들을 상호 대응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도 합의된 기준을 찾기는 어려운데, 본 연구는 단계 3-a 및 단계 3-b에서 형성되는 군집들의 크기 분포가 비교적 유사하다는 관찰에 근거하여 단계 3-a에

서 형성된 군집들 중 n 번째로 큰 군집을 단계 3-b에서 형성된 군집들 중 n 번째로 큰 군집에 대응시키도록 한다. 끝으로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가 초기 중심점들에 민감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각 $\bar{k} \in \{2, 3, \dots, K\}$ 에 대하여 단계 2-3을 200회 반복 수행하고 식 (3) 계산 시 그 평균을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III. 분석 자료

노동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고령층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개인별 노동이력을 상세히 담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장단기 실업의 유무나 정도, 일자리 지속기간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일자리별 시작 및 종료 시점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관리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45세 이상 국민(제주도 거주자는 제외)을 설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개인별로 평생에 걸친 노동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직업력 조사는 일자리별 시작 및 종료 시점을 연 단위로만 파악하고 있어 실업 및 취업 기간을 상세히 파악하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관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에 활용하기로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고령층에 특화된 조사는 아니므로 관측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개인별 노동이력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할 직업력 자료의 경우 일반적인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 자료와는 구조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어지는 제1절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한편 제 II장에서 소개한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업력 자료를 그에 적합하게 변환·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절에서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고령층에 특화된 조사는 아니므로 관측치 수가 제한적이나 개인별 노동이력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여 제공하고 있다.

직업력 자료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들 중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정보는 취업 및 퇴직 시점
관련 응답들이다.

1.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⁸⁾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일자리를 기본 단위로 삼아 구축된 자료로서, 한 개인이 노동시장 최초 진입 이후 경험하였던 모든 일자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당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상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취업 및 퇴직 시점, 업종·직종·직위 관련 정보,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⁹⁾ 따라서 가장 최근에 공개된 24차 자료를 기준으로 총 2만 8,704명이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8만 3,510개의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⁰⁾

직업력 자료가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 중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정보는 취업 및 퇴직 시점 관련 응답들이다. <표 3>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는 한 일자리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일 단위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시작일과 종료일은 무응답 또는 결측치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취업기간과 실업기간을 월 단위로 구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표 3>에 등장하는 개인 11111이 경험한 첫 번째 일자리의 취업기간은 1988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총 120개월로 계산된다. 한편 동일한 예시에서 개인 11111은 1998년 3월 첫 번째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1999년 6월 두 번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첫 번째 일자리 퇴직 이후 두 번째 일자리 취업까지의 15개월을 실업기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직업력 자료

<표 3>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 예시

개인 식별번호	일자리 번호	일자리 발견 차수	취업시기			퇴직시기		
			년	월	일	년	월	일
11111	1	1	1988	3	-1	1998	3	-1
11111	2	1	1999	6	-1	2002	11	-1
11111	3	1	2003	1	15	.	.	.
11111	3	2	2003	1	15	.	.	.
11111	3	3	2003	1	15	.	.	.
...

주: ‘-1’은 모름 또는 무응답, ‘.’은 결측을 의미
출처: 저자 작성

8) 이하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에 관한 내용은 장인성 외(2022), pp. 101~10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9) 단, 1차 조사 시점 이전의 일자리 정보는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로서 취업·퇴직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10) 즉, 개인당 평균 2.91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로부터 해당 기간 개인의 실업 여부를 엄밀히 판정하고 그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실업기간의 일반적인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자료 구축

제Ⅱ장에서 소개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령층의 유형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았던 이들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과 2010년 사이 경험하였던 실업(미취업)기간이 24개월 이내인 관측치들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이때 1991년 이전에 완전히 종료되었던 취업기간과 실업기간은 해당 개인의 노동이력에서 제외하였으며, 1991년 1월이 취업 또는 실업 기간에 포함된 경우 노동이력에 포함시켰다.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시작된 취업기간과 실업기간은 해당 개인의 노동이력에서 제외하였으나, 2010년 12월이 취업 또는 실업 기간에 포함된 경우 노동이력에 포함시켰다. 한편 1993년 이후 노동이력이 시작되거나 2009년 이후 노동이력이 더 이상 관측되지 않는 개인들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¹¹⁾

이상에서 구축한 개인별 직업력 표본은 분석 기간 동안 해당 개인들의 노동

고령층의 유형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았던 이들로 표본을 한정한다.

<표 4> K-평균 군집화에 사용한 변수 목록

표기	의미
U	총 노동이력 기간 중 실업기간의 비율
U_1	실업기간과 취업기간의 수 대비 6개월 이하 실업기간의 수
U_2	실업기간과 취업기간의 수 대비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실업기간의 수
U_3	실업기간과 취업기간의 수 대비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실업기간의 수
E_1	실업기간과 취업기간의 수 대비 24개월 이하 취업기간의 수
E_2	실업기간과 취업기간의 수 대비 24개월 초과 60개월 이하 취업기간의 수
E_3	실업기간과 취업기간의 수 대비 60개월 초과 120개월 이하 취업기간의 수
E_4	실업기간과 취업기간의 수 대비 120개월 초과 취업기간의 수
N	총 노동이력 기간(연 단위로 환산) 대비 취업기간의 수

출처: 저자 작성

11) 이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측치들로 표본을 구축함에 따라 분석 표본의 대표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독자들은 본고의 결과 해석 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별 노동이력의 특징을
보다 요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새롭게 생성하여
유형화 분석에 활용한다.

이력 관련 정보를 방대하게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노동이력의 특징을 보다 요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새롭게 생성하여 유형화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4> 참조). 우선 각 개인이 분석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총 기간을 가늠하기 위하여 개인별 총 노동이력 기간 중 실업기간의 비율을 U 로 정의하여 구축·활용한다. 또한 개인별 실업기간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6개월 이하 실업기간의 수,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실업기간의 수,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실업기간의 수 각각이 실업기간 수와 취업기간 수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U_1, U_2, U_3)을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한다.¹²⁾ 한편 개인별 취업기간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24개월 이하 취업기간의 수, 24개월 초과 60개월 이하 취업기간의 수, 60개월 초과 120개월 이하 취업기간의 수, 120개월 초과 취업기간의 수 각각이 실업기간 수와 취업기간 수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E_1, E_2, E_3, E_4)을 계산하여 군집화 분석 시 변수로 사용한다.¹³⁾ 끝으로 일자리 간 이동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총 노동이력 기간 대비 취업기간의 수(N)를 산출하여 활용한다.¹⁴⁾

<표 5>는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개인 2,000명과 해당 일자리 3,377개와 관련된 기초통계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최종 표본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461명(73%) 및 539명(27%)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출생연도는 평균 1956년으로 확인된다. 한편 평균적인 총 실업기간은 3.81개월로 집계되는데, 남성의 총 실업기간은 평균 2.82개월의 실업기간을 경험한 여성보다 1.36개월 긴 4.18개월로 나타나고 있다.¹⁵⁾ 총 취업기간의 경우에도 성별 차이가 관찰되는데, 여성이 평균 36.23년의 취업기간을 보유하여 평균 34.18년을 경험한 남성에 비해 2.05년 더 오래 취업상태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리하자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긴 실업기간과 더 짧은 취업기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셈인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0.29개 더 많은 일자리를 보유했었다는 사실과 함께 분석 기간 중 남성이 실직 내지 이직을 더 빈번히 경험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표 5>는 K-평균 군집화를 위해 새롭게 생성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역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기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통계량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령 6개월 이하 실업기간 수의 상대적 비율(U_1)은 남성이 여성의 1.76배 수준, 반면 120개월 초과 취업기간 수

12) 당연하게도 U_1, U_2, U_3 계산 시 Gregory et al.(2022)과 같이 (실업기간 수와 취업기간 수의 합이 아닌) 실업기간 수를 분모로 삼는 것이 실업기간의 분포 파악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기간 수가 0인 개인들이 표본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실업기간 수 대신 실업기간 수와 취업기간 수의 합을 분모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3) 앞서 정의한 U_1, U_2, U_3 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E_1, E_2, E_3, E_4 정의 시 취업기간 수 대신 실업기간 수와 취업기간 수의 합을 분모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14) 단, N 계산 시 총 노동이력 기간은 연 단위로 환산하여 투입하도록 한다.

15) 본문에서 보고되고 있는 실업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편인데, 이는 (앞서 각주 11에서 언급한 대로) 표본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편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 분석 자료 기초통계량

변수		전체	성별	
			남성	여성
기본 변수	출생연도(년)	1956	1957	1955
	실업기간(월)	3.81	4.18	2.82
	취업기간(년)	34.73	34.18	36.23
	노동이력(년)	35.05	34.53	36.46
	평균 일자리 수(개)	1.69	1.77	1.48
K-평균 군집화 사용 변수	U	0.011	0.012	0.008
	U_1	0.098	0.111	0.063
	U_2	0.021	0.024	0.014
	U_3	0.024	0.026	0.018
	E_1	0.020	0.022	0.016
	E_2	0.026	0.029	0.020
	E_3	0.039	0.042	0.032
	E_4	0.771	0.747	0.837
	N	0.053	0.056	0.046
관측치 수(명)		2,000	1,461	539

주: K-평균 군집화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는 <표 4> 참조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 상대적 비율(E_4)은 여성이 남성의 1.12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평균 군집화 결과가 성별 정보에 의해 일부 예측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Ⅳ장에서 유형화 결과를 소개할 때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IV. 분석 결과

본 장은 제Ⅱ장에서 소개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에 적용하여 고령층을 유형화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미 논의하였듯이 실제 군집화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군집의 개수가 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제1절에서는 교차 검증 방법을 통하여 군집의 개수가 결정된 과정을 우선 논의하도록 한다. 이후 군집화 수행 결과 도출된 유형들의 특성을 노동이력 관

분석 표본 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긴 실업기간과
더 짧은 취업기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석 기간 중
남성이 실직 내지 이직을
더 빈번히 경험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직업력 자료에 적용하여
고령층의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취업·실업 간 전환의
빈도 및 속도 측면에서
대비되는 두 유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런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성별, 교육수준, 나이 등의 인적 특성들과 노동이력에 기초하여 형성된 유형들 간의 관계를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토한다.

한편 군집화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노동이력 유형은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이질성의 한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제2절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자가 거주,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등 개인별 경제상황 예측에 있어 노동이력 유형의 설명력을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들과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한다. 또한 외환위기 전후(1995~2005년) 노동이력 유형별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질성으로서 노동이력 유형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 역시 덧붙이기로 한다.

1. 유형화 결과

교차 검증 방법을 통하여 군집의 개수 K 를 탐색한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제II장 제2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각 $\tilde{K} \in \{2, 3, \dots, K\}$ 에 대하여 교차 검증의 단계 2~3을 200회 반복 수행하고 그 평균을 활용하여 식 (3)의 값을 계산한 결과, $\tilde{K} = 2$ 일 때 동일한 관측치가 일정하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가장 최소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표본이 아닌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하위 표본을 대상으로 삼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다만 남성의 경우 $\tilde{K} = 4$ 가 최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하 분석 결과 해석 시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던 Gregory

<표 6> Wang(2010)의 교차 검증 방법 수행 결과

\tilde{K}	전체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	0.03	0.15	0.08	0.26	0.02	0.14
3	0.14	0.34	0.10	0.25	0.05	0.18
4	0.11	0.28	0.10	0.20	0.31	0.37
5	0.41	0.24	0.42	0.27	0.19	0.21
관측치 수	1,000		730		269	

주: 교차 검증 방법의 단계 2~3을 200회 반복 수행한 결과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t al.(2022)의 경우 노동시장 내 3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고령층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군집의 개수 K 가 2로 정해진 상태에서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형성된 2개의 군집 중 관측치 수가 더 많은 군집을 ‘유형 A’, 더 적은 군집을 ‘유형 B’로 명명하면, 유형 A에 속한 관측치가 전체 표본의 91.2%를 차지하여 절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형별 노동이력 차이는 선명하게 관찰되는데, 가령 유형 A에 속한 개인들의 경우 총 노동이력 기간 중 실업기간이 차지하는 비율(U)이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총 노동이력 기간 중 7.49%를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던 유형 B 개인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형 A 개인들은 6개월 이하 단기실업과 12개월 초과 장기취업을 주로 경험한 반면, 유형 B 개인들은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의 장기실업과 24개월 이하의 단기취업을 빈번히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유형 A에 속한 개인들은 분석 기간 중 실업상태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실업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취업하여 해당 일자리에 10년 이상 장기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형 B에 속한 개인들은 실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했던 가운데 취업상태로의 전환 이후

유형 A에 속한 개인들은 분석 기간 중 실업상태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실업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취업하여 해당 일자리에 10년 이상 장기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7>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수행 결과¹⁾

변수 ²⁾	전체		남성		여성	
	유형 A	유형 B	유형 A	유형 B	유형 A	유형 B
U	0.45	7.49	0.49	7.41	0.29	7.45
U_1	8.46	23.81	9.84	22.86	4.83	24.68
U_2	1.60	7.63	1.80	7.82	1.00	6.81
U_3	1.43	12.56	1.45	13.60	0.99	12.01
E_1	0.76	14.79	0.87	14.12	0.48	14.96
E_2	1.62	13.22	1.82	12.74	1.07	13.27
E_3	3.15	12.00	3.40	11.48	2.35	14.15
E_4	82.99	15.99	80.82	17.39	89.28	14.13
N	4.15	17.64	4.36	16.98	3.55	18.26
비중	91.20	8.80	90.28	9.72	92.58	7.42

주: 1) 실제 유형별 변수들의 평균값에 100을 곱한 수치임

2) K-평균 군집화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는 <표 4> 참조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유형 B에 속한 개인들은
 실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했던 가운데
 취업상태로의 전환 이후에도
 2년 이내 해당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인적 특성 및 노동이력 변수들의 유형 예측 결과

변수	전체			남성		
	(1)	(2)	(3)	(1)	(2)	(3)
여성	-0.012	0.010	0.013	-	-	-
고졸	0.011	0.001	0.013	0.035*	0.024	0.026***
전문대졸	-0.042**	-0.052**	0.003	-0.021	-0.028	-0.002
대졸	-0.025	0.006	0.023*	-0.016	0.005	0.022*
석사 이상	0.020	0.105*	0.045*	0.010	0.085	0.033*
출생연도	0.006***	0.005***	-0.001	0.006***	0.005***	-0.000
U_1			-0.017			-0.042
U_2			0.105***			0.161***
U_3			0.141***			0.219***
E_1	-	-	0.017	-	-	0.028
E_2			0.021			0.028
E_3			0.010			0.004
N			2.631***			3.891***
지역·산업·직업	N	Y	Y	N	Y	Y
관측치 수	2,000	1,497	1,497	1,461	1,189	1,189
Pseudo R^2	0.063	0.332	0.912	0.061	0.301	0.938

주: ***, **, * 각각 $p < 0.01$, $p < 0.05$, $p < 0.1$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에도 2년 이내 해당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유형 A 개인들과 유형 B 개인들은, 적어도 노동이력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집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노동시장 내 이질적 집단들의 공존이 미국(Gregory et al., 2022), 이탈리아(Spinella, 2021), 덴마크(Darougheh and Lundgren, 2022) 등에서도 목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의 독특한 특성은 아니라고 하겠다.

한편 제Ⅲ장에서 간략히 언급했던 바와 같이 K-평균 군집화 결과가 성별, 교육수준, 나이 등 인적 특성들에 의해 (일부) 예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표 8>은 이를 보다 엄밀히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유형 B 여부를 종속변수로, 인적 특성 및 노동이력 변수들, 지역·산업·직업 관련 정보들을 설명변수로 삼는 프로빗 모형(probit

16)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던 Gregory et al.(2022)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유형 A는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유형 α, 유형 B는 유형 γ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model)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는데, 인적 특성 변수들의 경우 추정된 한계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유의한 경우에도 그 값이 대체로 미미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인적 특성 변수들만을 설명변수로 고려하는 모형의
유사 결정계수(pseudo R^2) 값은 0.0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
해 성별, 교육수준, 나이 등 인적 특성들만으로는 노동이력에 기초하여 형성된
유형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적 특성 변수들에 더해 지역·산업·직업 관련 정보들까지 추가할 경우
해당 모형의 유사 결정계수 값이 0.332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는 노동이력 유형이 특정 산업 내지 직업 종사 여부에 의해 일부 설명될 수 있
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¹⁷⁾ 그러나 (군집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노동이력 변
수들의 설명력과 비교할 때 지역·산업·직업 관련 정보들의 설명력은 여전히 낮
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군집화를 통하여 도출된 노동이력 관련 유
형을 (인적 특성 내지 지역·산업·직업 관련 정보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차원의
이질성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군집화를 통하여 도출된
노동이력 관련 유형을,
인적 특성 내지
지역·산업·직업 관련
정보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차원의
이질성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이질성으로서의 유형

군집화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노동이력 관련 유형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이질성의 한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그 중
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표 9>는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자가 거

<표 9> 인적 특성 및 노동이력 유형의 개인별 경제상황 예측 결과

변수	근로장려금 수급		비(非)자가 거주		부정적 경제상태 인식	
	(1)	(2)	(1)	(2)	(1)	(2)
여성	0.015	0.014	0.070***	0.069***	0.012	0.012
고졸 이하	0.009	0.011	0.010	0.008	0.019	0.016
출생연도	-0.001	-0.001	0.002**	0.002*	0.001	0.001
유형 B	-	0.065*	-	0.090**	-	0.064**
지역·산업·직업	Y	Y	Y	Y	Y	Y
관측치 수	1,219	1,219	1,953	1,953	1,862	1,862
Pseudo R^2	0.151	0.169	0.121	0.125	0.100	0.109

주: ***, **, * 각각 $p < 0.01$, $p < 0.05$, $p < 0.1$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7) 참고로 Gregory et al.(2022)
에서는 인적 특성과 상세
한 산업 정보가 포함되더라
도 해당 모형의 유사 결정
계수 값이 0.034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표본에는
Gregory et al.(2022)과 달
리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
문 종사자들이 상당수 포함
되어 있어 산업 및 직업 변
수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으
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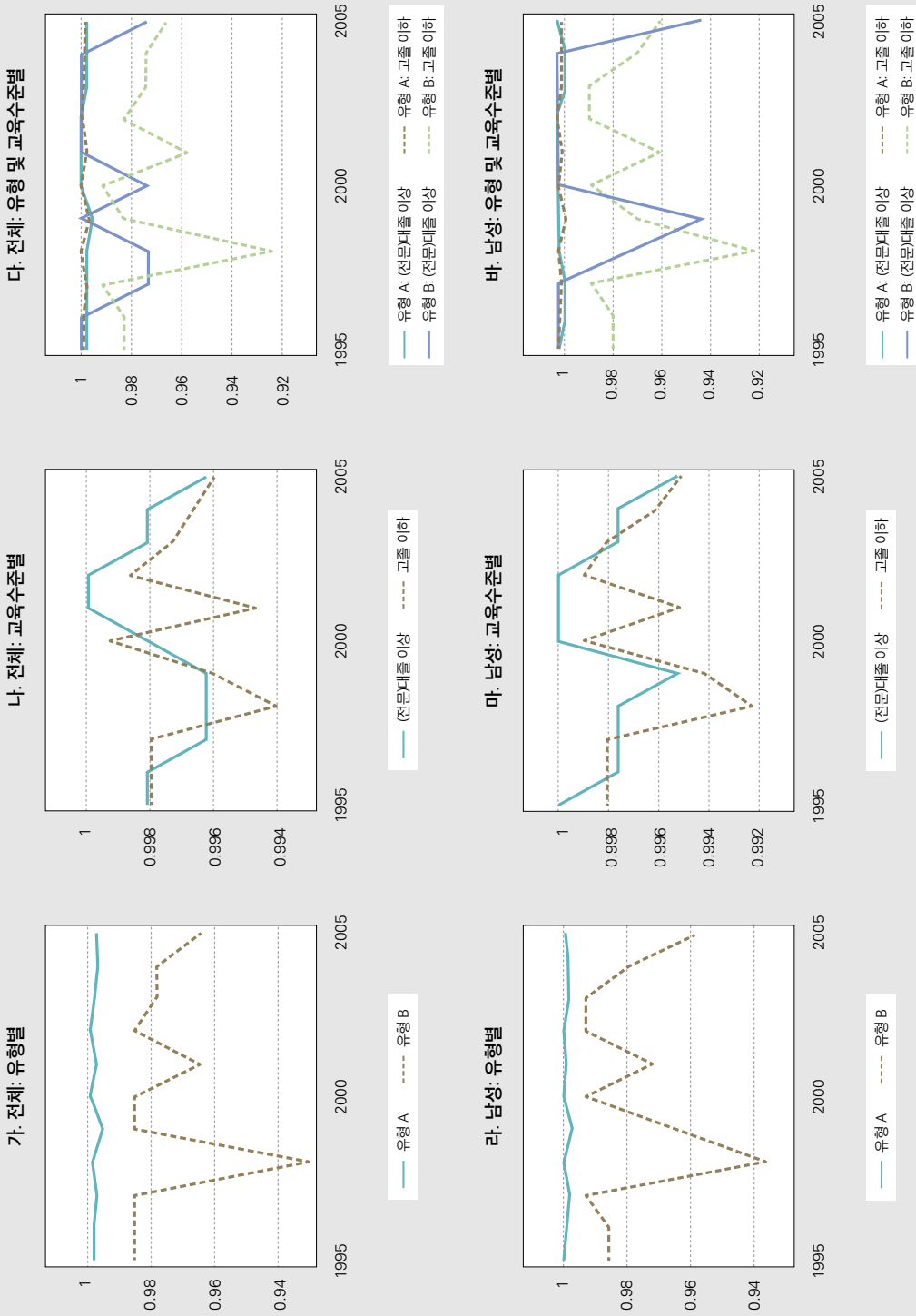
개인별 경제상황
예측에 있어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들과 대비되는
노동이력 유형의
유의한 설명력이 관찰되며,
경제 전체의 고용률이나
실업률 변동이
사실상 유형 B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 역시
목격된다.

주 여부, 부정적인 경제상태 인식 등 개인별 경제상황(2020년 기준) 예측에 있어 노동이력 유형이 지닌 설명력을 성별, 교육수준, 연령 등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들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형 B에 속한 고령층은 유형 A에 속한 고령층에 비해 근로장려금을 수급 중일 확률이 6.5%,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로 입주해 있을 확률이 9.0%, 자신의 경제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6.4%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정치들이 5~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성별, 교육수준, 연령 등의 변수들과 관련된 추정치들의 경우 동일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더라도 그 추정치의 절대적 크기가 노동이력 유형 관련 추정치의 절대적 크기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고령층의 개인별 경제상황을 설명하거나 예측함에 있어 노동이력 유형이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들 대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질성으로서 노동이력 유형이 갖는 중요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의 ‘가’는 외환위기 전후(1995~2005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노동이력 유형별 고용률¹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실선은 유형 A의 고용률 추이, 점선은 유형 B의 고용률 추이에 각각 해당하는데, 유형 A의 고용률은 분석 기간 동안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형 B의 고용률은 분석 기간 동안 유형 A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해당 기간 동안 변동성이 상당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전체의 고용률이나 실업률 변동이 사실상 유형 B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을 이해함에 있어 노동이력 유형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전체 표본에 속한 개인들을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동일 기간 고용률 추이를 살펴볼 경우 (전문)대졸 이상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 간에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관찰하기 어려운데([그림 2]의 ‘나’ 참조), 이는 통상 자료에서 직접 관찰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만을 개인별 이질성의 주요 측면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이나 실업률 변동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개인별 이질성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관찰 결과라 할 수 있다.

18) [그림 2]에서의 고용률은 (분석 표본에 속한) 특정 개인이 특정 연도 동안 일자리를 1개 이상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된 경우 그 시점이나 지속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계산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유형 및 교육수준별 고용률 추이: 1995~2005년



주: 고용률은 특정 개인이 특정 연도 동안 일자리를 1개 이상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된 경우 그 시점이나 지속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계산함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단위에서
취업·실업 간 전환의
빈도 및 속도와
관련된 특성을
정책당국이
자료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V.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에 적용하여 고령층의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취업·실업 간 전환의 빈도 및 속도 측면에서 대비되는 두 유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절대다수(91%)를 차지하는 유형 A가 단기실업 및 장기취업의 특성을 지닌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집단(9%)에 해당하는 유형 B의 경우 장기실업 및 단기취업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노동이력 유형이 성별, 교육수준, 나이 등 일반적인 인적 특성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근로장려금 수급, 자가 보유,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등 개인별 경제상황 예측에 있어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들과 대비되는 노동이력 유형의 유의한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형 B에 의해 경제 전체의 고용률이나 실업률 변동이 주도될 가능성이 목격됨에 따라 자료에서 직접 관찰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만 의존하여 실업의 민감성 및 지속성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개인별 이질성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추가로 밝혀내었다.

노동이력에 기초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이질성으로서 노동이력 유형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단위에서 취업·실업 간 전환의 빈도 및 속도와 관련된 특성을 정책당국이 자료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장기적·반복적 실업 경험자들이 중·노년기에 진입한 이후 맞이하게 될 개인별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해당자들에게 취업촉진 내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차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역시 시사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개인들의 평균 출생연도는 1956년임을 앞서 언급하였는데, 1960년대생 혹은 그 이후 세대의 경우 이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다른 세대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취업·실업 간 전환의 빈도 및 속도와 관련된 개인별 특성(유형)이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지, 나아가 인적 특성 및 지역·산업·직업 정보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개인별 유형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들도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KIP**

참고문헌

- 민현주·이수경,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지위 변화 유형화: 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2018, pp. 169~194.
- 손연정,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9(1), 2022, pp. 37~60.
- 장인성·이지은·신선옥·정현상·권익성, 『한국노동패널 1~2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2022.
- Bonhomme, S., T. Lamadon, and E. Manresa, “A Distributional Framework for Matched Employer Employee Data,” *Econometrica*, 87(3), 2019, pp. 699~739.
- Bonhomme, S., T. Lamadon, and E. Manresa, “Discretizing Unobserved Heterogeneity,” *Econometrica*, 90(2), 2022, pp. 625~643.
- Choi, I., “Classifying the Elderly based on their Pattern of Labor Market Transitions: The Case of Korea,” Manuscript, 2023.
- Darougheh, S., and G. Lundgren, “Worker Protection and Screening,” Manuscript, 2022.
- Gregory, V., G. Menzio, and D. Wiczer, “The Alpha Beta Gamma of the Labor Market,”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orking Paper 2021-003, 2022.
- Hastie, T., R. Tibshirani, and J. Friedman,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Data Mining, Inference, and Prediction (Second Edition)*, Springer, 2009.
- Spinella, S., “Discretizing Workers’ Heterogeneity: The Alpha Beta Gamma of the Italian Labor Market,” Master’s Thesis, Università Bocconi, 2021.
- Wang, J., “Consistent Selection of the Number of Clusters via Crossvalidation,” *Biometrika*, 97(4), 2010, pp. 893~904.



정책토론키포트

- + 2023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 + 2023년도 PEMNA 예산분과 딜리 회의

2023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요

- **일 시** 2023년 9월 18일 (월) 14:00 ~ 18:00
- **장 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소연회장 1, 2, 3
- **문 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 **프로그램**

구분	주제	발표	토론	
세션 I	사회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1 사회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김혜자	최인희	
	2 가구의 예상 공격연금소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서영빈 송헌재	이경훈	
	3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기부 분야별 기부행위 결정요인 탐색	주익현	권성준	
세션 II	사회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1 조세구조와 복지정책에 관한 선호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만족도에 미친 영향	강민조	신영호	
	2 조세제도를 이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방식의 분석	전병욱	안종석	
	3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이용한 가구의 소비지출 결정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김재현 송헌재	김문정	
세션 III	사회 전병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재정패널자료로 본 개인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이호선	신상화	
	2 가구주 근로 여건 및 가구 자산구성 차이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순국 김경아	황남희	
	3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한국사회 가계부채의 변화 추이 -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중단연구 -	박호준 박정민	최인혁	
세션 IV	사회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납세자의 조세 공정성 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이경호	김정환	
	2 재산과세의 분포 특성과 재분배 효과	성명재	최승문	
	3 위험선호는 자산을 증대시키는가?	김대환	홍병진	
	4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	박명호	김평식	
대학원생 우수 논문 발표	사회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토론 문지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우수	Crowding Out Effect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Approach with a Case Study of the Korean Context in 2014	김진석 최은진	
		Tax on High-value Real Estate, House Prices, Rents, and Inequality	도영웅	
장려	금융투자자산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 - 잠재성장모형을 바탕으로 -	정우진 허민영 전다현		

세션
I1. 사회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발표 요약

김해자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유·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주(부모)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제11~15차 데이터를 이용해 20세 이하 자녀 가구원을 추출하고 가구주 정보와의 매칭을 통해 자녀 패널자료를 생성했다. 먼저 2018~2022년의 사교육비,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위험회피 성향, 사회·정치 신뢰를 비교하였다. 2018년 대비 2019~2022년 모든 학교급에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증가했지만, 코로나 시기로 명명되는 2019~2021년 기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 이후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 규모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은 유·초·중·고 모두에서 1점(매우 크다)대를 보였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가구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이 사회 전반에서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험회피 성향은 유·초·중·고 모두 7점대를 보여 수익성 대비 안정성을 지향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를 둔 가구주(부모)일 때 지난 5년간 위험회피 성향의 변

화가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시점별 학교급에 따른 위험회피 성향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신뢰는 보통에서 대체로 신뢰할 수 없는 정도의 가운데인 3점 초·중반대로 부정적 방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치 신뢰수준은 학교급 및 시점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소득분위에 따라라도 시점별 학교급 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주(부모)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가구주(부모)의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계층 간 소득 격차 완화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 대비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혹은 신뢰는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일수록, 법조인과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 방향으로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해 사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자녀 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토론 요약

최인희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재정패널조사」 제11차(2018년)부터

제15차(2022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와 계층간 소득 격차, 위험회피성향,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신뢰와 같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표성을 갖는 대규모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의 지출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 시기가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행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고 보았다. 다만 연구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고 후속연구에 제언을 목적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위주로 토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교육비의 의미: 공교육이 아닌 모든 영역을 사교육이라 통칭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교육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많은 유형으로 세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게는 학업과 관련된 사교육과 학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교육(예: 예체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개인과외와 같은 일대일 혹은 소수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인터넷 강의와 같이 비대면 형태의 사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형태에 따라서 사교육을 받는 목적이나 이유도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유·초등에서는 학업보다는 예체능 사교육의 비중이 중·고등에 비해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온라인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에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종류의 사교육

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교육의 유형, 혹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교육비의 변화 양상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현상을 보다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불가피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논문에서 이에 대한 언급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고, 관련하여 사교육비와 관련된 조사 설계에 시사점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 패널자료(panel data) 혹은 합동횡단자료(pooled cross-sectional data):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제11차부터 제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기보다는 각 시점별 자료가 대표성을 갖는 표본에서 추출된 자료라고 보기에 합동횡단자료로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료가 패널자료임을 고려할 때, 분석에 포함된 1만 1,401명이 모두 서로 다른 가구인지 혹은 동일한 가구가 두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결과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제11차부터 제15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계열 혹은 종단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면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 가구 내에서 코로나 전후의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심리적 요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

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라고 생각되고, 실제 사교육비 지출에는 불안감, 경쟁심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유사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 심리적 요인으로서 “학벌주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정우찬, 2010), “명문대 중심 대입관”(이수정, 2007), “부모의 평등에 대한 인식”(이진우, 백승주, 2021),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김정옥, 배호중, 2021) 등이 고려되었던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점을 강조할 수 있다면 이론적 배경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 사회·정치 신뢰의 상반된 영향: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모형 3에서 사회·정치 신뢰 항목에서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에 대한 신뢰와 법조인,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이 상반되는 방향으로 분석된 점이었다.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는 논문에서 해석한 것처럼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일수록, 법조인,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가 궁금해졌다. 사교육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사교육비 지출 영향요인으로서 이들 집단 안에 공통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적 신뢰관계에 있어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세션 I

2. 가구의 예상 공적연금소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발표 요약

서영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의 2014~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예상 공적연금소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사교육비 지출액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패널토빗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사교육비 지출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미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하는 가구의 소비 행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질적 증대와 경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의 설계와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토론 요약

이경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제7~14차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은퇴 노후 자금인 예상 공적연금소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공적연금수령액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양의 효과가 있으며, 이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노인빈곤률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작금의 상황에서 가구의 미래소득과 현재 지출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논문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사교육비 지출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현재 소득과 미래소득이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헌점에 더하여 본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석자료의 샘플과 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가진 가구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가진 가구에 비해 대학원생 자녀에 사용하는 사교육비가 가지는 특성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분석 결과에 편향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 자녀는 다른 어린 자녀들과 다르게 사교육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특정분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다. 또

한 대학원생 자녀의 경우 자신이 직접 지출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가구주, 즉 부모의 지출이 정확한 사교육비 지출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학원생 자녀를 가진 가구를 샘플에서 제거하여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들을 없애는 것이 공적연금수령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소득과 미래소득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분석에 있어서 현재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이 소득의 9%이며, 이는 회귀분석에 있어서 소득과 연금수령액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표 IV-1>과 <표 IV-2>를 보면 가구소득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현재소득의 효과가 다중공선성에 의해서 공적연금수령의 효과에 포함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토빗모형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강건성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교육비의 중도절단 발생인데, 이는 사실 지역별 또는 자녀의 학교별 특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구조적인 사교육비 중도절단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분석 모델에 좀 더 적합한 도구변수를 찾아내 내생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학교가 사교육에 준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또한, 패널토빗모형 이외에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이나 랜덤효과모형

(Random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패널토빗 모형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설계가 얼마나 강건한지, 그리고 기존 연구에 비해 얼마나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내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공적연금수령액의 이질적 효과분석을 위해 샘플을 나눠서 분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먼저 공적연금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이 추후에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현재의 데이터에서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연금(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의 비율이 5% 이하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연금을 수령하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의 경향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도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자녀의 숫자, 자녀의 성별 등과 같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공적연금수령액의 효과가 얼마나 다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인적자본축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부모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가구별 특성을 이용한 이질적 효과분석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분석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은 현재소득과는 무관하고 미래소득에만 영향을 받는다. 즉,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현재소득과 미래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학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 분석이 있다면 앞으로의 정책수립 및 연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션 I

3.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기부 분야별 기부행위 결정요인 탐색

발표 요약

주익현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본 연구는 기부 분야별로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조사」 제1~15차 원자료를 확보하였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패널고정효과모형, 기부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반복사건사 분석방법 중 하나인 PWP Counting Process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모든 기부 분야에서 기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소득 뿐이었다. 둘째, 종교는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기부를 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셋째, 개인소득은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종교 분야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이는 기부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특성 외 다른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토론 요약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기부 분야별로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살펴본 기부 분야는 정당, 교육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 종교, 기타로 분류하며, 기부 여부와 기부금액을 기부행위에 대한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저자는 기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PWP Counting Process 모형을 이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기부가 발생하는 확률에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패널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이 아닌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것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시간불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분석에는 제1~15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저자는 기부 분야에 따라 기부 여부와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고, 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을 구상할 때 기부 분야별로 달리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기부 분야를 구분하여 기부행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부 분야별 기부행위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 전략 구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자들의 이해향상, 구체적인 시사점 도출 등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PWP Counting Process 모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이 모형의 수학적 표현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모형을 통해 결과 또는 모형의 모수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모형을 통해 위험률이 계산되고 이를 이용한 결과들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률의 수학적 표현과 해석에 대한 논의도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패널모형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이 아닌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이유 중 하나로는 본 연구의 관심사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도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언급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기간 중에는 기부금과 관련된 조세정책이 많이 변화한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2014년에 공제제도의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존재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 이후에는 세액공제율도 빈번하게 변화해왔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이유 또는 이론

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변수 중에는 기부행위 또는 기부문화 확산 전략과 관련성이 다소 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성별, 직업, 종사상 지위 등도 고려되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를 고려한다면 세대 간 기부행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 유무와 연령대에 따라서도 기부 동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연령대와 자녀 유무의 교호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략적인 변수선택을 통해 시사점과 연계한 구조적인 분석을 한다면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결론에서의 시사점, 특히 기부문화 확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부형태별 기부자 및 기부금액에 대한 기초통계도 제시하면 현재 기부현황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션 II

1. 조세구조와 복지정책에 관한 선호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만족도에 미친 영향

발표 요약

강민조 |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원정책 만족도와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

적 선호의 연계성을 밝힘으로써 정책당국의 경제지원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조세구조 및 복지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구조에 관한 선호를 조세부담률과 조세누진성으로, 복지정책에 관한 선호를 복지체제와 복지증세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지원금의 필요성 및 지원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 미친 주요 요인을 탐색한다. 특히, 재정패널 데이터가 제공하는 고유한 연구 기회를 활용하여 적정 조세부담률 및 적정 누진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선호체계를 표준화된 지표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누진적 조세체계를 선호할수록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긍정하였지만, 지원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선별적 복지정책을 강하게 지지할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호가 지원금액의 평가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단기적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조세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장기적 선호체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조세누진성에 대한 선호 및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선호가 코로나19 지원금의 필요성 및 지원금액의 적절성 평가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세구조 및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연관하여 파악할 필

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사회적 신뢰는 보편적 또는 선별적 지원 방식과 무관하게 지원금의 필요성과 지원금액의 적절성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지와 사회적 신뢰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을 위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토론 요약

신영호 |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원정책 만족도와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선호의 연계성을 확인한다.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적정 조세부담률 및 누진성에 대한 납세자의 선호체계를 Suits 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누진적 조세체계를 선호할수록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긍정하였으나 지원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본고는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강하게 지지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호가 지원금액의 평가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재정패널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내용에 대해 검토 및 수정·보완하기를 제안한다.

첫째, 주요 관심변수로 조세구조에 대한 선호를 Suits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누진성 지수 산출 사례의 내용에서 누진세 부담률에 일부 오류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Suits 지수에 대한 그래프 등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측정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가상의 사례(주관적 선호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누진성 지수를 산출한 것이지만 선행연구(성명재, 2016) 등을 참고하여 실제 자료로도 도출한 Suits 지수와 비교를 통해 보완 설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재정패널 중 몇 차 연도의 어떠한 자료를 활용했으며, 관측수 등 연구자료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관심변수로 활용한 자료가 재정패널 중 어느 설문 문항에서 활용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순서화된 리카트형 척도이므로 Ordered Logit(Probit) 모형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 항목별 응답비율이나 주요 관심 변수의 결합 분포를 분석하여 결과해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여 분석 결과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세구조 및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연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선호체계와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연계성이 높다고 설명하는데 이 경우 정책 설계 시 어떠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정책적 공헌도를 높일 수 있다.

세션 II 2. 조세제도를 이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방식의 분석

발표 요약

전병욱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제1차 재난지원금의 당초 지원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득하위 70% 가구였는데, 이와 같은 선별적 지원방식에 대한 지원 대상의 타당성 및 문턱효과의 비판과 함께 대규모의 행정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측면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동(同)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시행상의 논란을 고려하면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래에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방식을 채택하면서 보완적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해서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세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보편적 지원방식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를 전제로 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이를 조세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과세체계의 다양한 개편방안과 함께 개별 방안의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

와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먼저, 지원 단위는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가구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안(방안 ①),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가구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방안 ②) 및 성년 가구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방안 ③)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의 종류는 개별 수령자가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방안 ④) 및 근로·기타소득으로(방안 ⑤) 구분하는 방안과 함께 전액을 기타소득(방안 ⑥) 및 배당소득으로(방안 ⑦) 구분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의제·추계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별도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담세액 비율은 대부분 개별 과세방안과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서 재난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담세액 비율을 통해 확인한 정부의 세수효과는 개별 과세방안에 따라 5.5~14.0%로 나타났는데,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가구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의 세수효과(11.3%)는 제1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당초 지원대상이 아닌 상위 30%의 가구에 대한 지급비율(22.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 지원방식의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당초의 선별적 지원방안에 비해서는 재정절감액이 절반 수준이지만,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함께 임의적 기준의 적용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과

지 고려하면 장래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대안적 시행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토론 요약

안종석 |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본 연구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제1차 재난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그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면 누진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제는 정부보조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사례도 없었고, 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금의 지급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과세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부가 지원한 금액 중 세수입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조세정책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제1차 재난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세수

입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을 보면, 현행 소득세제를 그대로 두고 재난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고 각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재난지원금이 가구단위로 지급되었는데, ① 그 지원금 전체를 가구주에 귀속시키는 경우, ② 소득이 있는 성인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그리고 ③ 성인 전체에 동등하게 귀속시키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소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④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으로, 그 외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하고, 그 외 모든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⑥ 모두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⑦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소득에 대해 (1) 추계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기타소득, 사업소득)와 (2)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과세방안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금액의 5.48~14%를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모두 가구주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11.3%를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30%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율 22.1%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소득세 실효세율이 6.49%에서 0.0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증가하여 세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도 0.015%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여 재분배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이며, 현금보조금

의 지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연구가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하면 좀 더 흥미롭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으로 지급한 정부보조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진성의 확보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누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목별로 보면, 재난지원금과 같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가구 간 지원금의 배분은 과세신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가구원을 원인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그 부양가족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귀속시키고, 부양가족을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본인을 원인으로 지급된 부분만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면 된다. 부분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도 않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가구원을 원인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어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도 납세액은 0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무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득구분의 경우, 납세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보조금을 기타소득의 새로운 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정부보조금을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득의 특성보다는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의 기초와 다르다. 기타소득은 모든 일시적, 우발적 소득을 포함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별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예를 들면, 정부보조금의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보조금 총액을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보조금을 포함시켜 정산하도록 하면 되고, 사업소득자와 그 외 종합소득신고자는 종합소득신고 시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도록 해도 발생하는 세수입은 거의 없으므로 무시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부보조금은 필요경비가 없는 것이 명확하므로 추계에 다른 필요경비 공제는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현금보조금이 있는데, 그러한 보조금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효과를 종합해서 검토하면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재원부담도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누진적인 소득세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배분한다면, 재난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션 II

3.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이용한 가구의 소비지출 결정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발표 요약

김재현 | 서울시립대학교 석사수료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긴급재난 지원금을 대표로 수령한 세대주의 성별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해보았다. 가구의 의사결정 과정에 가구원의 협상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집합모형(Collective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여성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전체 분석대상 가구와 가구주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가구에서의 연간 소비지출 금액은 감소하였으며, 가구주의 나이가 50세 미만인 가구에서의 저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소비지출 금액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분석대상 가구에서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경우 가구주의 나이에 따라 분석대상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가구주가 은퇴한 이후의 가구에서 지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여성이 대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론 요약

김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적지 않은 지원금이 각 세대에 일시 지급된 외생적 변화를 활용하여, 세대주의 협상력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재정패널조사」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세대주가 여성인 경우’에 대하여 0 또는 1의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이 변수가 전체 소비 혹은 특정 분야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전술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가구 내 성별에 대한 협상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현금성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급의 단위를 가구와 개인 중 어디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정책현안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라고 판단된다.

연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세 가지 제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패널조사」의 2020년 당시 조사월 정보를 고려하여 분석표본의 강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이 되는 세대는 2020년 5월 이후에 조사된 세대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응답가구의 세대주가 여성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소비 관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회귀분석에서 제시되는 설명변수 계수값을, ‘외생적인 정책 지원

금을 계기로 하여 파악된 여성 세대주의 협상력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세대주'로 등록한 가구의 특성은 그 자체로 임의적(random)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값은 '원래 잠재된 여성 세대주의 협상력'의 수준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셋째, 한 가구 내 '소비'수준이 협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구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 수 있다. 요컨대, '소비'라는 한 가지 측면만으로는 특별한 한 쪽의 협상력 수준을 가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세션 III

1. 재정패널자료로 본 개인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발표 요약

이호선 | 부산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납세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연금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한다. 제15차 재정패널자료들을 기초로 근로소득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들을 소득구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낮은 근로소득 구간에는 상용직보다 임시직과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정패널에서 관찰되는 개인연금 가입자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통계와 비교할 때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연금저축을 포함한 개인연금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통계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재정패널의 설문도 보다 명확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연금보험 항목의 경우 연금저축보험과 혼동되어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며, 세액공제 문항에서는 세액공제액이 아닌 납입액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액공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개인연금제도가 저소득층의 선택유인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재정패널 분석상 개인연금 가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현 연금 수령 계약의 경우 평균 수령액이 3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여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할 것인가가 이제부터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요약

신상화 | 충남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 중 개인연금 관련 문항들의

기초 통계를 생성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자료는 재정패널 제10차에서 제15차까지를 사용했으며, 조사대상은 근로소득자로 한정된 뒤 근로소득을 소득세율 구간별로 구분하여 기초 통계를 생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진행 초기의 연구로 판단되기에 향후 연구 진행 방향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 분석 과정에서 결정세액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 제도의 혜택이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아닌 결정세액 수준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준으로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가입 방식을 분석하면 현재 분석 결과와 다른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금감원 통계와 재정패널 통계 간의 다른 추이에 관한 분석은 다음의 요인을 다시 점검해볼 것을 권고한다. 실제 두 통계 간의 방향성이 다른 것은 중요한 발견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 평균값이 아닌 가중 평균값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제1차년도에 포함된 가구가 탈락하거나 새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구별 가중치가 매년 조정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부족하며, 연구 목표 또한 불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그 결과 결론에서 제시한 개인연금 제도 관련 여러 제언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향후 연구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구

체적 분석을 수행한 뒤 관련 제언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션 III

2. 가구주 근로 여건 및 가구 자산구성 차이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발표 요약

이순국 |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아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제10~14차(2018~2022년)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근로여건과 가구 자산구성 차이에 따른 노후준비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가구의 노후준비 여부, 사적 노후준비 수준(금액), 연령별 노후준비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공적연금 가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일수록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남성가구주이며,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사적 노후준비에는 부정적이거나, 지방에 거주할수록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또한, 상용직일수록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사적 노후준비 수준은 증가하며, 특히 금융자산을 갖고 있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다.

한편, 연령별 노후준비 격차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연금가입 의존도가 떨어지고, 지방에 거주할수록 사적 노후준비가 증가한다. 은퇴 전 연령층(50~60세)은 금융자산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은퇴 후 연령층(61~70세)은 상용직일

수록 사적 노후준비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 근로여건의 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령별, 고용형태별 고령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차별적인 연금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취약계층 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자리에서 계속고용, 자산의 현금유동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들이 요구된다.

토론 요약

황남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제10~14차와 패널모형(로짓, 회귀)을 활용하여 50~70대 가구주의 근로여건과 가구 자산구성의 차이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공·사적 노후준비 여부와 사적 노후준비 수준(금액)이며, 독립변수는 종사상지위(근로여건)와 금융자산·부동산 및 기타 자산·부채 유무(가구 자산구성)이다. 은퇴 혹은 연령집단에 따른 이질성을 고려하여 연령집단을 은퇴 전(50~60세)과 은퇴 후(61~71세)로 구분하여 노후준비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관한 최근 양적 연구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높다.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은퇴 전 스스로 준비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고 있는 최근 이들 대상 노후준비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시대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우리 사회의 사회 불평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생애주기 특성상

점진적 은퇴를 통해 노동소득 획득이 어려워 노후 불평등과 노후 빈곤이 우려되는 연령집단이다.

본 연구는 이미 완성도 있게 진행되었으나, 독자의 가독성을 제고하고 연구 의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보완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이에 맞춰 제목-분석-해석-시사점 도출 과정을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 제목은 '가구의 근로여건 및 가구 자산구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노후준비 영향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연구내용 전반은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준비에 관한 인과성을 모두 살펴보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 필요성과 기존 문헌과의 차별점을 부각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의 높은 빈곤수준, 고령층 이전단계의 베이비붐세대의 자산 등 경제적 격차와 경제활동, 고령층의 근로유형별 및 세대내 격차 등을 검토하는데 그치고 있다. 연구진은 가구주의 근로여건과 가구 자산구성의 차이에 따른 공·사적 노후준비 수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되는지를 선행연구 검토에서 설득력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신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는 상당수 1990~2000년대 노인빈곤, 베이비붐이다. 2023년 현재 베이비붐은 중장년층에서 고령층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연구진이 선행연구에서 주로 인용한 2010년 이전 시기 베이비붐의 노후준비 상황뿐 아니라 과거 노인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중반 이후 노후준비 관련 정책 환경의 급속

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헌 및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및 시행, 동법에 근거한 기본계획 추진(제1차 2015~2020, 제2차 2021~2025),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실시(2016~) 등이다.

넷째, 양적분석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통계량의 분석대상을 50~70세로 한정하고 주요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결과를 제시하고, 패널모형의 하우스만 검증통계량 결과 해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모형의 선택에 대한 설명 보완을 제안한다. <표 1>에 의하면 현재 기초통계량의 분석대상 연령이 최소 19세, 최대 120세이며 변수별 사례수의 차이가 크다. <표 3>에서 패널고정효과와 패널확률효과의 검증통계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관련 설명이 없다.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재정패널 제1~15차 데이터(2007~2021년)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은 총 7만 794가구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APC 분석(age-period-cohor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일반화 가법 회귀모형’(generalized additive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부채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른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는 삶의 질의 객관적인 조건(고용지위, 혼인지위, 자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기간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연령과 코호트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계부채는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동일 연령대 혹은 동일 코호트 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세션 III

3.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한국사회 가계부채의 변화 추이
-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중단연구 -

토론 요약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요약

박호준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박사수료

박정민 | 서울대학교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 가계부채의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가계부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은 소득수준¹⁾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는데, 가처분소득, 순자산, 총부채, 그리고 부채 위험 관련 지표들²⁾에 대하여 연령, 기간, 코호트의 한계효과를 추정·보고하고 있다. 분석 자료로는 제1~15차(2007~2021년에

1)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일 경우 고소득층, 50% 이상 150% 미만일 경우 중산층, 50% 미만일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재정패널자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반복 횡단면 자료로 간주함에 따라 분석 대상 가구(주)의 수는 총 7만 790가구(명)이다. APC 분석(age-period-cohort analysis) 수행 시 “연령=기간-코호트”의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일반화된 가산 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활용하고 있는데, 분석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이질적인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서는 30대 후반에 부채가 최대화되고, 최근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196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의 부채가 최대인 양상이, 반면 중산층·저소득층에서는 45세 전후 부채가 최대화되고, 기간 한계효과는 미미하며, 1970년대 출생 코호트의 부채가 최대인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가계부채 문제 접근 시 동일 연령대 또는 코호트 내의 이질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추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성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연구의 완성도 제고 및 독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연구자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히 제안하는 가운데 토론자의 토론을 갈음하기로 한다.

1. 서론에서 분석 기간 동안의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추이가 그림 등으로 제시된다면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이 더욱 선명히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가용한 통계자료들과의 기초통계량 비교를 통하여 분석 표본의 대표성을 검증하고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3. 분석 결과로서 논의되고 있는 한계효과의 정

의 내지 의미 등을 사전에 엄밀히 제시해줄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기술함에 있어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 측면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제안한다.

4. 일반화된 가산 모형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도출되는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연구자들이 우려하였던 식별 문제의 해소 여부를 간접적으로 검증해볼 것을 제안한다.

5. 한편 일반화된 가산 모형 추정 시 도입되었던 가정들을 일부 변화시킨 상태에서의 추정 결과, 또는 일반화된 가산 모형이 아닌 대안적 모형을 활용한 경우의 추정 결과 등을 현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6. 또한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거주형태 등에 따른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는 분석 역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7. 가능할 경우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의 양적·질적 비교를 통하여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세션 IV

1. 납세자의 조세 공평성 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발표 요약

이경호 |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연구교수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재정

패널조사 제1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 공평성 인식과 하위 집단 간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연구는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교환 형평성의 차원을 분석하고, 잠재 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납세자들의 조세 공평성 프로파일을 식별했다. 분석 결과, 3개의 잠재집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최소 비율 집단의 문제로 인해 2개의 의미 있는 하위 집단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는 여러 하위 집단이 조세 공평성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며, 이는 연령, 혼인 상태, 최종학력, 학력, 연간 총소득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조세 공평성 인식은 조세 정책과 개인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는 조세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인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조세 공평성 인식 형성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하위 잠재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는 결측치 등 제2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하위 지표를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며, 변수 정의나 분류의 차이로 인해 조세 공평성의 모든 측면을 전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잠재 납세자 집단을 파악하여 조세 정책에 맞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는 조세 공평성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이 조세 정책과 사회적 결속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조세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 요약

김정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의 도입부에서는 조세 공평성의 심리학적 이론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개인의 관점에서 조세 부담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공평성 이론, 납세자가 세금이 어떻게 활용될 지 관여의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유의지 이론, 납세자의 세금이 사회에 발전적으로 활용되는지 생각하는 상호 의존 이론, 조세 제도가 사회적 규범과 일치하는지 생각하는 합법성 이론, 정부가 조세 사용의 효율성과 납세자에 대한 공평성을 중시하는지 생각하는 신뢰 이론이 그것들이다. 위 이론들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조세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소득 관련 변수, 직업 및 고용 상태, 사업 소유권과 사업 규모, 제도적 요인, 정치적 성향, 부의 분배, 지리적 위치, 문화적 사회적 가치 등이다. 종속 변수는 재정패널의 제15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 시스템의 공평성을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교환 형평성, 그리고 조세 순응도를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방법론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여 납세자들의 공평성 인식 정도가 인구통계학적 성질, 소득, 직업, 사업 등 독립 변수에 따라서 어떤 이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조세 공평성에 대한 이론과 실증 분석의 연결 고리를 독자들에게 피력하고 배경 심리

학적 이론을 정리했다는 점에 큰 공헌이 있다. 토론자의 생각에 본 연구의 발전 가능한 방향 중 한 가지는 공평성 이론과 실증 분석의 연결 고리에 체계를 더하면 풍성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공평성, 자유의지, 상호의존, 합법성, 신뢰 이론과 종속 변수로 활용되었던 수직적, 수평적 공평성과 교환 형평성, 그리고 조세 순응도와의 연관성과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바탕이 된다면 추후 조세 제도를 개편할 경우 국민의 조세 공평성 인식에 대한 이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공헌도는 연구에 활용된 종속 변수에서 공평성을 측정할 때, 직접적으로 측정된 재정패널 질의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조세 공평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공공데이터는 재정패널 외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저자께서 연구에 완벽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토론자의 생각에 잠정적인 한계점으로는 응답자들의 응답이 조세 공평성에 대한 객관적인 응답이 아니라 순응도가 함께 개입된 종합적인 답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본인 경제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응답자가 받는다면, ‘경제 능력에 비한 세금 정도’에 해당하는 공평성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바람이 있지만 ‘본인’에 더 무게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싶어 하는 순응도의 효과가 함께 섞여서 측정 오차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추후에 「재정패널조사」가 개선되어 관련 연구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분류 방법론은 현재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질성을 분류하는 연구 방법론 중 하나를 조세 공평성의 인식에 적용했다는 것에 큰 공헌이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의 경우 연구자가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눌지를 미리 결정하고 여러 번의 모형 추정 결과 중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추후에 여러 가지 통계량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토론자의 생각에 모형 선택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유행하는 머신러닝 방법론들 중에 연구자의 임의적인 선택이 필요 없거나 최소한으로 들어가며 데이터가 분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분류 작업을 해보고 기존의 분류와 비교한다면 더욱 연구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세션 IV

2. 재산과세의 분포 특성과 재분배 효과

발표 요약

성명재 | 홍익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2013~2021년 귀속분)를 이용하여 자산분배구조의 분포 특성과 자산 관련 보유세 부담의 누진도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재산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누진과세를 통해 양(+)의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세

누진과세를 통해 양(+)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2010년대 말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재산과세를 강화하면서, 소득재분배 또는 부(자산)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과 자산, 소득과 재산세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강도(즉, 자산·재산세의 소득탄력성)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자산·재산세 비중이 소득비중보다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자산·재산세 비중이 소득비중보다 작기 때문에 자산·재산세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분포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산계층별 재산세 분포도 대부분의 자산계층에서 비탄력적인 분포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하락률)로 측정한 재산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18%, 총자산 기준의 자산재분배 효과는 -1.06~+0.84%로 추정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였던 2020~2021년에는 자산재분배 효과가 일관되게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재산과세가 소득분배구조와 자산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거의 0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거나 음(-)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소득과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느슨하다는 점, 총자산 중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전체의 10% 정도로 작

지 않다는 점, 자산계층별로 자산구성(portfolio)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재산세가 누진세율체계를 지녔지만 합산과세 되지 않고 개별물건별로 별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재산과세의 누진도와 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토론 요약

최승문 | 건국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자산 분포의 특성과 자산 관련 보유세 부담의 누진도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밝혀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이유로는 우선 저소득-고자산가들의 경우 소득 대비 납부하는 재산과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논문의 결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은퇴 및 노인 가구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 고령의 은퇴 가구는 현재 소득은 낮지만 생애 누적된 자산은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세대별로 나누어 보여준다면 시사하는 바가 더욱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보여줄 경우 연령대별로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가 다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에서는 소득 및 자산 분위별 소득, 자산, 재산세 등의 금액 및 총액에서 해당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분위별 재산세 부담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소득 대비 재산세 비중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논문에서는 소득분위별 소득, 자산, 재산세 등을 제시하였고 자산분위별 자산, 재산세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더해 자산분위별 소득 통계도 보여준다면 자산과 소득의 역진성 또는 증가속도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한 이유 및 그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고자산가들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과세를 통한 재분배 경로는 우선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 또는 자산의 직접적인 감소를 통할 수도 있고, 또한 자산과세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통할 수도 있다. 논문에서는 첫 번째 효과를 주로 언급하였으나, 최근 두 번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하여 이에 대해 언급해 준다면 독자들이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따른 미래 자산의 변화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첫째, 위험선호도가 높을수록 자산이 증가했다. 둘째, 위험선호도에 따른 자산 증가는 총자산, 그리고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모두에서 일관되게 관측되었다. 셋째, 자산의 변화는 주로 부동산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넷째, 위험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의 자산 증가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었으며, 특히 장기로 갈수록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에 적극적인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선호도에 따른 미래 자산의 증감 효과는 이 연구가 최초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시사점 도출이 요구된다.

토론 요약

홍병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 IV

3. 위험선호는 자산을 증대시키는가?

발표 요약

김대환 | 동아대학교 교수

선행연구는 위험회피 성향에 따라 경제주체의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도 달라진다는 결론을 제시해 왔으나, 그러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균형패널자료(2017~2022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각

본 연구는 위험선호도가 미래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위험회피 성향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과 위험회피 성향에 따른 의사결정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에, 본 연구와 같이 위험회피 정도가 자산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는 없었기에 그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의 2017~2022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는 그 이전부터 구축이 되어있으나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위험선호도와 관련된 정보가 2017년부터 가능하기에 2017년 시

점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산과 관련된 변수로는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이 둘의 합으로 이루어진 총자산을 고려하였다. 자산과 관련된 변수를 종속변수로, 위험선호도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 모형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Pooled OLS 또는 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위험선호도가 높을수록 미래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선호도에 따른 자산 증가는 총 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에서 모두 일관되게 관측되었으며, 단기, 중기, 장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었다. 총자산의 증가는 주로 부동산자산에 의해 증가되었으며, 2020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선호도와 자산의 관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기저에 있는 논리는 위험선호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결과적으로 자산증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의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투자 정도 또는 위험선호도가 이질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 보다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전술하였듯이 선행연구에서는 위험선호도의 결정요인과 위험선호도에 따른 의사결정 차이에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따른 자산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질적이라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개별 자

산 또는 자산 군에 따른 평균 수익률 및 위험의 차이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 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재무학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가 살펴보려는 위험선호도와 자산의 관계는 결국 위험선호도 차이에 따른 위험자산투자 비중 등의 변화가 미래의 자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선호도와 투자 포트폴리오의 관계,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축적의 변화 부분 이외에 특별한 기여점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수 설정 및 분석 방법을 보다 다양화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위험선호도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이질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 차이이다. 따라서, 현재의 변수 정의에서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에 대해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다소 모호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절대적인 금액의 증감에 대해 보여주고 있으나 수익률을 살펴보는 것도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부동산자산의 변동이 총자산 변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험선호도의 양극단의 자산 보유 차이가 부동산자산(1.42배)보다 금융자산(1.78배)이 큰 것으로 보아 수익률 차원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증가와 감소는 기존 보유 자산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위험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전 연도의 자산이 추가된 회귀분석 모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핵심변수인 위험선호도가

시간불변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GMM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거나, 우회적으로 매칭을 활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강건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세션 IV 4.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

발표 요약

박명호 | 홍익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자료(제9~15차)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차분모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 비율에 미치는 평균처리효과(ATE)를 추정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8%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실제 건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같은 재난적 상황이 소득하락을 야기하는 경우,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정책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토론 요약

김평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제9~15차)를 이용하여 2020년 1월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코로나19를 외생적인 사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처치그룹으로 설정한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건강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약 8%p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소득 증대가 건강증진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득 보조 등의 재정지출이 국민 보건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밝힌 것은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본 논문의 중요한 공헌이라 생각된다. 이후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가 소득감소를 통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서론 부분에 더 서술할 수 있다. 저자는 건강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적 고립은 부정적, 손 씻기 또는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수칙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서술했다. 모두 중요한 요인이지만, 본 연구가 코로나, 소득, 건강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코로나 기간 소득감소가 건강에 악영향을 준 메커니즘을 더 서술하면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Grossman(1972)에 따르면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이용을 늘리거나, 운동 횟수를 늘리는 등의 '투자'가 필요한데, 소득감소로 위와 같은 투자를 할 수 없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모형 설정 측면에 대한 제안이다. 소득이 코로나 기간 감소하지 않은 집단(즉, control group)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중차분법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고는 소득 집단별로 여러 그룹을 나누어 강건성 검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본고는 소득이 감소한 집단의 건강상태가 코로나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며, 평행추세 가정이 잘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증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집단이 코로나로 더 개인위생을 잘 지켜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나온 코로나 연구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패널 고정효과모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코로나 더미와 소득 분위를 교호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축한다면, 본고와 같은 분석을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면 보이지 않는 개인의 특성(예를 들어 유전자)을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연구로 국내의 경우 고영근·안태현(2022), 국외의 경우 Rajkumar(2020) 등이 건강, 인지 능력 등 다양한 보건변수가 코로나 이후 얼마나 변했는지 연구하였다. 본고는 이미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나, 재정패널의 특징이 더 강조되면 그 차별성을 더 보일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재정패널은 가구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다른 자료에 비해 소득, 조

세 관련 변수가 풍부하므로 해당 방면으로 코로나가 개인 또는 가구의 건강에 미친 메커니즘을 더 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별 뿐 아니라 의료관련 변수(의료 이용량), 건강상태 변수(선천적인 장애 여부) 등도 보건 문헌에서 많이 이용되므로, 추가 통제를 해서 주요 추정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보여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3년도 PEMNA 예산분과 달리 회의

개요

- **주 제**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Public Spending Efficiency and Transparency)
- **일 시** 2023년 10월 4일 (수) ~ 10월 5일 (목)
- **주 최** 동티모르 재무부, 세계은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기획재정부, 유럽연합
- **참 석 자** 60명
 - PEMNA 11개 회원국 재무부 공무원,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 전문가
 - 참가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14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참석¹⁾)

1) 중국, 미얀마, 싱가포르 불참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의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본 회의는 2023년 10월 4~5일 이틀에 걸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동티모르 재무부 및 세계은행 주최하에 동티모르 달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공공지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Public Spending Efficiency and Transparency)를 주제로 각 국가의 경험과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였음

- 세부주제: 공공서비스 성과 모니터링,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 재정 투명성 제고

DAY 1

10월 4일(수)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 **Bernard Harborne (Resident Representative for Timor-Leste, the World Bank)**

- 세계은행 동티모르 상주 대표인 Bernard Harborne은 동티모르 재무부의 성공적인 PEMNA 회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향후 동티모르가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 본 회의의 주제인 공공지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를 통한 근거기반 정책 수립과 책임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공지출의 효율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Welcoming Remarks

• **H.E. Felicia Claudinanda Cruz Carvalho (Vice Minister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of Timor-Leste)**

- 동티모르 재무부 Felicia Claudinanda Cruz Carvalho 차관은 축사를 통해 본 회의의 주제인 공공지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회의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각 전문가의 발표가 동티모르의 예산 및 국고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PEMNA 회원국의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본 회의 내용이 향후 동티모르의 포괄적인 예산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정부와 시민 그리고 PEMNA와 같은 다국적 협력체와 협력하여 동티모르의 예산 시스템이 더욱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함

인력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본 시스템은 잠비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정 부문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에 활용되고 있음

Session 1 Public Services Performance Monitoring

Presentation 1

- Rama Krishnan Venkateswaran (Lead Public Sector Specialist, the World Bank)

- 공공재무관리의 관점에서 성과측정을 통한 △정부지출 활용에 관한 공공부문 책임 강화 △예산편성의 합리성 개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합의 강화 등의 이점을 소개
 -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성과를 기반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며, 성과평가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는 등 성과기반 예산 집행의 어려움 또한 존재함
 - 이와 관련, 세계은행의 성과평가 방법인 결과기반운영방식(Program-for-Results) 시스템을 소개
 - 본 방식에는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지방 정부 간 재정 이전 효율성 강화 △엄격한 모니터링과

Presentation 2

- Romeo Matthew T. Balanquit (Assistant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the Philippines)

- 필리핀 공공재정관리의 주요 목표로 △지속가능한 재정규율체계 수립 △효율적인 지출배분을 통해 적절한 사업 대상과 우선순위 설정 및 지출체계 구축 △운영 효율성 제고로 예산 집행 효과 극대화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소개
 - 이를 위해, 주요 정부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성과평가보고서(Agency Performance Review, APR)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반기별(semi-annually)로 작성하는 본 평가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주요 정부기관의 실제 지출 내역을 사전에 제출한 지출목표와 비교하여 실제로 얼마만큼 목표치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함
 - 그 외 조기조달활동(Early Procurement Activities, EPA) 및 캐치업 플랜(Catch-Up Plans) 등을 시행 중임
 - 조기조달활동은 입찰 참여 단계부터 조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캐치업 플랜의 경우 관련 예산 지출이 기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추가로 제시하는 정책임

Presentation 3

• Marcelo Amaral (Director General of Corporate Service, Ministry of Health of Timor-Leste)

- 보건 부문에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건 부문 공공지출의 적절한 자원 분배, 서비스의 품질 및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 개선에 기여
 - 또한 효율적인 보건 부문 재정지출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이며, 투명한 재정지출은 자원의 적절한 배분 및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보건 의료정보관리시스템(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HIS2)과 개별 시민의 필수 의료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의료기록시스템을 활용 중임
- 보건 부문 모니터링 강화 및 성과 예산 도입에는 정부 수입의 급격한 감소나 비효율적인 정부지출 등 여러 난관 또한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효과적인 자원 분배를 위한 성과 목표 통합 △지역·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감사 시스템 도입 △보건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 및 관련 데이터를 성과예산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의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 중임

Presentation 4

• Emil Nurgaliev (State Expert of the Budget methodology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of Bulgaria)

-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는 정부지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지출우선순위(expenditure prioritization) 결정과 재원 배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
 - PEMPAL(Pubic Expenditure Management Peer Assisted Learning network) 회원국의 경우 지출 검토 시 심사 내용에 △공공 정책성과 △예산 현황 △이행 지침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지출 검토에 있어 초기 단계가 가장 까다로우며, 방법론적인 문제점과 정치적·제도적 지원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큼
 - 지출 검토 제도는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주요 목적과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바, 수행 초기 단계에서 △주요 목표 및 검토 범위 설정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 고려 △정확한 데이터 가용성 파악 및 분석 등이 중요함
 - 또한 지출 검토 후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조성하고 지출 검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임
 - 특히 PEMPAL 회원국의 경우 지출 검토에 관한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가 부족하고, 성과평가 관련 데이터의 질과 양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임

Questions & Answers

■ (인도네시아) 범국가적인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게 재무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GIFT)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를 통해 대중이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안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성 증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사업 및 관련 예산 정보공개와 정보 가용성을 높여야 함
- (세계은행) 사회적 감사(Social Audit) 시스템 도입을 추천하였으며, 특히 기반시설 관련 사업의 경우 사회적 감사 시스템의 효율성이 증명된 바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지역사회나 관련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사업의 관련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조언함
 - 다만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 모니터링 시스템 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함
- (IMF)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예산 측정이 필요하며, 특히 성과주의 예산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함

■ (동티모르) 동티모르는 예산 집행을 위해 지출 승인 등 많은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그 전에는 사업 자체가 시작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금 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해 줄 수 있는지?

- (필리핀) 필리핀은 공식적인 지출 승인 전 사전 예산집행(pre-budget execution) 제도가 있어 계약 체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동티모르도 관련 입법절차를 통해 사전예산 집행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추천함

■ (캄보디아)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성과 정보 수집을 어느 기관부터(지방정부부터 시작할지 등) 하는 것을 추천하는지와 성과 관련 정보 수집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 (세계은행) 각국의 성과 모니터링 및 감사 역량, 어떠한 목적으로 성과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따라 정보 수집의 방향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
 - 대다수 국가의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지방 기관 수준에서 기본적인 성과 지표(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등)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며, 추후 단계별로 시간을 들여 천천히 다른 복합지표 및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지표들을 수집하는 것을 조언함

Session 2

Public Investment Efficiency

Presentation 1

- Quyen Hoang Vu (PEMNA B-CoP Facilitator / Senior Governance Specialist, the World Bank)

■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19세기 중반부터

고속 성장을 이룬 13개국의 공공 투자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투자 방안에 대해 제언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체 공공 자본금 지출 중 지방 정부의 지출이 높은 편에 속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투자를 위해서 구체적인 투자 효율성 증대 방안 구축,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 공공투자관리 주기(Public Investment Management(PIM) Cycle)의 질적 향상 등을 제언함
 - △체계적인 투자 가이드라인 확립 △독립적인 검토 시스템 도입 △공공투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투자 계획 수립 시 기후 변화가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여겨지는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도 중요함

도모하여 관련 재원·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 IMF와 세계은행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재원 활용을 위해 공공투자관리평가(PIMA)*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국가는 투자 계획 수립 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PIMA 점수를 받았으나, 그에 비해 투자 효과는 낮았음
 - PIMA에 따르면 체계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의 투자가 더 안정적이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참여는 투자 위험성을 낮추고 일관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유지하는데 기여함
 - 아태지역의 경우 △투자를 추진할 사업 판단 △다년 예산 편성 △계획 이행 모니터링 등에서 한계를 보였음

* PIMA는 △사업 계획 △투자 사업 선정 및 재원 분배 △사업 실행 세 단계로 국가별 투자 사업을 평가하며, IMF와 세계은행은 아태 지역에서 1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Presentation 2

• Laura Doherty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dvisor, IMF)

- 본 발표에서는 IMF와 세계은행의 공공투자관리평가(Public Investment Management Assessment, PIMA)를 중심으로 중·저소득국의 공공 투자 현황과 효과를 소개
 - 아시아·태평양 지역(아태지역)에서 불안정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인해 관련 공공투자 재원이 효과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바, 거버넌스의 개선 및 공공 투자의 규모와 질 향상을

Presentation 3

• Nguyen Minh Hang (Deputy Head of the Investment Financial Settlement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of Vietnam)

- 베트남은 13개의 산업 분야에서 공공 투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투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명확한 투자 목적을 설정하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 중
 - 베트남 정부는 경제 개방과 공공 투자 유치를 위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사회기

반시설 확충 △투자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노력 중임

- 또한 △농촌 지역 개발 및 발전 △소수 민족과 산간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빈곤 감소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공공 투자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함
-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도모하여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재정비·확대 및 신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통해 투자 효과 증대를 도모함
 - 2023년 기준 베트남의 PPP 계획 달성률은 95%를 상회함
 - 정부 내에서는 행정 시스템 개선 및 투자 계획의 유연성 증대, 모니터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 다양한 행정 주체, 분야, 지역의 참여를 장려하여 투자자와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함
 - 베트남 정부는 투자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투자 계획 이행에 필요한 시간 단축 및 투자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투자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임

Questions & Answers

- (필리핀) 베트남의 최근 민관협력 사례, 특히 교통 분야에서의 경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 (베트남) 베트남은 PPP 방식으로 항구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특히 많으며, 관련해서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지만 베트남도 실현가능 갭(Viability Gap)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민간기업 투자 중도 철회 등 PPP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문제를 겪고 있음

- (동티모르) 성과주의 예산 도입을 위해서는 재정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함께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 통합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계은행 측에 문의
 - (세계은행) 먼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회계감사 등)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 데이터 등 재정정보 외 성과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
 - 추가로 이러한 데이터를 성과주의 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제언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실 공무원 대부분은 경제학이나 회계학 전문가가 많은데, PPP 제안서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예산실에 토목공학 등 다른 분야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 (세계은행) 재무부가 예산 및 재정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 물론 사업 관련된 전문가가 있을 시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타당성 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산업부 등)에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IMF) 예산 공무원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게 중요함

- 예산 공무원의 역할은 사업 자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보다는 제안서 및 사업 기획에 나온 예산 관련 부분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함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2009년도부터 예산 투명성 점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임

- 예산협의 과정 중 소외된 지역사회 대표성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예산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사례를 소개함

DAY2

10월 5일(목)

Session 3

Fiscal Transparency and Openness

Presentation 1

• Suad Hasan (Program Officer, IBP)

- 국제예산협의체(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IBP)는 공공재정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시민단체의 역량개발 지원 △공공지출·세금·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수립 △공공재정 관련 연구 및 분석 데이터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중
- 예산투명성조사(Open Budget Survey, OBS)를 통해 예산 투명성, 시민 참여도 및 예산 전 과정에서 관련 관리·감독의 척도 확인 가능
 - 예산투명성조사는 145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문항이 작성되며, 관련 문항은 동료검토(peer review)와 정부 관계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됨
 - 2021년도 예산투명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 투명성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규정 수립방안을 구축하였고, 국제기구의

Presentation 2

• Raquel Maria G. Ferreira

(Senior Technical Advisor, GIFT)

- 시민 참여 및 재정 투명성(openness)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정보 시스템과 디지털 도구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강조
 - 재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산·재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증가 △재정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정보 시스템과 디지털 도구는 △개방형 데이터 공개 및 보급 △시민 의견 수렴 △참여 예산 편성 촉진 △시민의 공공사업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함
- 또한 예산 편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예산 편성 이후에도 시민 참여를 통해 예산집행 분석 및 시민의 관점에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등 시민참여 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강조

Presentation 3

• Eko Kurniawan (Section Head at Directorate State Budget Planning, Ministry of Finance of Republic of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예산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주요 요인으로 △법률제도 강화 △관료제도 개혁 △정보통신기술(IT) 발달 △이해당사자 간 협력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이 있다고 분석하며, 보다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대해 발표
 - 특히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는 재정과 정보 관련 법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며, 2003년, 2008년, 2019년에 제정된 관련 법률에서 예산과 재무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시함
 - 인도네시아는 1998년부터 관료 제도를 개혁했고, 그 성과는 세계은행에서 산출하는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지표와 여론반영(Voice and Accountability) 지표에 반영됨
 - 특히 초기 개혁은 민주적인 관료·행정 절차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참여가 증가하였음
 -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예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지표 및 재정정보 등을 담은 월별 보고서(APBN Kita Report)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재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Presentation 4

• Hyeoncheol Han (Deputy Director at Fiscal System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Republic of Korea)

- 한국은 열린재정과 dBrain⁺를 통해 예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모두에게 열린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 중
 - 열린재정은 △일반 대중 △복지 수혜자 △연구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재정정보 온라인 플랫폼으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일반 대중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복지 수혜자는 수혜자별 맞춤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각기 다른 부처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함
 - 연구자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세한 통계 데이터, 보고서, 발간물 역시 열린재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맞춤형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음
 - 이외에도 지방정부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집·발표하는 데이터도 제공하며, 국제기구 웹사이트와도 연동되어 있어 해외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데 용이함
 - dBrain⁺는 재정정보시스템(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MIS)으로, 국가 재정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예산과 재정 관련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함

- 기존 dBrain을 개편한 dBrain+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데이터 간 연결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뒷받침함

- 한국 정부는 열린재정을 통해 재정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 참여 및 감독을 가능케 하고, 데이터 이용자는 본인의 목적에 맞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재정 투명성과 정보 활용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여 사용자가 더 다양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시민 참여와 모니터링 효과를 창출함

- 이외에도 몽골은 2022년과 2023년에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하고, 국민 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및 온라인 예산 플랫폼(Citizen Budget Web)을 개설하는 등 예산 관련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Presentation 5

• Solongo Gavaa (National Consultant at Fiscal Policy and Planning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of Mongolia)

■ 몽골은 지난 10여 년간 예산투명성조사의 재정 투명성과 시민 참여 지표에서 중하위를 기록, 관련 점수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 중

-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관련 주요 현황과 활용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발간 중임
 - 2021년에는 7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22년에는 기존 보고서의 구성을 수정·보완하고 추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난 2년간 관련 보고서를 시의적절하게 제작 및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회계 시스템 개편을 통해 타 행정 시스템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사용자의 편리함이 개선되었고,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

Presentation 6

• Suranath Chomcheon (Budget Analyst at Budget Strategy Office, Thailand)
 • Supitsara Chitudomwattana (Budget Analyst at Budget Strategy Office, Thailand)

■ 태국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국가 재정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예산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

- 태국 예산처(Budget Bureau)는 재무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예산·경제 보고서를 발간함
 - 예산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최종 집행 보고서를 발간함
- 지난 10여 년간 태국은 예산투명성조사의 예산 투명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함

- 일례로 중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됨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태국 예산처는 △외부 감사위원 초빙 △부처별 보고서 발간 형식 통일 △보고서 발간 시기의 유연성 증대 등을 계획하고 있음

Questions & Answers

- (GIFT) 한국의 재정정보 공개 방침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청
 - (한국)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다수의 전문가가 있으며, 그 중 약 10%의 인력이 재정정보 보안 부문에서 일하고 있음
 - 데이터 보관의 경우 3개 지역에 서버를 나누어 보관하는 등 테러 사태 및 시스템 오류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민간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감독 및 주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있음
-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에서 월별 보고서(monthly report)를 제출하고 보고할 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관해 대중과 논의하는 장이 있는지 설명 요청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월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관련 사항에 대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일반 대중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을 시청할 수 있음

Wrap-up Session


Closing Remarks

● **Kyoungsun Heo**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PEMNA 사무국장)은 폐회사를 통해 현저히 부족해져가는 자원 상황 대비 예산 증액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회의의 주제인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강조
 - 발표자들의 유익한 발표와 참석자들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교류와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이 가능했다고 평가함
 -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본 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해준 발표자 및 좌장, 국제전문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유럽연합(EU), 그리고 예산분과 간사 및 분과의장,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본 회의를 주최한 동티모르 재무부와 회의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모든 재무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함

Closing Remarks

• Quyen Hoang Vu (PEMNA B-CoP Facilitator / Senior Governance Specialist, the World Bank)

- PEMNA 예산분과 간사인 Quyen Hoang Vu는 폐회사를 통해 본 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해준 PEMNA 사무국과 동티모르 재무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명
- 효율적인 공공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입법부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PEMNA 회의를 통해 다른 국가 및 국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회의의 중요성을 역설
 - 11월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2023년도 PEMNA 연차총회에도 여러 국제기구와 각국의 재무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 예정인 바, 다음 회의 주제인 재정분권화 관련해서도 본 회의처럼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주정부 지원금(State Payments) 과세지침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3년 8월 30일, 총수입금액 (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주정부 지원금 (State Payments)¹⁾에 대한 내용이 담긴 ‘Notice 2023-56’을 발표함^{2),3)}

● 동 지침은 지난 2023년 2월 10일, 국세청이 발표한 ‘IR 2023-23’의 후속지침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동 지침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주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음

- 17개 주의 주정부 프로그램⁴⁾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임
 - 2022년 연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22년 귀속 지원금을 2023년 수령하더라도 2023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 주세의 환급세액(state tax refund)은 연방소득세 신고 시 표준공제를 적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 2021년 과세연도의 경우 개인의 90%가 항목별 공제가 아닌 표준공제를 적용함

● 주정부 지원금은 연방소득세법(IRC) 제61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주정부 지원금은 예외가 되는 사례임을 강조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캐나다

[디지털서비스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초안 발표]

■ 캐나다 재무부는 2023년 8월 4일,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의 수정된 법률 초안⁵⁾과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법률

1) IRS, “State Payments,” 2023. 2. 10., <https://www.irs.gov/newsroom/state-payments>, 검색일자: 2023. 9. 19.

2) IRS, “IRS issues guidance on state tax payments,” 2023. 8. 30.,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on-state-tax-payments>, 검색일자: 2023. 9. 19.

3) IBFD, “IRS Issues Guidance on Federal Taxability of State Payments,” 2023. 9.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01_us_3.html, 검색일자: 2023. 9. 19.

4) Alaska,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Main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5) Government of Canada, “Legislative and Regulatory Proposals Relating to the Digital Services Tax Act,” 2023. 8. 8., <https://fin.canada.ca/drleng-apl/2023/ita-lir-0823-l-3-eng.html>, 검색일자: 2023. 9. 19.

초안⁶⁾을 발표함^{7),8)}

- 재무부는 디지털서비스세 법률 관련 의견을 2023년 9월 8일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관련 의견을 2023년 9월 29일까지 수렴함

■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디지털서비스세) 2024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3%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함
 - 연간매출이 7억 5,000만유로⁹⁾ 이상이고, 캐나다 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¹⁰⁾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함
 - 디지털서비스세가 적용되는 첫 과세연도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매출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디지털서비스세를 산출함
- (필라 2)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

세연도부터 다국적기업(MNEs)에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과 적격내국최저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를 적용함

- 경과 CbCR 세이프하버(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¹¹⁾를 시행하여 초기 몇 년 동안 저위험 관할국(lower-risk jurisdictions)에서의 다국적기업 영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138개국 및 관할권¹²⁾은 2023년 7월,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을 감행¹³⁾함

- 캐나다는 2021년 10월, 디지털서비스세 시행 시기를 유예할 때 다자간 협약이 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발효할 예정¹⁴⁾이었고 이를 2023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 Government of Canada, "Legislative Proposals Relating to the Global Minimum Tax Act," 2023. 8. 8., <https://fin.canada.ca/drlégapl/2023/ita-lir-0823-l-4-eng.html>, 검색일자: 2023. 9. 19.

7)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consults Canadians on Budget 2023 measures to grow the clean economy, close tax loopholes, and deliver tax relief for Canadians," 2023. 8. 4.,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8/government-consults-canadians-on-budget-2023-measures-to-grow-the-clean-economy-close-tax-loopholes-and-deliver-tax-relief-for-canadians.html>, 검색일자: 2023. 9. 19.

8) IBFD, "Department of Finance Seeks Public Input on Draft Legislation for Pillar Two and Digital Services Tax," 2023. 8. 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8-08_ca_1%23tns_2023-08-08_ca_1, 검색일자: 2023. 9. 19.

9) 2023년 9월 26일 원화 환산 시 1조 710억 7,500만원임

10) 2023년 9월 26일 원화 환산 시 200억 2,600만원임

11) 경과 CbCR 세이프하버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저위험 관할국에서营业을 하는 경우에 국가별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추가세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과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제도임(정훈·김재경·이희경,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분석 및 고려사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7., p. 96.)

12) OECD, "Members of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hat have approved the July 2023 Outcome Statement on the Two 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s of 11 July 2023," <https://www.oecd.org/tax/beps/oecd-g20-inclusive-framework-members-outcome-statement-on-two-pillar-solution-to-address-tax-challenges-arising-from-digitalisation-july-2023.pdf>, 검색일자: 2023. 10. 6.

13) IBFD, "Canada to Move Forward with Digital Services Tax in 2024, Despite OECD Agreement," 2023. 7.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7-13_ca_1%23tns_2023-07-13_ca_1, 검색일자: 2023. 9. 19.

14) IBFD, "Canada Pushes Digital Tax Implementation to 2024 Following "Historic" OECD Agreement," 2021.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12_ca_1.html, 검색일자: 2023. 10. 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반영함¹⁵⁾

-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3년 9월,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¹⁶⁾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입되었음

- 아일랜드 내에서 수행된 R&D 활동에 의해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아일랜드 법인에 상업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된 로열티 및 관련 매출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2.5%)을 50% 감면하여 6.2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였음²⁰⁾



아일랜드

[지식개발박스(KDB) 세율 10%로 인상 발표]

- 아일랜드는 2023년 9월 5일,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 KDB) 제도의 적용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10%로 상향조정할 것을 발표함^{17), 18), 19)}
 - 지식개발박스 제도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와 유사하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아일랜드에서 2016년 1월 1일에 도

- 금번 세율 인상 조치는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 도입에 따른 것으로, 기존 KDB에서 적용되는 세율인 6.25%가 STTR에서 규정하는 9% 세율 미만에 해당하므로 KDB 세율을 10%로 상향조정할 것임
 - STTR은 이자, 로열티, 그룹 내 서비스(intragroup service) 비용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제도임
- 동 조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발효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캐나다 -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2023. 5. 12.,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 검색일자: 2023. 9. 19.

16) USTR, “Readout of Ambassador Jayme White’s Meeting with Canada’s Deputy Minister for International Trade Rob Stewart,” 2023. 9. 21.,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3/september/readout-ambassador-jayme-whites-meeting-canadas-deputy-minister-international-trade-rob-stewart>, 검색일자: 2023. 10. 10.

17) IBFD, “Ireland - Ireland Increases Knowledge Development Box Tax Rate to 10%,” 2023. 9.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08_ie_1.html, 검색일자: 2023. 9. 19.

18) 아일랜드 정부, “Minister McGrath signs Commencement Order to implement Finance Act 2022 amendments to the Knowledge Development Box from 1/10/23,” 2023. 9. 5., <https://www.gov.ie/en/press-release/23cd6-minister-mcgrath-signs-commencement-order-to-implement-finance-act-2022-amendments-to-the-knowledge-development-box/>, 검색일자: 2023. 9. 19.

19) Stephanie Soong, “Ireland Amends Patent Box In Response to Pillar 2 Rule,”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11, September 11, 2023, p. 1470.

20) 아일랜드 국세청, “Knowledge Development Box(KDB),” 2023. 5. 29., <https://www.revenue.ie/en/companies-and-charities/reliefs-and-exemptions/knowledge-development-box-kdb/index.aspx>, 검색일자: 2023. 9. 19.

[관광 및 현대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

■ 아일랜드는 2023년 9월 1일, 관광 및 현대(hospitality) 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를 종료하여 9%의 경감세율에서 13.5% 표준세율로 인상함²¹⁾

- 아일랜드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정된 기간 동안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한 바 있음
 -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는 몇 차례 연장되었으나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됨
- 아래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9%에서 13.5%로 인상함
 -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및 기타 케이터링 시설에서 특정 음식 및 음료의 공급
 - 영화관, 박물관 및 전시회를 포함한 특정 명소 입장권의 공급
 - 호텔, 게스트하우스 및 숙박시설의 공급
 - 미용 서비스 공급
- 인상된 세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상원 통과]

■ 프랑스는 2023년 8월 23일,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일부 세법 규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22), 23)}

- 양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세법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과세 방식 및 공제 제도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개선 및 세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함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부부공동 세율 기본 적용에서 개인별 세율 기본 적용으로 제도 개정, 투자세액공제 한도 확대, 이혼 관련 지급금액의 과세대상 소득 제외 등임
 - 기존에는 가구(foyer)를 기본 단위로 하여 부부(또는 PACS의 파트너)의 소득을 합산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별 세율 적용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선택 가능한 방식이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기본적으로 개인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²⁴⁾

21) IBFD, "Ireland - Ireland Raises VAT to 13.5% for Specified Food Items Supplied by Wholesalers, Retailers," 2023. 9.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06_ie_1.html, 검색일자: 2023. 9. 19.

22) SÉNAT, "Renforcer l'égalité fiscale et successora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https://www.senat.fr/leg/pp122-913.html>, 검색일자: 2023. 9. 19.; SÉNAT,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renforcer l'égalité fiscale et successora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https://www.senat.fr/leg/pp122-913.pdf>, 검색일자: 2023. 9. 19.

23) Bloomberg Tax, "France Senate Considers Bill to Amend Inheritance Tax Provisions," 2023. 8. 3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C936T5K000000?bc=W1siU2VhcmNoIC9y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9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mlVzdWx0cy85YTRmMzZmMwMjUyYzIjODkwMGE3OGNhNDM5Mjk4Yzc3YiJdXQ--360f5dd28e1402754b0e420104349758d3b5439e&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9a4f330251c7c8900a78ca439298c77b, 검색일자: 2023. 9. 19.

24) 프랑스의 소득세는 가구(foyer)를 기본 단위로 부과하므로 가구당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기존에는 공동세율 적용이 기본 제도로 되어 있었으며 공동과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별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음. 발의안의 공동과세 방식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한계세율을 증가시키며 가구의 78%가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개별과세 제도를 기본 제도로 함으로써 여성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 25%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Madelin’ 제도의 경우²⁵⁾ 부부에게 적용되는 상한을 1만유로²⁶⁾에서 1만8,000유로²⁷⁾로 확대함
- 기존에는 협의 이혼에 따른 집행 가능일 또는 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12개월 내의 부부간 지급금액만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12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또한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 독일 정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이 급등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스·열에너지(난방)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19%에서 7%로 인하한 바 있음³⁰⁾
- 가스·열에너지 비용이 2022년 대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여 부가가치세 인하 기간을 3개월 조기 종료하여 기존 세율로 인상할 것임을 발표함
- 재무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조기 종료로 인한 효과로 공공부문의 세수가 약 21억유로³¹⁾ 확보될 것으로 추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승혜 연구원>



독일

[가스·열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기 종료]

- 독일 정부는 2023년 9월 18일, 가스·열 에너지(난방)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조기 종료할 것을 발표함^{28), 29)}



이탈리아

[최소과세지침 이행을 위한 공개 협의 시작]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3년 9월 11일, EU의 최소

25)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Tout savoir sur la réduction d’impôt sur le revenu ‘Madelin,’”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reduction-impot-revenu-investissements-entreprise-pme-madelin>, 검색일자: 2023. 9. 19.

26) 2023년 9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19만원임

27) 2023년 9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54만원임

28) Bundesregierung, Regierungspressekonferenz vom 18. September 202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regierung-spressekonferenz-vom-18-september-2023-2224110>, 검색일자: 2023. 9. 21.

29) Bloomberg Tax Research, “Germany to End Tax Discount on Gas Deliveries Three Months Early,” 2023. 9. 18.,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8UHD4T8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vVzdWx0cy8xMTRmMzYxZmY5NDE1NjIhZVVmODJiMzJmNDQ5MzNlMiJdXQ-199fa7e0ea57cdea8008293d9f107e66e6ccc865&criteria_id=114f361ff941569aeef82b32f44933e2&search32=BpN41xmQJueutVZyaKVJrg%3D%3D9eZVXCo5XVIRBhfrbn8RR5lz3ZbWnkOcZLdM9xT7oIElvtmMWKWN39B7uJScvPdaBkfdJTT_UDN0V-evDxf-ksEh3FkEOsVZ8AVe5AvkBLzyuRNcculmxE8B_JBVhlt8TVTCiToZM9YkxjbuD6XeQlWnSger9d_w09VM2IBYwnerP1PbOmUcst5Ekjbd3HYuGqGGgACM8BskytRnqYil6xOnh3D4you7o07Viv1c%3D, 검색일자: 2023. 8. 25.

30) Bundesregierung, “Umsatzsteuer auf Gas wird reduziert,” 2022. 10. 2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euersenkung-gas-2125486>, 검색일자: 2023. 9. 21.

31) 2023년 9월 21일 기준 2조 9,921억 4,300만원임

과세지침(Minimum Taxation Directive)을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해 작성한 입법안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하였음^{32), 33)}

- 최소과세지침은 연결 수익이 최소 7억 5,000만 유로³⁴⁾인 EU 내 다국적 및 대규모 그룹에 대해 최소 15%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침임

- EU 회원국은 2022년 12월 15일, 서면 절차를 통해 유럽 연합 내 대기업 그룹에 대해 15%의 유효세율을 설정하는 최소과세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있음³⁵⁾

-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의 전환 마감일은 2023년 12월 31일임

- 제외되는 법인은 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공공 의료 및 교육제공, 공공 인프라 구축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임

■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재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2023년 10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 사안의 복잡성과 국내 조세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공개 협의로 경제 운영자, 무역 협회,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출이

권장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포르투갈

[국가별 보고(CbC reporting) 관련 법령 발표]

■ 포르투갈 정부는 2023년 8월 23일, EU Directive 2021/2101에 따른 법령 Decree-Law No.73/2023을 발표하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하 CbC 보고)의무를 내국법에도 반영함³⁶⁾

■ 당해 및 이전 회계연도의 연결 수익이 최소 7억 5,000만유로³⁷⁾ 이상인 다국적 그룹 또는 개별 기업의 최종 모기업은 해당 기간에 대한 연간 소득세 정보를 게시해야 함

- 글로벌 거래, 특히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기록된 이익 및 거래 건수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직원 수, 활동 내용, 매출액, 법인세 및 사내유보금 등의 정보가 포

32) IBFD, "Italy Launches Consultation on Legislative Decree Implementing Global Minimum Taxation Directive," 2023. 9.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12_it_1.html, 검색일자: 2023. 9. 21.

33) MEF, "CONSULTAZIONE PUBBLICA CONCERNENTE LO SCHEMA DI DECRETO LEGISLATIVO DI ATTUAZIONE DELLA DIRETTIVA (UE) 2022/2523 DEL CONSIGLIO DEL 14 DICEMBRE 2022, INTESA A GARANTIRE UN LIVELLO DI IMPOSIZIONE FISCALE MINIMO GLOBALE PER I GRUPPI MULTINAZIONALI DI IMPRESE E I GRUPPI NAZIONALI SU LARGA SCALA NELL'UNIONE," 2023. 9. 11., https://www1.finanze.gov.it/finanze2/servizi/n_consult_newDF/consulta.php?id=9307181&step=0, 검색일자: 2023. 9. 21.

34) 2023년 9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64억 250만원임

35) IBFD, "Council Formally Adopts Minimum Taxation Directive," 2022. 12.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2-16_e2_1%23tns_2022-12-16_e2_1, 검색일자: 2023. 9. 21.

36) Diário da República(포르투갈 관보), DECREE LAW No. 73/2023, <https://diariodarepublica.pt/dr/en/detail/decree-law/73-2023-220219336>, 검색일자: 2023. 9. 21.

37)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약 1조 705억 8,000만원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합됨³⁸⁾

- CbC 보고는 모기업의 웹사이트(모기업이 EU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경우 자회사나 지점)에 영어 혹은 EU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최소 5년간 접근 가능한 형태로 게시되어야 함³⁹⁾

- 2024년 6월 22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보고서가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게시를 완료해야 함
 - 본 법안과 관련한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500⁴⁰⁾~3만유로⁴¹⁾의 벌금이 부과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네덜란드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3년 9월 20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⁴²⁾
 - 펀드 및 부동산 법인에 대한 과세 조항 변경, 배당금 삭감 규칙 강화, Box 3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법인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이익면

제 공제율 인하, 배당금 삭감 규칙 강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칙 삭제 등이 있음

-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금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함⁴³⁾
- 중소기업(SME) 이익면제(MKB-winstvrijstelling)의 공제율을 기존 14%에서 12.7%로 1.3%p 인하함⁴⁴⁾
- 배당금 관련 등록일자 설정을 의무화하고 세무조사관의 입증 책임을 개선하는 등 배당금 삭감 규칙(Dividend stripping rules)을 강화함
 - 배당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배당금을 삭감 및 분할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임
- 뮤추얼 펀드(fondsen voor gemene rekening)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2025년부터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모든 자산은 해당 날짜 이전에 공정 시장가치로 참가자에게 분배된 것으로 간주됨
- 은행과 보험회사의 최소자본 요건이 기존 9%에서 10.6%로 1.6%p 증가하여, 부채자본이 자산 총계의 89.4%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됨
-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칙을 삭제하는 등 EBITDA 기준 이자공제 한도에 대한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상

38) KPMG, "Portugal: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legislation approved," 2023. 8. 30., <https://kpmg.com/us/en/home/insights/2023/08/tnf-portugal-public-country-by-country-reporting-legislation-approved.html>, 검색일자: 2023. 9. 26.

39) 상동

40)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약 214만 1,160원임

41)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약 4,282만 3,200원임

42) News IBFD, "Higher 'Box 3' Taxation, Taxation of Real Estate and Funds Headline 2024 Tax Plan," 2022. 9.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19_nl_1.html, 검색일자: 2023. 9. 20.

43) 2023년 기준 최하위 법인세율은 19%, 최상위 법인세율은 25.8%, 최하위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적용대상 금액은 20만유로임

44) 중소기업 이익 면제는 과세대상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황에서도 EBITDA의 2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 공제가 불가능하게 됨

- 기존의 임계값 기준으로 인하여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부동산 법인의 회사분할 유인을 막고자 함

- 뮤추얼 펀드(fondsen voor gemene rekening), 재정투자 기관(iscal beleggingsinstellingen) 및 면세 투자기관(vrijgestelde beleggingsinstellingen)에 관한 조항이 개정될 예정임

- 네덜란드 법인과 비교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외국 법인의 납세자 지위를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역혼성단체를 제외한 모든 합자회사(Commanditaire Vennootschap, CV)는 조세상 투명한 것으로 취급될 예정임⁴⁵⁾

- 현재 개방형 합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개인소득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Box 1 세율 인상 및 Box 3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있음

- Box 1⁴⁶⁾에 적용되는 첫 번째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6.93%에서 36.97%로 0.04%p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적용대상

금액을 기존 7만 3,031유로⁴⁷⁾에서 7만 5,624유로⁴⁸⁾로 인상함

- 최대 고용공제액을 기존 5,052유로⁴⁹⁾에서 5,553유로⁵⁰⁾로 501유로 인상함

- 면세통근 수당을 기존 km당 0.21유로⁵¹⁾에서 0.23유로⁵²⁾로 0.02유로 인상함

- 현재 32%인 Box 3⁵³⁾ 소득세율을 34%로 2%p 인상하고, 면세 대상 소득기준(Belastingvrije vermogen)은 5만 7,000유로⁵⁴⁾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 사업승계 제도를 단순화하여 보다 실용적이며 잠재적인 남용 가능성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임

- (기타 조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식거래를 통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 도입, 탄소세 관련 조항 개정 등이 있음

-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거래를 통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임

- 시설원예 분야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해당 부문에 혜택을 주는 에너지 세율 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

45) 현재 개방형 합자회사(open CVs)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46) Box 1 소득은 근로자 임금, 자영업자 소득, 사회보장 수입, 연금, 보유자 거주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의제소득의 합계를 의미함

47)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76만원임

48)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45만원임

49)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18만원임

50)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9만원임

51)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8원임

52)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7원임

53) Box 3 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소유 자산(Vermogen)에 대한 자본소득으로, 저축으로 인한 투자수익 등을 의미함

54) 2023년 9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99만원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2024년부터 산업 및 전력 부문의 최소 탄소 가격이 인상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중국

[중국 정부는 R&D기관의 국내 장비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발표함]

■ 중국 정부는 2023년 8월 28일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해외 투자 R&D센터가 구입한 국내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조치의 연장을 공고함⁵⁵⁾

- 연구개발(R&D) 기관이 국내에서 제조한 장비를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해당 기관이 받은 국내·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함
 -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R&D 기관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적격 식별 지침 및 적격 장비 목록이 공고에 첨부되어 있음⁵⁶⁾
 - 국내 국가연구개발 기관은 재정부·국가세무총국 등 정부가 승인한 국가공정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 국가공학기술연구센터 등을 뜻함

- 외국인 투자 R&D 센터의 경우 승인 요건이 추가되며 투자금액 800만달러⁵⁷⁾ 초과, 연구 및 기술직원 80명 이상, 기관 설립 이후 구입 장비의 본래 가치 2,000만위안⁵⁸⁾ 이상 등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를 받은 R&D센터의 경우 독립법인 또는 내부부서 또는 지점 등 법인에 속해있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의미함
- R&D센터의 환급자격 신청 자료는 외국인 투자정보신고 접수증, 기업승인증명서, 설립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이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호림 세무사>



일본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에 관련한 장관급 규정 확정]

■ 일본 재무성은 8월 10일 BEPS 필라 2에서 규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강을 발표함^{59), 60)}

- 해당 대강은 2023년 3월 28일, 국회에서 승인된 2023년 세제개혁법과 2023년 6월 16일, 내각이 발표한 정부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55) 国家税务总局黑龙江省税务局, “财政部 商务部 税务总局关于研发机构采购设备增值税政策的公告,” 2023. 8. 28., http://heilongjiang.chinatax.gov.cn/art/2023/8/28/art_4912_481907.html, 검색일자: 2023. 9. 19.

56) IBFD, “China Extends Full VAT Refund for Domestic Equipment Purchases by R&D Institutions to 31 December 2027,” 2023. 9.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11_cn_2.html, 검색일자: 2023. 9. 19.

57) 2023년 9월 18일 환율 기준 106억 2,240만원

58) 2023년 9월 18일 환율 기준 36억 4,880만원

59) 財務省, 「令和5年度税制改正の大綱(8/10)」, 2023. 8. 10.,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3/05taikou_08.html, 검색일자: 2023. 9. 18.

60) IBFD, “Japan Finalizes Ministerial Regulations on Global Minimum Tax Implementation,” 2023. 8.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25_jp_1.html, 검색일자: 2023. 9. 18.

에 발표된 장관 규정과 관련된 내용임

-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2장 「각 대상 회계연도의 글로벌 최저한세액에 대한 법인세 장」이 신설되었으며,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 제60조의 2까지 관련 내용으로 개정됨
-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유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세율 관할권에 자회사 있는 일본 모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자, 과세범위, 특정 다국적 기업 그룹 등의 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추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인도

[온라인 게임 회사 과세를 위한 CGST 개정안 제정]

- 인도 정부는 2023년 8월 19일, 온라인 게임 회사와 관련한 CGST(중앙 상품 및 서비스세)법의 개정을 관보에 공지함⁶¹⁾
 - 해당 개정을 통해 CGST법상 “온라인 게임”,

“온라인 머니 게임”, “특정된 실행 가능한 청구권” 및 “가상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도입됨

- 특히 온라인 머니 게임의 경우 기술 또는 기회(skill and/or chance)에 기초한 게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됨
- 게임 사업자/플랫폼을 CGST법상 공급자로 간주하기 위해 “공급자”의 정의를 개정함
- 또한 해당 개정을 통해 인도에서 온라인 머니 게임을 제공하는 역외 게임 사업자는 CGST법에 따라 등록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호주

[원천징수 분할납부(PAYG installment) 관련 정보 업데이트]

- 호주 국세청은 2023년 9월 12일, 사업 및 투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할납부(이하 ‘PAYG (pay-as-you-go) installment’)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함^{62), 63)}
 - PAYG installment 납부 방식을 정액으로 선택하는 경우 호주 국내 GDP 조정계수에 따라

61) IBFD, “Government Enacts GST Amendments for Taxation of Online Gaming Companies,” 2023. 8.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29_in_1.html, 검색일자: 2023. 9. 18.

62) Australian Taxation Office, “Pay as you go instalments for business and investment income(modified 12 Sep 2023),”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bulletins-newsroom/Employer-information/Pay-as-you-go-instalments-for-business-and-investment-income>, 검색일자: 2023. 9. 20.

63) Bloomberg Tax, “Australia Tax Agency Issues Information on PAYG Withholding Installments for Business, Investment Income,”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state/australia-tax-agency-issues-information-on-payg-withholding-installments-for-business-investment-income>, 검색일자: 2023. 9. 20.

2023~2024회계연도의 분할납부액을 6% 인상함

- PAYG instalment는 사업 및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년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신고서 제출 시 큰 금액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정액과 요율 중 분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된 납부액은 세금신고서 제출 후 재평가함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최종 세금신고서에서 특정 소득액이 4,000호주달러⁶⁴⁾ 이상이거나, 미납세액이 1,000호주달러⁶⁵⁾ 이상, 예납세액이 500호주달러⁶⁶⁾ 이상인 경우 PAYG installment 대상에 자동 등록함
 - 또한 제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들에게 자발적인 원천징수 분할납부를 권장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OECD

【“Tax Policy Reform 2023 보고서” 발간】

■ OECD는 2023년 9월 13일, “Tax Policy Reform

2023 보고서”를 발간하여 OECD 회원국 등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의 75개 관할국에서 지난 2022년에 발표 및 이행된 주요 세제개편을 다룸⁶⁷⁾

- 세제개편의 배경이 된 거시경제 환경과 세수 확보의 맥락을 살펴봄
 - 세제개편의 주요 요인이 되는 2022년 말까지의 거시경제 환경 조건(성장, 인플레이션, 생산성, 투자, 노동 시장 및 공공 재정)을 설명함
 - 세수 확보의 맥락 및 조세체계의 경향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2021년 명목 세수는 OECD 전체 평균 명목 GDP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OECD 국가의 조세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지난 10년간의 체계와 유사함
- 각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법인세, 소비세, 환경세 등 각 세목에서 시행한 세제개편을 다룸
 - 각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 납세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관련 상품에 대한 조세 경감을 핵심 정책으로 삼음
 - 나아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관련 혜택을 확대하고,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하

64)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5만 4,560원임
 65)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만 3,710원임
 66) 2023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만 1,880원임
 67) OECD, “Countries deploy tax policy to shield households and businesses from decade-high inflation,” 2023. 9. 13., https://www.oecd.org/tax/countries-deploy-tax-policy-to-shield-households-and-businesses-from-decade-high-inflation.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4-09-23&utm_content=Press%20releas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3. 9. 19.

여 기존의 조세 제도를 수정하였으며,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 활동을 과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정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통계청,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2023. 9. 7.)¹⁾

- (전체) 2023년 2분기 유로지역의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분기 성장률과 동일한 0.1%, EU 27개국의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한 0.0%로 집계
-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0.5%, EU 0.4%를 기록해 두 지역 모두 1분기 성장률(1.1%)보다 하락

<표 1>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계절 조정)

(단위: %)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Q3	Q4	Q1	Q2	Q3	Q4	Q1	Q2
벨기에	0.3	0.1	0.4	0.2	2.1	1.5	1.3	0.9
독일	0.4	-0.4	-0.1	0.0	1.2	0.8	-0.3	-0.1
에스토니아	-0.7	-1.4	-0.7	-0.2	-0.9	-3.2	-3.8	-3.0
아일랜드	2.4	-0.9	-2.6	0.5	8.9	10.8	1.0	-0.7
그리스	0.3	1.2	0.0	1.3	4.1	4.8	2.0	2.7
스페인	0.4	0.4	0.5	0.4	4.9	3.0	4.2	1.8
프랑스	0.3	0.1	0.0	0.5	1.2	0.7	0.8	1.0
크로아티아	-0.5	0.5	1.3	1.1	5.5	3.7	2.6	2.5
이탈리아	0.3	-0.2	0.6	-0.4	2.5	1.5	2.0	0.4
사이프러스	1.4	0.2	1.1	-0.4	5.6	4.0	3.2	2.3
라트비아	-1.3	1.1	0.5	-0.3	0.8	1.2	0.3	-0.1
리투아니아	0.7	-0.5	-2.1	2.9	1.4	-0.4	-2.6	1.0
룩셈부르크	1.5	-3.7	2.0	N/A	3.8	-2.2	-0.4	N/A
몰타	0.6	1.6	0.6	1.1	4.8	5.3	5.0	3.9
네덜란드	-0.2	0.9	-0.4	-0.3	3.0	3.2	1.7	-0.3
오스트리아	-0.4	-0.2	0.4	-0.7	1.9	2.7	1.8	-0.9
포르투갈	0.3	0.3	1.6	0.0	4.8	3.2	2.5	2.3
슬로베니아	-1.3	0.8	0.7	1.4	3.9	1.3	0.9	1.6
슬로바키아	0.4	0.3	0.3	0.4	1.2	1.0	1.1	1.3
핀란드	-0.5	-0.6	0.3	0.6	1.2	-0.4	0.0	-0.4
유로지역 20개국	0.3	-0.1	0.1	0.1	2.3	1.7	1.1	0.5
불가리아	0.5	0.5	0.4	0.4	3.1	2.1	2.2	1.9
체코	-0.2	-0.4	0.0	0.1	1.4	0.1	-0.4	-0.4
덴마크	-0.1	0.5	0.7	0.3	2.3	0.4	2.0	1.5
헝가리	-1.0	-0.6	-0.4	-0.3	3.7	0.7	-1.2	-2.3
폴란드	1.2	-2.0	1.6	-2.2	5.0	1.0	-0.6	-1.4
루마니아	0.4	0.9	0.5	0.9	3.7	4.0	2.9	2.7
스웨덴	0.4	-0.8	0.4	-0.8	2.8	-0.4	0.8	-2.4
EU 27개국	0.3	-0.1	0.2	0.0	2.5	1.6	1.1	0.4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출처: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3," 2023. 9. 7.

1)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3," 2023. 9. 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467476/2-07092023-AP-EN.pdf/7e5a0792-7a97-eac1-de9d-6461274a3f56>, 검색일자: 2023. 9. 11.

- (국가별) 전 분기 대비 리투아니아(2.9%), 슬로베니아(1.4%), 그리스(1.3%) 순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폴란드(-2.2%), 스웨덴(-0.8%), 오스트리아(-0.7%) 순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부문별) 유로지역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재고증감이 0.4%p,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0.0%p,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0.1%p, 총고정자본형성은 0.1%p를 기여한 반면, 대외수지는 -0.4%p(수출 -0.4%p, 수입 0.0%p)를 기여
- EU 집행위, 2023년 여름 중간 경제전망 발표 (2023. 9. 11.)^{2), 3)}
- (전체 평가)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한 가운데 경제 성장 모멘텀이 약화
 -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낮은 실업률,⁴⁾ 고용 확대, 임금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문 및 소비 약세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부진
 - (EU 경제) 2023년 상반기 성장 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2023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5월 발표된 봄 전망에 비해 0.2%p 하향 조정된 0.8%로 전망하고, 2024년은 1.4%로 전망
 - 2023년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 민간 소비가 감소하여 국내 수요가 약세
 - 2024년까지 이어질 성장 모멘텀 약화와 긴축 통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완화와 견고한 노동시장, 실질소득의 점진적 회복으로 완만한 경제 반등을 예상
 - (유로지역⁵⁾ 경제) 2023년과 2024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봄 전망에 비해 0.3%p씩 감소하여 각각 0.8%, 1.3%로 전망
 - (독일) 2023년 경제성장률은 소비경기 둔화와 건설투자 감소로 봄 전망 대비 0.6%p 감소한 -0.4%로 전망하고, 2024년에는 소비 회복으로 1.1%의 경제성장률 전망
 - (스페인) 2023년 상반기 견고한 실적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봄 전망에 비해 0.3%p 상승한 2.2%로 전망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둔화가 이어져 2024년에는 1.9% 전망
 - (프랑스) 2023년 2분기 순수출 주도의 경제 반등세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0%, 2024년은 1.2%로 전망하고, 물가상승 완화로 소비 회복 및 투자의 점진적 회복 전망
 - (이탈리아) 팬데믹 기간 건축물 개선에 대한

2)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3," 2023. 9. 1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9/ip_255_en.pdf, 검색일자: 2023. 9. 12.; _____, "Summer 2023 Economic Forecast: Easing growth momentum amid declining inflation and robust labour market," 2023. 9. 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408, 검색일자: 2023. 9. 12.

3) EU 집행위원회는 연 4회(계절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 봄과 가을 전망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주요 데이터들의 전망치를 다루고,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치만 업데이트. 기존 여름 경제전망 발표는 7월이나, 2023년에는 9월로 발표가 늦어져 3분기 실질GDP 성장률과 8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4) 2023년 7월 실업률은 EU 5.9%, 유로지역 6.4%로 각각 3개월과 2개월 연속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EU는 2000년 이후, 유로지역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수치(국가별 7월 실업률은 독일 2.9%, 프랑스 7.4%, 이탈리아 7.6%, 스페인 11.6%, 네덜란드 3.6%, 폴란드 2.8%, 몰타 2.5% 등)

5)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채택한 20개 회원국이 유로지역에 해당되고, 2023년 기준 유로지역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며 비유로지역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특별임시 지원의 단계적 폐지로 2023년 2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는 산업 생산 등 일부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높음. 경제성장률은 2023년 0.9%, 2024년 0.8% 전망
- (네덜란드)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계 구매력이 약화되어 소비가 감소했으며, 2023년 경제성장률은 봄 전망 대비 1.3%p 하향 조정된 0.5%, 2024년에는 가계 구매력의 부분 회복과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요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승한 1.0%로 전망
 - (폴란드) 비유로지역인 폴란드는 재고 감소 및 민간 소비 감소로 2023년 경제성장률이 0.5%로 예상되는 반면, 2024년 물가상승 압력 완화와 추가적인 정부 재정조치로 가구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성장이 전망되어 2024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
 - (물가)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2023년 5.6%로 봄 전망에 비해 0.2%p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2.9%로 감소할 전망(EU 물가상승률은 2023년 6.5%, 2024년 3.2% 전망)
 - 2023년 하반기에 에너지 소매 가격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2023년 물가상승률은 감소할 전망이고, 2024년에는 유가상승으로 봄 전망 대비 0.1%p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은 긴축 통화정책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으로 인한 수요가 둔화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위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광범위한 글로벌 지정학적·경제적 문제,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운용 등이 유럽 경제전망에 관한 상·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여 불확실성이 높음
 - (대외 환경) 2023년에 미국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오래 지속될 경우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 경제전망이 개선된 반면, 중국은 부동산 침체, 높은 채무 불균형, 신뢰도 저하 등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물가) 세계적으로 높은 근원물가상승률은 정책 금리의 장기적 인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재정 취약성이 높은 국가에 영향을 미쳐 금융 안정성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 (지정학적 긴장) 미중의 적대감 고조로 인한 무역제한 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으로 세계무역 둔화가 심화되어⁶⁾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통화정책)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동반 악화되어 경제 심리와 은행 자금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긴축 정책이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 수 있음
 - 반면 통화 긴축이 물가의 빠른 하락으로

6) 2023년 2월 발표된 EU 집행위의 겨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 무역의 둔화와 요인을 다루면서 “Global trade fragmentation risks”로 세계 경제 분절화에 대해 서술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3” 보고서의 Box 1.1을 참고(https://ec.europa.eu/economy_finance/forecasts/2023/winter/Box1_Global_trade_fragmentation_risks.pdf, 검색일자: 2023. 9. 27.)

<표 2> EU 및 유로지역 여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23년 9월 여름 중간 전망			2023년 5월 봄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질 GDP 성장률	유로지역	3.3	0.8	1.3	3.5	1.1	1.6
	EU	3.4	0.8	1.4	3.5	1.0	1.7
	독일	1.8	-0.4	1.1	1.8	0.2	1.4
	스페인	5.5	2.2	1.9	5.5	1.9	2.0
	프랑스	2.5	1.0	1.2	2.6	0.7	1.4
	이탈리아	3.7	0.9	0.8	3.7	1.2	1.1
	네덜란드	4.3	0.5	1.0	4.5	1.8	1.2
	폴란드	5.1	0.5	2.7	5.1	0.7	2.7
물가 상승률	유로지역	8.4	5.6	2.9	8.4	5.8	2.8
	EU	9.2	6.5	3.2	9.2	6.7	3.1
	독일	8.7	6.4	2.8	8.7	6.8	2.7
	스페인	8.3	3.6	2.9	8.3	4.0	2.7
	프랑스	5.9	5.6	2.7	5.9	5.5	2.5
	이탈리아	8.7	5.9	2.9	8.7	6.1	2.9
	네덜란드	11.6	4.7	3.0	11.6	4.9	3.3
	폴란드	13.2	11.4	6.1	13.2	11.7	6.0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3*, 2023. 9. 11, Table 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9/ip255_en.pdf, 검색일자: 2023. 9. 12.

이어져 실질소득 회복을 가속화할 수도 있음

- (기후) 전례 없는 여름 산불 및 홍수와 같이 극한 기상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자연 자본 손실과 관광을 비롯한 경제활동 악화 등 EU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2023. 9. 14.)⁷⁾

- ECB 정책 위원회는 적기에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2.0%)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금리 인상에 연이어 0.25%p 추가 금리인상을 받

표했으며, 9월 20일부터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4.5%, 4.75%, 4.0%로 인상

- 금번 금리인상은 물가상승률 전망, 근원물가 상승 압력, 통화정책 전달 강도 등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한 결과

- 9월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3년 5.6%, 2024년 3.2%, 2025년 2.1%로 전망되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023년 5.1%, 2024년 2.9%, 2025년 2.2%로 전망

- 7월부터 자산매입프로그램(APP)⁸⁾ 만기도래분

7)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9. 14.,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914-aab39f8c21.en.html>, 검색일자: 2023. 9. 18.

8)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은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

<표 3> EU 정책금리 인상 경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6월	7월	9월	10월	12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기준금리	0.00	0.50	1.25	2.00	2.50	3.00	3.50	3.75	4.00	4.25	4.50
한계대출금리	0.25	0.75	1.50	2.25	2.75	3.25	3.75	4.00	4.25	4.50	4.75
수신금리	-0.50	0.00	0.7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변동폭(%p)	-	+0.50	+0.75	+0.75	+0.50	+0.50	+0.50	+0.25	+0.25	+0.25	+0.25

출처: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저자 재구성

의 재투자는 중단되었으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만기채권 원금은 적어도 2024년 말까지 재투자할 계획

■ EU 비공식 경제·재무이사회(Ecofin)⁹⁾에서 재정 준칙 개혁을 위한 협상 현황을 검토하고, 글로벌 게이트웨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 등을 논의 (2023. 9. 15.~16.)¹⁰⁾

- (주요 내용) 9월 15~16일에 개최된 EU 비공식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서 EU의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와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조정을 약속
- (재정준칙) 경제 거버넌스 모델 개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년 넘게 중단된 준칙 준수 의무가 2024년에 다시 활성화될 예정으로 연말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
 - 현재 70% 수준의 기술적 합의가 이루어졌

으며 향후 정치적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

-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재정수지준칙(GDP 대비 3% 한도)과 채무준칙(GDP 대비 60% 한도)의 기준값은 유지
- 공통된 정량적 벤치마크 설계와 적절성, 국가별 권장사항의 역할, 재정 경로 확장을 위한 원칙, 국가 개혁 및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총지출의 정의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 회원국들이 건전한 공공 재정을 유지하면서 공공 서비스와 공동 우선순위에 적절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개혁을 모색 중이며,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각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 간 평등한 공통 규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 (글로벌 게이트웨이)¹¹⁾ 2027년까지 에너지, 운송, 인프라, 디지털, 건강, 교육 및 연구 등 주

9) 경제·재무이사회는 통상 매달 1회 개최되며, 경제재무 분야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EU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 공식 이사회 회의는 EU 이사회가 조직하고 이사회 의장이 의장을 맡으나 특정 주제나 협의회 구성 관련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들의 비공식회의를 조직하기도 함
 10) EU 스페인 의장단 홈페이지, "Informal ministerial meeting o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2023. 9. 15.~16., <https://spanish-presidency.consilium.europa.eu/en/events/informal-ministerial-meeting-on-economic-and-financial-affairs-15-16/>, 검색일자: 2023. 9. 25.
 11)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는 글로벌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1~2027년 동안 디지털, 에너지 및 운송 부문에 최대 3,000억유로를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EU 회원국, 금융기관, 민간 부문 및 기타 비정부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팀유럽(Team Europe) 프로젝트

요 부문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CELAC)의 강화된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450억유로를 투자

- 아마존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포함된 9개 주요 프로젝트(아마존 보호, 식수 시스템 개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등)를 승인

- (글로벌 금융 안전망) 다자 금융기관과 개발은행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차기 UN 총회와 10월에 개최되는 IMF와 세계은행 연례회의에서도 후속 논의 예정



IMF

■ IMF, 연례협의를 위한 한국 방문 및 예비 조사 결과¹²⁾ 발표(2023. 9. 6.)¹³⁾

- 한국은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고, 물가상승의 추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물가상승의 문제와 급격한 성장둔화에 직면해 있

나 반도체 부문이 하반기부터 회복되면서 경제가 개선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2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였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 현재 긴축 통화 및 재정 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중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
- 주택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드러난 금융 부문의 취약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수준 이상 금리 유지가 필요
- 구조개혁 우선순위에 재정은축 기반 재정체제 구축, 연금시스템 개혁, 성별격차 해소, 기후정책 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함

■ IMF 총재,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023년 연차총회 개최 발표 및 모로코에 13억달러 융자 지원 (2023. 9. 18.)^{14), 15)}

-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는 세계은행 총재 및 모로코 경제재정부 장관과 함께

12) 국제통화기금(IMF) 팀은 2023년 연례협의를 위한 논의를 위해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는 국가를 방문한 IMF직원들이 작성한 견해로 IMF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어 토론 및 승인 후 최종 연례협의의 결과로 발표

13) IMF, "IMF Staff Completes 2023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 2023. 9. 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9/05/pr23304-republic-of-korea-imf-staff-completes-2023-article-iv-mission>, 검색일자: 2023. 9. 25.

14) IMF, "Statement by World Bank President Ajay Banga, IMF Managing Director Kristalina Georgieva, and Morocco's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Nadia Fettah Alaoui on the 2023 World Bank-IMF Annual Meetings," 2023. 9. 1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9/18/pr23316-statement-wb-president-imf-managing-director-morocco-minister-econfin-2023-annual-meetings>, 검색일자: 2023. 9. 22.

15) MAP, "Résilience climatique: Le FMI va accorder au Maroc un prêt de 1,3 MM de dollars(Kristalina Georgieva)," 2023. 9. 18., <https://www.mapnews.ma/fr/actualites/economie/r%C3%A9silience-climatique-le-fmi-va-accorder-au-maroc-un-pr%C3%AAt-de-13-mm-de-dollars>, 검색일자: 2023. 9. 26.

2023년 IMF 연차총회를 예정대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하기로 발표

- 9월 8일 모로코에서 지진발생 이후 IMF는 세계은행, 모로코 당국 및 전문가팀과 협력하여 구호 및 재건을 방해하지 않고 연차총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마라케시의 역량을 평가

- 평가 결과, IMF와 세계은행은 모로코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면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마라케시에서 2023년 연차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 또한 모로코의 지진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13억달러 규모의 장기 융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모로코국영통신(Maghreb Agence Presse, MAP)¹⁶⁾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로코와 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IMF 직원 수준의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IMF 집행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승인할 예정

계경제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 등으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3.0%와 2.7%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하락하던 에너지 가격도 감소 등에 따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서비스가격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경제성장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 영향으로 당분간 추세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그간 축적된 초과저축이 가계지출을 뒷받침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긴축 영향이 가시화되며 성장이 둔화될 전망

- 유로지역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실질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라지며, 2023년 0.6%로 둔화되고, 2024년에는 1.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영국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효과와,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둔화

- 중국은 내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23년 5.1%, 2024년 4.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 성장률은 2023년 1.5%, 2024년 2.1%로 모두 6월 전망 수준을 유지

● (물가 전망)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은 여전히 지속되고



OECD

■ OECD,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¹⁷⁾ 발표(2023. 9. 19.)¹⁸⁾

● (현황) 2023년 초반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세

16) 1959년 설립되어 1973년 국유화된 모로코 왕국의 정부 소유 공식 통신사

17) 중간경제 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발표하며, 대상국은 세계경제와 G20 국가

18) Confronting inflation and low growth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3, OECD,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september-2023/>, 검색일자: 2023. 9. 20.

있음

- 물가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상당수 G20 국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나 국가별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G20 국가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3년 6%, 2024년 4.8%로 완화, G20 선진국의 근원물가상승률은 올해 4.3%에서 2024년 2.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엔화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영향을 받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물가상승률이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재화 부문 물가상승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으나, 노동 및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 물가상승은 지속되고 있음

- (위험) 통화정책의 강도 및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

-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긴축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율 상승은 민간부채 수준이 높고 변동 모기지 비율이 높은 국가의 금융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이 높고, 식량 가격 상승세도 지속 중

-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 경기둔화 또한 하방 위험으로 작용

- (정책권고) 재정 여력 재구축, 구조적 개혁 노력 등을 권고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재정 확장, 기후

<표 4>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중간 경제 전망	6월 전망과 차이	중간 경제 전망	6월 전망과 차이
세계	3.3	3.0	0.3	2.7	-0.2
G20 ¹⁾	3.1	3.1	0.3	2.7	-0.2
호주	3.7	1.8	0.0	1.3	-0.1
캐나다	3.4	1.2	-0.2	1.4	0.0
유로지역	3.4	0.6	-0.3	1.1	-0.4
독일	1.9	-0.2	-0.2	0.9	-0.4
프랑스	2.5	1.0	0.2	1.2	-0.1
이탈리아	3.8	0.8	-0.4	0.8	-0.2
스페인 ²⁾	5.5	2.3	0.2	1.9	0.0
일본	1.0	1.8	0.5	1.0	-0.1
한국	2.6	1.5	0.0	2.1	0.0
멕시코	3.9	3.3	0.7	2.5	0.4
튀르키예	5.5	4.3	0.7	2.6	-1.1
영국	4.1	0.3	0.0	0.8	-0.2
미국	2.1	2.2	0.6	1.3	0.3
아르헨티나	5.0	-2.0	-0.4	-1.2	-2.3
브라질	3.0	3.2	1.5	1.7	0.5
중국	3.0	5.1	-0.3	4.6	-0.5
인도 ³⁾	7.2	6.3	0.3	6.0	-1.0
인도네시아	5.3	4.9	0.2	5.2	0.1
러시아	-2.0	0.8	2.3	0.9	1.3
사우디 아라비아	8.8	1.9	-1.0	3.1	-0.5
남아프리카 공화국	1.9	0.6	0.3	1.1	0.1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 집계에는 자체적으로도 회원국인 국가만 포함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대국

3.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3, Table 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변화 및 고령화, 국방비 지출 등이 재정 지출 압력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향후 정책수요 충족과 미래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통화정책 부담을 경감하여 적절한 정책조합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

-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기후, 디지털화 대응 등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및 노동 참여 촉진 등 구조개혁 필요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 2024회계연도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H.R. 5860) 가결(2023. 9. 30.)¹⁹⁾
 - (배경) 2024회계연도의 만료일(2023. 9. 30.)이 도래하였으나, 총 12개 분야의 정규세출예산 모두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 양당(공화당·민주당)은 예산 방향에 대한 이견(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며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법안 진행과정)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Mc-

Carthy) 하원 의장은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 사태를 피하기 위해 동 임시 예산안(H.R. 5860)이 발의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임시예산안(H.R. 5525)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과 연합하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²⁰⁾

- (규모 및 만료시한) 동 임시 예산법(P.L. 118-15)은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²¹⁾로 진행되며, 만료 시한은 2023년 11월 17일까지로 규정
- (향후 전망) 의회가 11월 17일 자정까지 정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차 임시 예산안(CR)을 통과시켜야 하며, 의회의 양당 대치가 지속되어 CR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존재

*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필수(essential)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furlough) 상태에 놓이게 되어, 복지 관련 수급 지연 및 국립공원 등이 일시적 폐쇄에 놓이는 등 전반적인 정부 운영이 지연(또는 정지)될 수 있음

[기타]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2023. 9. 20.)²²⁾
 - (결정배경)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19)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5860," 2023. 9. 3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3/09/30/press-release-bill-signed-h-r-5860/>, 검색일자: 2023. 10. 4.

20) 이로 인해, 의회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하원 의장 탄핵안을 발의하였으며, 민주당과 함께 의장 탄핵안이 최종 가결됨(의회 하원 홈페이지, "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519," <https://clerk.house.gov/evs/2023/roll519.xml>, 2023. 10. 3., 검색일자: 2023. 10. 4.

21) 2023회계연도(2022. 10.~2023. 9.) 정규 세출예산법의 규모는 약 1.7조달러 규모이며, 동 법은 3차례의 임시예산을 거친 후 2022년 12월 23일 통과

22)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보도자료, 2023. 9.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0920a1.pdf>, 검색일자: 2023. 9. 22.

<표 5> 미국 2023년 9월 FOMC 경제전망 요약(SEP)

(단위: %)

전망치(중간값)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2.1	1.5	1.8	1.8	1.8
6월 전망치	1.0	1.1	1.8	-	1.8
실업률	3.8	4.1	4.1	4.0	4.0
6월 전망치	4.1	4.5	4.5	-	4.0
PCE 물가상승률	3.3	2.5	2.2	2.0	2.0
6월 전망치	3.2	2.5	2.1	-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3.7	2.6	2.3	2.0	-
6월 전망치	3.9	2.6	2.2	-	-
기준금리 전망	5.6	5.1	3.9	2.9	2.5
6월 전망치	5.6	4.6	3.4	-	2.5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기준연도 전년도 4분기 수치와 기준연도 4분기 수치를 기준으로 변화율 계산하였으며, 실업률은 해당연도 4분기의 실업률 의미
-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 장기 전망은 각 위원들이 적정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9. 20., Table 1.

(federal funds rate)를 현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은 다음과 같이 현 경제상황을 평가

- 경제활동은 지속적인(solid)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
- 고용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강세를 보이

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물가인상률은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파월의장은 기자회견에서²³⁾ 기준금리는 유지하되 연준의 자산보유는 지속해서 축소해 나갈 것이며, 연준의 강력한 목표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2%로 회귀하는 것임을 강조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에 따르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2.1%, 물가상승률은 3.3%,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5.6%로 전망²⁴⁾



일본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1분기²⁵⁾ 예산사용 현황 발표(2023. 9. 1.)²⁶⁾

- 2023회계연도 1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1조 5,186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34조 2,533억엔으로 세출액이 세입액을 32조 7,347억엔 초과
- 2023회계연도 1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23)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September 20, 2023," 기자회견문, 2023. 9.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30920.pdf>, 검색일자: 2023. 9. 22.

24)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9.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jtabl20230920.pdf>, 검색일자: 2023. 9. 22.

25) 일본의 2023회계연도는 2023. 4. 1.~2024. 3. 31.로, 2023회계연도 1분기는 2023. 4. 1.~2023. 6. 30.을 의미

26)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3/05_1gai.html, 검색일자: 2023. 9. 7.

<표 6> 일본의 2023회계연도 1분기 예산사용 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143,812	2023회계연도 사용가능 금액 ¹⁾ (D)	1,323,340	세입예산액(A)	4,445,978	2023회계연도 사용가능 금액 ¹⁾ (D)	4,470,656
1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5,186	1분기 국가 지출 금액(E)	342,533	1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465,260	1분기 국가 지출 금액(E)	1,409,405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3% (0.7%)	2023회계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5.8% (26.3%)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32.9% (30.8%)	2023회계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31.5% (31.5%)
1분기 누계(C)	15,186	1분기 누계(F)	342,533	1분기 누계(C)	1,465,260	1분기 누계(F)	1,409,405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1.3% (0.7%)	2023회계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25.8% (26.3%)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32.9% (30.8%)	2023회계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31.5% (31.5%)

주: 1) 2023회계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1.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3. 9. 1.

액 대비 수입 비율은 32.9%로 전년 동기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31.5%를 기록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²⁷⁾ 예산요구액²⁸⁾ 발표(2023. 9. 5.)²⁹⁾

- 일본의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8조 3,845억엔(7.9%) 증가한 114조 3,852억엔 규모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일반회

계 예산요구액 총액이 10년 연속 100조엔을 초과

- 일반회계 세출총액 중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인 일반세출은 전년대비 4조 5,033억엔(7.0%) 증가한 68조 8,544억엔 규모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전년대비 9,891억엔(6.0%) 증가한 17조 3,883억엔 규모
 - 국채 상환 및 이자 지불에 소요되는 비용인 국채비는 전년대비 2조 8,291억엔(11.5%) 증

27) 일본의 2024회계연도는 2024년 4월~2025년 3월

28) 예산 편성 시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 '개산요구액'과 주요 정책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인 '주요 정책 추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요망액'의 합계를 의미

29)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2023. 9. 5.,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sy050905.pdf, 검색일자: 2023. 9. 6.

<표 7> 일본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단위: 억엔, %)

구분	전년도 예산액 ¹⁾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개산요구액 ²⁾	요망액 ³⁾	합계	증감액	증감률(% ⁵⁾)
일반세출 ⁴⁾	643,511	646,990	41,554	688,544	45,033	7.0(5.8)
지방교부세·교부금	163,992	173,883	-	173,883	9,891	6.0(7.5)
국채비	252,503	281,424	-	281,424	28,921	11.5(10.9)
합계	1,060,006	1,102,298	41,554	1,143,852	83,845	7.9(7.3)

- 주: 1) 전년도 예산액은 방위력 강화자금으로의 편입 3조 3,806억엔, 코로나19 및 원유가격·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4조엔,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경제 긴급 대응 예비비 1조엔을 제외한 금액.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액에서 이와 관련된 금액은 「2024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3. 7. 25., <https://www.mof.go.jp/policy/budget/sy230725c.pdf>, 검색일자: 2023. 8. 3.)을 바탕으로 요구함. 또한 전년도 예산액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과의 비교·대조를 위해 재조합함
- 2) 일본은 예산 편성 시 전년 8월 말까지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데 이를 '개산 요구'라고 함
출처: 藤井 亮二,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実効性が弱まるシーリング効果-」 『経済のプリズム』, 第179号, 일본 상의원, 2019. 8., p. 2,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3. 8. 14.
- 3) 요망액은 예산요구액 중 주요 정책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인 '주요 정책 추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
- 4)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 5) 괄호안의 수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의 증감률
-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2023. 9. 5., p. 1을 바탕으로 재구성

가한 28조 1,424억엔 규모

[기타]

■ 일본 내각부, 2023년 2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3. 9. 8.)³⁰⁾

- 전 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2%(연율 4.8%), 명목 GDP 성장률은 2.7%(연율 11.4%)로 실질성장률, 명목성장률 모두 1차 속보치³¹⁾에서 하향 조정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6%p로 민

간기업설비, 민간최종소비지출, 공적고정 자본형성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1차 속보치 (-0.3%p)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1.8%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민간수요) 전 분기 대비 민간수요 증가율은 -0.8%로 1차 속보치(-0.5%)에서 하향 조정
- (공적수요) 전 분기 대비 공적수요 증가율은 0.1%로 1차 속보치(0.3%)에서 하향 조정
- (수출입) 전 분기 대비 재화·서비스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3.1%, -4.4%로 수출입 디플레이터 상향 조정으로 인해 1차 속보치

30) 일본 내각부, 「2023년4~6월 4분기 GDP速報(2次速報値)」, 2023. 9. 8.,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3. 9. 19.

31) 1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전 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5%(연율 6.0%), 명목 GDP 성장률은 2.9%(연율 12.0%).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8월 재정동향」, 2023, p. 33(<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947>, 검색일자: 2023. 9. 20.) 참고

<표 8>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
(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		2023년 ¹⁾
	Q2	Q3	Q4	Q1	Q2	Q2
실질 GDP	1.3	-0.3	0.1	0.8	1.2	4.8
국내수요	1.1	0.3	-0.3	1.0	-0.6	-2.2
민간수요	1.4	0.4	-0.5	1.3	-0.8	-3.1
민간최종 소비지출	1.8	-0.0	0.3	0.6	-0.6	-2.5
민간주택	-1.8	-0.1	1.0	0.7	2.0	8.1
민간기업 설비	2.0	1.5	-0.7	1.6	-1.0	-4.0
민간재고 변동	(-0.2)	(0.1)	(-0.4)	(0.3)	(-0.2)	-
공적수요	0.5	-0.0	0.3	0.3	0.1	0.3
정부최종 소비지출	0.5	-0.1	0.2	0.1	0.0	0.1
공적고정 자본형성	0.6	1.0	0.1	1.4	0.2	1.0
공적재고 변동	(-0.0)	(-0.0)	(0.1)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1)	(-0.6)	(0.3)	(-0.3)	(1.8)	-
재화·서비스 수출	1.9	2.4	1.5	-3.8	3.1	12.9
재화·서비스 수입	1.1	5.5	-0.1	-2.3	-4.4	-16.5
명목 GDP	1.1	-0.9	1.2	2.2	2.7	11.4
GDP 디플레이터	-0.1	-0.6	1.2	1.4	1.6	-

주: 1) 연율 환산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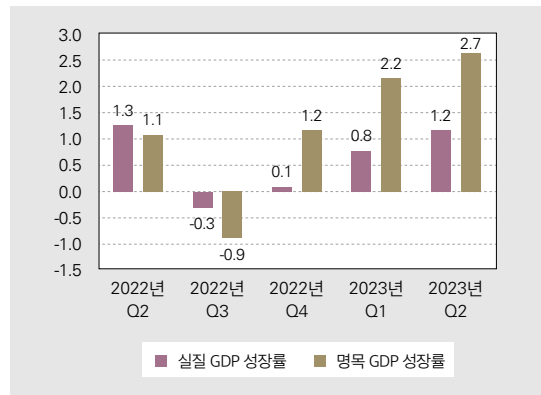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1.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출처: 일본 내각부, 「2023년4~6월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및 p. 7 표 3-3 재구성

[그림 1]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
(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2023년4~6월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및 p. 7 표 3-3을 참고하여 작성

(3.2%, -4.3%)에서 하향 조정

독일

■ 독일 내각 회의, 독일 경제 지원을 위한 10대 계획 발표(2023. 8. 30.)³²⁾

- (개요) 슐츠 독일 총리,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린드너 재무부 장관은 내각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독일 경제 지원을 위한 10대 계획을 발표
- 8월 29~30일에 개최된 내각 회의에서 독일 경제 성장 제고를 위한 성장기회법, 관료적 형식주의 완화, 디지털화 등에 초점을 두고

32) 독일 연방 정부, “Impulse für Wachstum in Deutschland,” 2023. 8. 3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kabinettsklausur-august-2023-2216498>, 검색일자: 2023. 9. 7.; _____, “Wirtschaftsstandort Deutschland – fit für die Zukunft,” 2023. 8. 3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wirtschaftsstandort-deutschland-2204654>, 검색일자: 2023. 9. 7.; _____, “10 Punkte für den Wirtschaftsstandort Deutschland,” 2023. 8. 30., <https://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5228/2216780/1ae3b55bae09c6b62b1c225fb619a66/2023-07-29-10-punkte-fuer-den-wirtschaftsstandort-deutschland-data.pdf?download=1>, 검색일자: 2023. 9. 7.

- 논의가 이루어짐
- 독일은 과도한 형식적 관료주의, 숙련 인력 부족,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전환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 둔화가 기업의 장기적 투자 위축이나 주택 건설 부진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성장 강화를 위한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 내용) 이번 계획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연간 70억유로의 지원, 관료적 형식주의 관련 비용 23억유로 절감 등이 포함
 - (성장기회법) 세계 혜택을 통해 독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제고
 - (미래금융법) 미래금융법을 통해 스타트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민간 자금 동원을 용이하게 함
 - 우리사주 세금공제 인상, 기업공개에 필요한 최소 자본 기준 축소, 최대 10개의 결권을 갖는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 (기후변화기금)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2024년에 약 580억유로의 투자를 지원하며 2024~2027년에 총 2,118억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 또한 연방 예산을 통해 철도, 도로, 교량,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고속 인터넷 회선 등에 540억유로의 투자를 추진해 2024년 독일 현대화에 1,000억유로 이상이 투입될 예정
 - (계획 및 승인 절차 개선) 다수의 입법 패키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건설, 인프라 관련 계획 및 승인 속도 향상, 일부 주정부와 '계획, 승인, 이행 가속화를 위한 협약' 체결, 신청 및 승인 절차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활용 등
 - (관료적 형식주의 철폐) 관료주의 완화법을 통해 규제 개선, 실지점검을 통해 철폐·개정할 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 상법 및 세법상 문서 보존 기한 축소, 고용 계약 등의 서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대체 등
 -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보장) 정부는 태양광, 풍력 발전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제 마련도 추진
 - (디지털화 고도화) 신규 데이터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 접근, 보호 관련 여건 개선, AI 전략 이행,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숙련 인력 확보) 숙련 근로자 이민법을 통해 숙련 근로자의 이민 촉진, 직업 훈련 및 교육에 투자하는 기업 지원 등
 - (혁신 촉진) 2024년에 교육 및 연구에 200억 유로 이상 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종합 스타트업 전략 추진, 반도체 등 미래를 위한 기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독일에 유치
 - (무역정책 의제 및 원자재 공급) 무역 및 투자 보호 협정 체결 지원, 원자재 수급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추진 등
- 독일 연방 내각, 제29차 보조금 보고서 승인

(2023. 8. 30.)³³⁾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2021~2024년 연방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보고서’를 채택함
 - 독일 정부는 ‘경제 안정 및 성장증진법’에 근거해 격년마다 연방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의 개요를 포함한 연방정부 보조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이번 보고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문제에 대응, 인플레이션의 영향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 및 기후 정책 관련 지출도 반영됨
- (보조금 규모)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관련 보조금 규모는 2021년에 379억유로에서 2024년에 671억유로로 약 290억유로 증가
 - (재정지원) 재정지원 규모는 2021년에 184억유로에서 2024년에 487억유로로 약 300억유로 늘어날 전망이고 이러한 증가는 주로 기후변화기금에 편성된 프로그램에서 기인
 - 2023년 대비 2024년의 재정지원 예산은 35억유로 증액
 - 재정지원의 비중은 2021년에 50.8%에서 2024년에 80.5%로 상승
 - 해당 기간 동안 총 25개의 새로운 재정지원이 도입되었고 이 중 주요 신규 보조금

은 IPCEI³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프로젝트와 IPCEI 수소 프로젝트 관련 조치임

- (조세 감면) 연방정부의 조세 감면은 2021년

<표 9> 독일의 2021~2024년 연방 보조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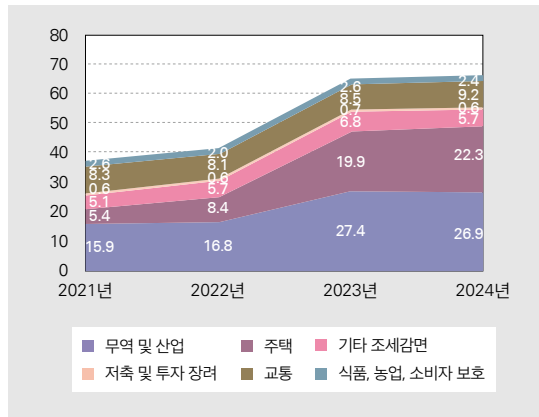
(단위: 100만유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 지원	18,440	20,110	45,247	48,723
조세 감면	19,506	21,485	20,680	18,396
합계	37,946	41,595	65,927	67,119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29.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23. 8. 30., Übersicht 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9-subventionsb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3. 9. 7.

[그림 2] 독일의 경제 부문별 연방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추이(2021~2024년)

(단위: 10억유로)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29.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23. 8. 30., Abbildung 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9-subventionsb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3. 9. 7.

33) 독일 연방 재무부, “Bundeskabinett beschließt 29. Subventionsbericht,” 2023. 8. 3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30-subventionsbericht.html>, 검색일자: 2023. 9. 7.; _____, 29.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23. 8. 3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9-subventionsb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3. 9. 7.

34) EU의 공동 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195억유로에서 2024년 184억유로로 다소 감소할 전망

- (지침 이행) 보조금 정책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은 한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총 138개의 보조금 중 109개는 기한이 존재
 - 또한 보조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2023년에 138개 재정지원 중 83개(전체 재정지원 금액 중 86.3%)가 ‘독일 지속가능성 전략’에 근거한 환경 및 기후보호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PLF 2024) 발표(2023.

9. 27.)^{35), 36), 37)}

- (경제전망) 프랑스 경제는 2023년 성장세를 유지하다(1.0%) 2024년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1.4%)
 - 2023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지나며 경기가 다소 회복
 - 물가 안정화로 가계 소비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장기 추세에 근접한 1.4%를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년 4.9%에서 2024년 4.4%로 다소 개선되고 2027년 3%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
 - 경제 회복과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 조치의 종료로 인해 2024년 재정수지는 2023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표 10> 프랑스 2024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수지(Déficit public)	-9.0	-6.5	-4.8	-4.9	-4.4
재정지출 증가율 (Croissance volume de la dépense publique, %)	6.7	2.6	-1.1	-1.3	0.5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4.4	44.3	45.4	44.0	44.1
재정지출(Taux de dépenses publiques(hors CI))	60.7	58.4	57.7	55.9	55.3
공공채무(Dette publique)	115.0	112.8	111.8	109.7	109.7

출처: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2023. 9. 27.

35)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2023. 9. 27.,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4-plf>, 검색일자: 2023. 10. 4.

36) 프랑스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PLF 2024),” 2023. 9. 27., <https://www.budget.gouv.fr/calendrier-budgetaire?date=202309>, 검색일자: 2023. 10. 4.

37)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2023. 9. 29., <https://www.vie-publique.fr/loi/291190-projet-de-loi-de-finances-2024-plf>, 검색일자: 2023. 10. 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2023~2027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0.6%로 이하로 유지해 2027년 GDP 대비 재정수지를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
-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22년 111.8%에서 2023년과 2024년 109.7%로 다소 낮아진 이후 2025년 108.1%를 기록할 전망
 - 이후 재정지출 통제 노력의 영향으로 GDP 대비 공공부채는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
- (우선순위 정책) 생태학적 전환, 주권 강화, 교육 및 훈련 등 세 가지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지원
 -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를 위해 지원
 - 공공 및 민간 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농업 부문의 생태학적 전환 지원 및 산림 보호 강화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
 - 녹색기금(fonds vert)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생태학적 전환 프로젝트 지원
- 주권 강화를 위해 지원
 - 국방 미션 지출 확대를 통해 위협 및 분쟁에 대비하도록 함
 - 내무부와 법무부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표 11> 프랑스 2024년 예산법안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10억유로)

구분	2023년 본예산	2023년 전망	2024년 예산법안	2023~ 2024년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520.6	524.4	511.6	-12.9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50.0	455.5	445.1	-10.4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70.6	68.9	66.5	-2.5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5.6	44.5	44.8	0.3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5.0	24.4	21.6	-2.8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59.1	358.0	372.1	14.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328.2	332.1	349.4	17.3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7.3	90.7	94.1	3.5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55.3	61.3	72.2	10.9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6.6	16.4	16.4	0.0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4.7	96.3	100.4	4.1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74.3	67.4	66.3	-1.1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30.9	26.0	22.6	-3.3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3.6	-5.8	-5.1	0.7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1	0.1	0.2	0.0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164.9	-172.1	-144.5	27.6

출처: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2023. 9. 27.

- 고용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개혁
 - 교육 부문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 직업 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 학생들의 인턴십 지원 확대
 -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친환경 산업 부문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 프랑스 재무부, FY2024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PLFSS 2023) 발표(2023. 9. 27.)^{38), 39)}
 - 사회보장 부문 재정적자는 2024년 112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2020년 397억유로로 최저점에 도달한 이후

-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영향으로 2023년 88억유로로 회복
- 중기적으로는 적자가 확대되어 2027년 175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2024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 DAM)⁴⁰⁾는 2023년 대비 3.2% 증가한 2,549억유로로 전망
- 2019년 대비 540억유로 높은 수준으로 의료 시스템 현대화 및 의료 전문가 지원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반영
- 사회보장 부문 개선을 위한 정책 조치를 포함
 - 11세부터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등 백신 및 진료 접근성 강화
 - 공공 의료 부문 종사자에 대한 급여 인상
 - 아동 보육 종사자의 급여 인상

<표 12> 프랑스 2024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유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건강보험(CNAM Maladie)	-30.5	-26.1	-21.0	-9.5	-9.3	-10.0	-9.7	-9.6
산재보험(CNAM AT-MP)	-0.1	1.3	1.7	1.9	1.2	1.2	0.8	1.1
임금근로자 노령보험국가기금(CNAV)	-4.9	-1.1	-3.9	-1.9	-5.9	-9.3	-11.4	-14.0
가족수당국가기금(CNAF)	-1.8	2.9	1.9	1.0	0.8	0.5	0.9	1.7
자율연대국가기금(CNSA)	0.0	0.3	0.2	-1.1	1.3	1.0	0.7	0.4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RG)	-37.3	-22.7	-21.0	-9.6	-11.9	-16.5	-18.7	-20.3
노령연대기금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2.5	-1.5	1.3	0.8	0.8	0.8	1.6	2.8
사회보장 부문 지출(RG+FSV)	-39.7	-24.3	-19.7	-8.8	-11.2	-15.8	-17.1	-17.5

출처: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4," 2023. 9. 27.

38) 프랑스 재무부, "Budget PLFSS 2024: des mesures au service de la santé et des solidarités collectives," 2023. 9. 28., <https://www.economie.gouv.fr/budget-projet-loi-financement-securite-sociale-2024-plfss>, 검색일자: 2023. 10. 5.

39)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4, 2023. 9. 28., <https://www.vie-publique.fr/loi/291211-plfss-2024-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 검색일자: 2023. 10. 5.

40)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차년도 건강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의미함



영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발표 (2023. 9. 21.)⁴¹⁾

- (주요 내용) 영국 정부는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목표 정상회의”⁴²⁾에서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과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한 1억 6,00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
 - 영국은 2019년에 2021~2022회계연도부터 2025~2026회계연도까지 국제기후금융에 116억파운드 원조를 계획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영국의 국제적 노력의 일환
 - 그레이엄 스투어트 장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영국의 리더십을 강조
 - 자금 조달 패키지는 철강 생산을 위한 청정 수소 기반 연료 배치, 바이오매스⁴³⁾ 구동 냉동장치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여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
- (평가) 이번 자금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주요 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5.25%) 결정(2023. 9. 21.)⁴⁴⁾

- (경제현황 논의) 금리인상 결정에 앞서 세계경제 및 영국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
 - (국제경제) 세계 GDP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에 0.5%, 3분기에 0.3%로 추정
 - 유로 지역은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에서 약세를 보였으나, 미국은 제조업 생산에서 하락세가 멈추었고 서비스 생산은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경우, 투자 둔화 및 수출 감소와 함께 소비와 산업 생산이 약세를 보이는 등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미국과 유로 지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최근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최고치에서 계속 하락세를 유지
 - (통화·금융)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의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감소
 - (수요·생산) 영국의 2분기 실질 GDP는 0.2% 증가하였는데 이는 8월 통화정책위원회 보

41)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UK government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to tackle climate change,” 2023. 9. 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government-support-for-developing-countries-to-tackle-climate-change>, 검색일자: 2023. 9. 25.

42) UN Climate Ambitions Summit

43) biomass: 태양 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과 이들을 먹이로 하는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 유기체를 총칭

44) Bank of England, “Bank rate maintained at 5.25% - September 2023,” 2023. 9. 21.,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3/september-2023>, 검색일자: 2023. 9. 25.

- 고서 예상 대비 소폭 높은 수준
-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도 각각 0.6%, 3.4% 증가해 8월 보고서 예상 대비 모두 높게 나타났고, 주택투자는 2.3% 감소
 - (공급·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연율)은 7월 6.8%로 하락한 후 8월에는 6.7%로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8월 보고서 예측보다 0.4%p 낮은 수치
 - 에너지, 식품, 음료, 담배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2%로 하락해 지난 몇 달 동안 7% 미만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
 - (금리동결 결정)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14회 연속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5.25% 동결 결정
 -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4명은 5.50%로 인상, 5명은 5.25% 유지 의견 제시

<표 13>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1년	2022년								2023년					
	12. 16.	2. 3.	3. 17.	5. 5.	6. 16.	8. 4.	9. 22.	11. 3.	12. 15.	2. 2.	3. 23.	5. 11.	6. 22.	8. 3.	9. 21.
금리	0.25	0.50	0.75	1.00	1.25	1.75	2.25	3.00	3.50	4.00	4.25	4.50	5.00	5.25	5.25

출처: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3. 9. 21.

재정포럼

2023년 10월호 통권 제328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중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월간 재정포럼

2023년 10월 16일 발행 / 통권 제32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